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현안분석</p> <hr/> <p>특집 · 2009년 예산안</p> <p>정책토론티포트</p> <p>주요국의 조세동향</p> <p>정책흐름</p> <p>재정통계</p> <p>이슈 & 포커스</p>	<p>02 기본에 충실한 정책연구를 기대하며 · 전주성</p> <p>08 조세 · 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 성명재</p> <p>29 국방조달계약에서의 비용절감유인 · 김 진</p> <p>50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 박명호</p> <hr/> <p>71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조규홍</p> <p>76 2009년 예산안 평가(Ⅰ) · 박정수</p> <p>82 2009년 예산안 평가(Ⅱ) · 송호신</p> <p>89 2008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정책토론회</p> <p>106 중국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대한 세부요건 외</p> <p>113 2009년 예산안</p> <p>132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p> <p>133 2009년 국세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p> <p>137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p> <p>140 알쏭달쏭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p> <p>144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외</p> <p>154 “유가환급금 지급시 GDP 0.05%P ↑”(조세연구) 외</p>
---	--

기본에 충실한 정책연구를 기대하며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1980년대 중반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던 나는 레이건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의 의장직을 마치고 돌아온 마틴 펠트슈타인(Martin Feldstein) 교수와 함께 세금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레이건의 작은 정부 철학을 대변하는 감세정책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문적·정치적 관심 역시 매우 높았다. 우리 작업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우선 조세와 기타 경제변수를 감안한 투자의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하고, 다음 이를 응용해 투자함수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높은 유효세율이 투자를 저해함을 보였고, 이에 따른 정책 처방은 자연 자본과세의 완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유효세율 상승을 초래하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였다. 처음 연구논문을 발표한 나로서는 그 결과가 금지옥엽처럼 느껴졌고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조세는 기업투자의 적이라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공저자인 나의 지도교수는 훨씬 소박하게 결과를 해석했다. 우리가 사용한 각 모형의 장점과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통계 추정치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며, 이런 결과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 연구 방향을 말하는 정도로 우리 연구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제 싹 조금 나온 벼와 푹 익은 벼와의 차이인 것이다.

당시 펠트슈타인 교수는 “어차피 모든 모형은 잘못된 모형이다(Every model is a false model)”이라는 말로 유명했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경험 연구의 경우 자료 측정의 오류(Measurement error)와 모형설정의 오류(Specification error)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가능한 다양한 모형을 돌려보아 어떤 공통의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즉, 여러 모형을 돌려보아도 조세변수가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컨대 일단 변수 측정

과정에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모형 설정 과정에서는 좀 겸손하게 자기 모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모형은 잘못된 모형

변수 측정과 모형 설정의 오류는 계량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막상 현실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의 개념과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자료 간에는 괴리가 불가피하다. 미국은 공식적인 통계의 질도 높고 또 기존 연구에서 잘 정리해 놓은 변수 측정치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당시 그 작업을 할 때 정말 나는 지옥 훈련이나 다름이 없는 경험을 했다. 각종 조세 및 경제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대충 넘어가도 될 작은 일도 교수님은 일일이 확인을 했다. 남이 이미 해놓은 것이라도 자신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무시하고 만들어 쓰게 했다. 하다 못해 부채비율 같은 것도 부채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별도의 작은 논문을 써가며 새롭게 추정했다.

자료 측정과 모형 설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Q-투자 모형의 현실 예측력을 들 수 있다. Q 모형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적정 이론에 기초한 데다, 투자 수익성의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성격을 반영하고, 복잡한 추정식이 아니라 현재 주식가치를 바탕으로 설명변수를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어 1980년대에 매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정작 이 변수를 사용한 투자 연구들은 자본비용 중심의 전통적인 신고전파 모형에 비해 현저하게 설명력이 떨어졌다. 그 원인으로 Q 변수의 분모인 자본 스톡이나 분자를 구성하는 부채와 관련된 측정 오류, 부문별 자본스톡의 비동질성을 무시한 모형 설정, 한계 Q를 평균 Q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완전경쟁 가정의 비현실성 등이 지목되었다. 아무리 이론이 우월해도 자료 측정이나 모형 설정이 잘못 되면 실용성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반면 신고전파 투자모형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조르겐슨(Jorgenson) 교수는 모형의 이론적 한계를 치밀하고 세밀한 자료 사용과 모형 추정으로 보완해 신뢰를 얻었다.

모형은 대다수 경제학자의 밥그릇이기도 하다. 하지만 펠트슈타인이 강조했듯 자신이 사용하는 모형이 어떤 가정이나 자료에 근거하는지, 따라서 그 모형에서 나온 결론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저자 스스로 독자에게 일깨워줘야 할 사안이다. 다시 옛날 얘기지만 하버드의 써머스(Summers) 교수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공격하는

.....
 모형은 대다수 경제학자의 밥그릇이기도 하다.
 하지만 펠트슈타인이 강조했듯 자신이 사용하는 모형이 어떤 가정이나 자료에 근거하는지, 따라서 그 모형에서 나온 결론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저자 스스로 독자에게 일깨워줘야 할 사안이다.

.....

조세나 예산은
 그 어느 제도보다
 정치적·시대적 특성을
 내포한다. 조세저항이나
 회피가 심한 현실에
 선진국 모형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다.

.....

발언을 자주 했다. 잔뜩 가정과 수식만 들어있지 무엇이 무엇을 유도하는지 보여주지 못하는 'Black box' 라는 것이다. 당시 조르겐슨 교수는 세금관련 CGE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분은 존경스럽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발끈해서 내 모형이 어디가 어떠냐고 덤빌 텐데 이 분은 오히려 그런 비판을 시인하며 모형의 한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모수 추정치를 기존 문헌에서 대충 채집하지 않고 실제 자료에 근거해 추정했다. 추정의 오류가 갖는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이다. 모형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무수히 많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펠트슈타인이나 조르겐슨은 사상이나 학문적 방법론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지만 실증 연구를 대하는 자세는 다르지 않다. 세월이 지나 한국에 돌아와 조세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는 입장이 된 요즘 나는 가끔 학생 시절 스승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되새겨보곤 한다. 우리 학계는 밀천에 비해 말이 너무 앞서서 경향이 있다. 누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평균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나 역시 언제부턴가 충분한 논거 없이, 내 견해의 한계를 언급함이 없이 대충 말하는 것이 습성이 된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밀천보다 말이 앞서는 정책 토론

정책토론회에 가보면 가끔 외국 이론이나 모형에 별로 정제되지 않은 국내 자료를 융합한 결론을 정책 처방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다. 실전에 응용되는 정책 연구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우리 분위기는 그 반대인 것 같다. 자기 결론의 한계를 말하기는커녕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급급하다. 그나마 좀 틀이 잡힌 연구에 근거해서 말하는 경우에도 우리 학자들은 다소 과감한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 사례나 자료를 이용한 연구나, 국제비교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적정성의 기준은 아니다. 조세나 예산은 그 어느 제도보다 정치적·시대적 특성을 내포한다. 조세저항이나 회피가 심한 현실에 선진국 모형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다. 나 자신 미국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연구한 경험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최근 우리 정부의 감세안이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IMF나 OECD 등 국제기구 학자들에게 우리 학자들이 좀 당당했으면 한다. 솔직히 그들이 하는 조언은 선진국 경험이나 국제비교

에 근거한 일반론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 많다. 복음처럼 여겨지는 “과세베이스는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명제도 비선진국으로 오면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조세회피로 과세베이스가 흔들리는 나라에서는 세율과 베이스를 세수증립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조세정보 확보로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일과 단순히 공제를 축소해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재산과세를 말하면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린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는데 나는 왜 이 주장이 우리 경제에 당연히 맞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재산과세와 같이 정치성이 강한 세제일수록 그 나라 고유의 특수성이 제도 형성의 중요한 변수이다. 토지는 비탄력적이고 부자들이 보유하므로 효율과 형평을 다 취할 수 있는 과세베이스라고 말하는 수준이라면 아직 조세가 뭘지 한참 더 배워야 한다. 정권이 바뀔 정도로 저항이 심한 조세라면 효율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재분배가 목적이라면 더 우월한 수단이 많다. 우리도 미국처럼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보편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 공평성의 차원에서 자본이득을 과세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보다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재정학계의 젊은 학자들이 좀더 기본에 충실한 연구를 했으면 한다. 그런데 그 기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제도와 그 배경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생긴 지 제법 됐지만 아직도 기초 연구 분야는 취약하다. 단기 정책 연구에 시달리고 질보다 양 중심의 평가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시간 걸리고 생색이 안 나는 연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저자 스스로 고민하며 우리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따져본 논문들을 보면 매우 반갑다. 뻔한 정책 분석이나 남들 다하는 국제 비교보다는 한국 제도, 나아가 한국 정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 남는 장사일 것이다. 보람도 있고 학자로서의 생명력도 높여줄 것이다. 표절 안하고 정치판에 아양 떨지 않고 사는 방편이기도 하다. **KIP**

.....
 가끔씩 저자 스스로
 고민하며 우리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따져본
 논문들을 보면 반갑다.
 뻔한 정책 분석이나
 남들 다하는 국제
 비교보다는 한국 제도,
 나아가 한국 정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
 남는 장사일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 분석 |

- 조세 · 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방조달계약에서의 비용절감유인
김 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작금의 현실에서는 상대소득격차의 확대가 빈곤율 상승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경제위기 이후 상대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상대소득격차의 확대는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급격히 진행된 산업구조 변화, IT 및 금융부문의 비약적 발전, 세계화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편부모가정의 증가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상대소득격차의 확대와 함께 빈곤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경제적 현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는 상대소득격차의 확대가 빈곤율 상승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말 이후 최근까지 상대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각종 소득재분배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소득재분배 목적의 세제개편 및 복지재정지출의 확대에 따라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¹⁾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각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정책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연구결과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상대소득격차의 변화추이, 요인분석 등에

1) 성명재(2006)의 연구에서는 조세 및 현금급여, 성명재·박기백(2008)의 연구에서는 조세,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까지 현금화하여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밖에 상대소득격차 확대와 관련된 추이 분석 및 정책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치중하였다. 아울러 빈곤율 분석 및 빈곤율 상승에 대한 요인분석, 근로빈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반면에 각종 조세·재정지출이 빈곤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보고에서는 조세·재정지출이 빈곤율에 미친 영향과 변화추이를 분석해보면서 소득분배격차 확대 및 빈곤율 상승 기조 속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1분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획득하는 시장소득 수준은 2001~2007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소득은 크게 증가하였다.

II. 소득분배구조와 빈곤율 추이

1. 소득분포

소득10분위별 평균소득 분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인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1990년대 중반 이래 최근까지 거의 모든 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다른 소득분위와 달리 예외적으로 1분위의 경우에는 2001년 이래 최근까지 시장소득의 가구당 평균이 1,108만~1,178만원으로 거의 정체상태를 보여 소득증가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1분위의 경우에도 총소득은 1,136만원에서 1,471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즉, 1분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획득하는 시장소득 수준은 2001~2007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소득은 크게 증가하였다.

제3절의 추정결과를 미리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시장소득 기준의 절대 빈곤율은 10.9%에 이른다. 이는 1분위의 상당수가 빈곤가구임을 시사한다. 빈곤가구 중 상당수는 노인가구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추론해보면, 2000년대 이후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이전소득 중 상당 부분은 민간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높다. 최근에는 정부나 공공부문에 의한 공적이전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²⁾. 민간이전소득은 상당 부분 부모 봉양 등을 목적으로, 자식이나 친지들로부터 은퇴한 노인가구로 이전되는 소득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확대 및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수혜자 비율의 빠른 증가 등에 힘입어 공적이전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종면·성명재(2004), 성명재(2006)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전소득 중
상당 부분은
민간이전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높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나
공공부문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소득10분위별 소득 분포

(단위: 천원)

시장소득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95	9067	13085	15415	17402	19774	21965	24586	28041	32549	44569	22644
1996	9949	14431	17000	19568	22028	24788	27520	31229	36399	50346	25328
1997	6695	12997	16759	19703	22556	25335	28562	32587	38498	54196	25789
1998	4941	9675	13413	16534	19342	22280	25431	29323	34881	50811	22663
1999	9196	13486	16288	18663	21501	24131	27426	31728	37399	53045	25287
2000	9983	14731	17747	20825	23867	27057	30648	35412	42467	62936	28570
2001	11079	15724	18984	21820	24934	28110	32030	37215	44564	64189	29865
2002	11046	16289	19926	23300	26738	30417	34755	40185	48253	69888	32081
2003	11323	17705	22421	25685	30169	33493	37672	43585	50645	72853	34554
2004	11547	18425	23344	27551	31321	36176	40681	45485	54342	79511	36837
2005	11416	18622	23184	27741	31538	36511	41838	47772	56772	82443	37793
2006	11442	18559	23396	27565	32918	38819	43013	49687	57692	84595	38772
2007	11775	19326	25391	29341	35082	39523	44416	52122	62402	87175	40649
2003A	9417	15957	20268	24555	28540	32557	36758	43241	50263	74546	33611
2004A	9573	16499	21133	25763	29787	34673	39464	45728	54486	80561	35768
2005A	9499	16158	21823	26287	30595	35396	40614	47399	57242	84293	36933
2006A	5938	11905	17040	21937	27696	33175	39296	46600	55675	83729	34299
2007A	5907	12174	17898	23237	29104	34147	39927	47985	58560	85922	35485
총소득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95	9342	13378	15715	17753	19946	22214	24897	28372	33124	45305	23003
1996	10275	14703	17258	19785	22371	25018	28083	31703	36862	51374	25745
1997	6966	13373	17105	20152	22951	25686	29057	33135	39042	55514	26299
1998	5070	10054	13777	16833	19768	22521	25778	29695	35405	51466	23036
1999	9510	13822	16666	19107	21748	24515	27796	32051	37865	53994	25708
2000	10322	15129	18250	21143	24250	27425	31160	35978	42797	63685	29017
2001	11363	16323	19371	22316	25283	28596	32539	37804	44967	65205	30376
2002	11489	16727	20361	23963	27169	31007	35114	40737	48860	70491	32593
2003	13180	19265	23845	27617	31541	35042	39596	45435	53123	76496	36513
2004	13731	20475	25072	29596	33349	38099	43029	48431	57860	83861	39349
2005	14015	21087	25482	30127	34299	38977	43903	50814	60205	87695	40670
2006	13986	21333	25959	30478	35430	41003	45503	52797	62024	89061	41761
2007	14711	21915	27976	32261	37962	42309	47474	55231	65911	92785	43847
2003A	11614	17940	22345	26177	30133	34039	38755	44833	52723	77084	35566
2004A	12187	19023	23588	27862	32046	36648	41630	48125	57539	84156	38282
2005A	12307	19486	24580	28915	33143	37828	43110	49702	60094	88849	39804
2006A	8936	15346	20569	25343	30541	35992	41907	49055	59083	87782	37455
2007A	9197	15677	21256	26765	31754	37292	43332	50549	61546	90060	38742

주 1. 가계조사자료 기준 추정치

2. 상기의 수치는 2인 이상 도시지역 거주 가구 대상임. 단, 2003A~2005A는 전국단위의 2인 이상 가구, 2006A~2007A는 전국단위의 전가구 대상임.



2. 지니계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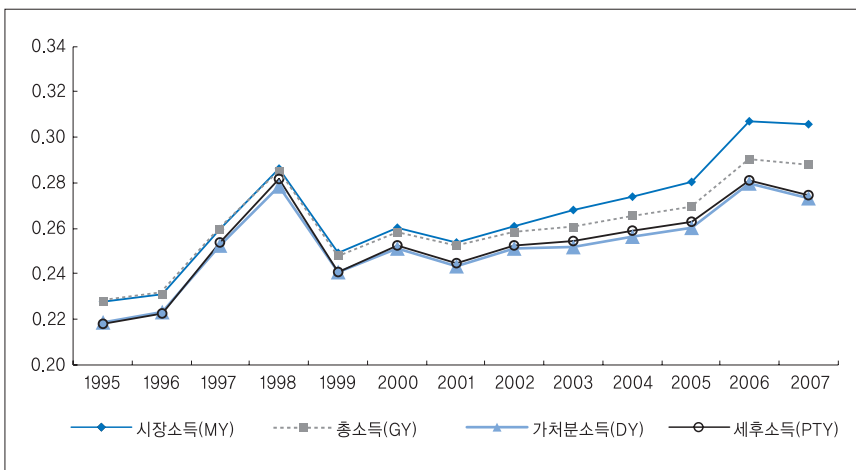
소득계층간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가 널리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1995년 이래 최근까지의 상대소득격차, 즉 지니계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소득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위기상황을 반영하듯이 지니계수가 일시적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을 제외한다면 지니의 추세곡선이 대체로 우상향의 선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계조사자료의 특성상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소득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3년부터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시장소득 지니와 총소득 지니 사이의 차이는 이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 효과, 즉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 등 민간부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소득이전의 경우에는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커 공공부문에 의한 이전소득보다 재분배 효과가 좀 더 크다. 2003~2007년 기간이 비록 매우 짧은 시기이지만 이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의 변화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소득 지니와 총소득 지니 사이의 차이는 이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 효과, 즉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동등화소득 기준 지니계수 추이 1 (가계조사자료 기준)



주: 2002년까지는 2인 이상 도시지역 거주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2006~2007년은 전국가구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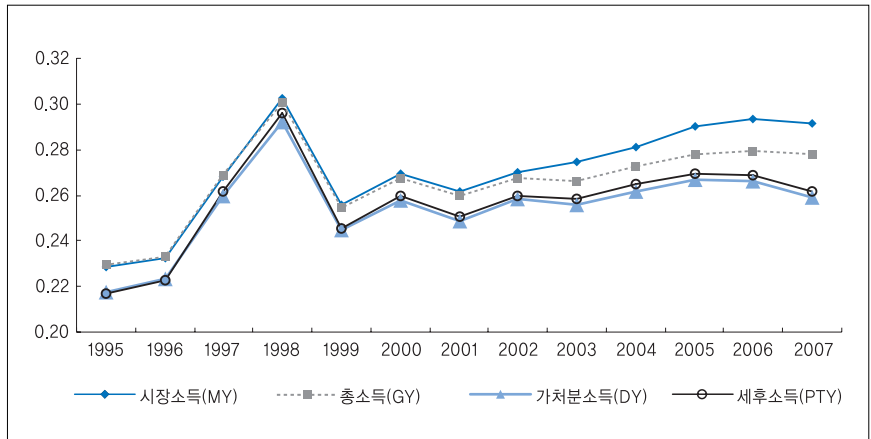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 효과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분배 효과가 가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상기의 분석에 있어, 2002년까지는 2인 이상의 도시지역 거주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 2006~2007년은 1인가구도 포함한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비교대상 가구의 포괄범위가 상이하다. 따라서 추세적 변화에 의한 효과와 자료 포괄범위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 2]에서는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주요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곡선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지니곡선의 대체적인 추세선은 [그림 1]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재분배후소득, 즉 가처분소득이나 세후소득기준의 지니값이 2005년 이후 가시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06년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그림 1]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 효과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분배 효과가 가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포괄범위를 동일하게 통일시킨 [그림 2]를 기준으로 할 때, 추세적으로 이전소득과 직접세를 통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누진과세의 확대 및 세수비중 증대,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에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 동등화소득 기준 지니계수 추이 2 (가계조사자료,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3. 절대빈곤율 변화추이

본절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부록 참조)에 미달하는 경우를 빈곤가구로 정의하는 절대빈곤에 대해 살펴본다. 본절에서는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를 절대빈곤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각 소득종류별로 빈곤율 추정결과가 상이하다.

상대소득격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7~1998년을 제외하면, 1995~2007년 동안 절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24%에서 10.9%로 대폭 상승하였다. 물론 이런 차이 중에서는 가구의 포괄대상 범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료 포괄대상 범위의 차이에 의한 효과는 절대빈곤율의 상승률만 달리 할 뿐 절대빈곤율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특히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소득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2003년부터의 기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절대빈곤율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분배 전 소득(시장소득) 기준의 빈곤율보다 재분배 후 소득(민간소득~세후소득) 기준의 빈곤율이 대체로 더 낮다. 다만 재분배정책의 종류에 따라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이전소득,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등 이전소득을 포함할 경우 예외없이 빈곤율은 감소한다. 이는 이전소득이 합산항목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에는 빈곤율을 소폭 반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세의 경우 상대소득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빈곤율과 관련해서는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이 소득 차감항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밖에 추세적으로는 재분배 전후 소득 간 빈곤율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종류별로는 민간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하락효과가 가장 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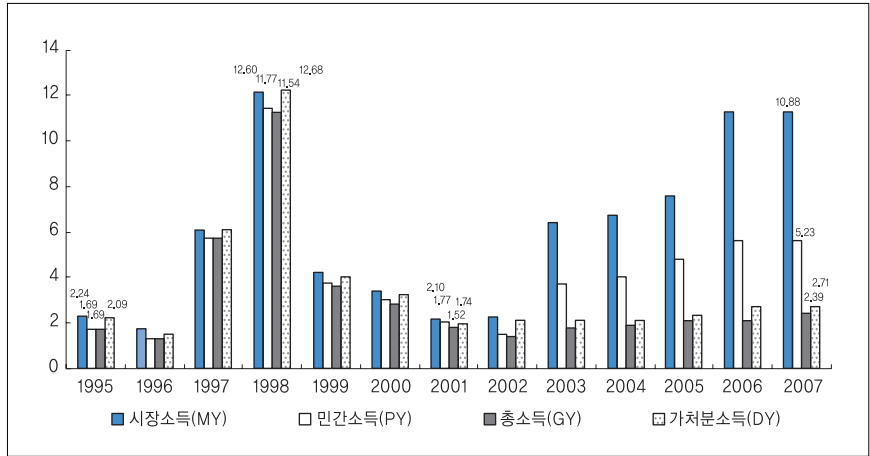
직접세의 경우
상대소득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빈곤율과 관련해서는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소득세의 경우 빈곤가구는 대부분 면세자이므로 소득세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추세적으로는
재분배 전후 소득 간
빈곤율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3] 절대빈곤율(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



<표 2> 소득종류별 절대빈곤율 추정치 (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 %p)

	MY	PY	GY1	GY	DY1	DY	PTY	PY-MY	GY-MY	PY-GY
1995	2.24	1.69	1.69	1.69	1.72	2.09	2.50	-0.55	-0.55	n.a.
1996	1.53	1.03	1.03	1.03	1.04	1.25	1.50	-0.5	-0.5	n.a.
1997	6.06	5.42	5.42	5.42	5.42	6.07	6.96	-0.64	-0.64	n.a.
1998	12.60	11.77	11.69	11.54	11.54	12.68	14.49	-0.83	-1.06	-0.23
1999	4.07	3.58	3.58	3.31	3.31	3.82	5.04	-0.49	-0.76	-0.27
2000	2.98	2.42	2.38	2.12	2.14	2.71	4.17	-0.56	-0.86	-0.30
2001	2.10	1.77	1.72	1.52	1.54	1.74	2.36	-0.33	-0.58	-0.25
2002	2.17	1.52	1.49	1.24	1.24	1.98	2.66	-0.65	-0.93	-0.28
2003	6.19	3.20	2.60	1.67	1.69	2.05	2.84	-2.99	-4.52	-1.53
2004	6.50	3.46	2.85	1.73	1.76	1.90	2.66	-3.04	-4.77	-1.73
2005	7.46	4.16	3.44	2.11	2.11	2.41	2.95	-3.3	-5.35	-2.05
2006	10.92	5.24	4.24	2.14	2.17	2.67	3.37	-5.68	-8.78	-3.10
2007	10.88	5.23	4.22	2.39	2.39	2.71	3.19	-5.65	-8.49	-2.84

주: 1. MY = 시장소득(market income)

PY = 민간소득(private income) = MY - 민간이전소득

GY1 = 총소득 1 = PY + 공적연금

GY = 총소득 = GY1 + 기타 사회보장수혜

DY1 = 가처분소득 1 = GY - 소득세

DY = 가처분소득 = DY1 - 재산세 등 직접세 -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PTY = 세후소득(post-tax income) = DY - 간접세

2. 1982~1997년의 경우에는 가계조사자료상 공적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에 대한 구분이 없었음.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는 편의상 민간소득과 총소득 1을 동일하게 취급하였음. <표 2> 소득종류별 절대빈곤율 추정치(가계조사자료 기준)



Ⅲ. 조세·재정지출이 분배구조·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1. 소득재분배구조에 미치는 효과

본절에서는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조세·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2007년 현재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기까지 지니계수는 0.32729에서 0.28793으로 12.6%(민간소득지니 대비) 하락하였다. 이 중 민간이전소득에 의한 부분이 4.5%포인트이고 나머지 8.1%포인트는 공공부분의 조세·재정지출에 의한 효과이다⁴⁾.

종류별로는 이전소득과 소득세 등 직접세가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미미하지만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 사이에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항목은 소득세로서, 지니계수를 4.75%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에 의한 민간이전소득이 4.45%포인트로 소득세에 버금가는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민간이전소득 중 상당부분이 은퇴 후 부모에 대한 자식이나 친지들의 생활비 보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사회보장수혜(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연금을 제외한 부분)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여도가 2.38%포인트로 추정되었다. 기타사회보장수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 및 실업급여 등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혜 대상이 선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편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3%포인트로 상당히 낮다. 이는 이들 연금 수혜대상의 범위가 아직 넓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수혜대상자 중에는 고소득층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주된 수혜대상으로 하는 기타사회보장수혜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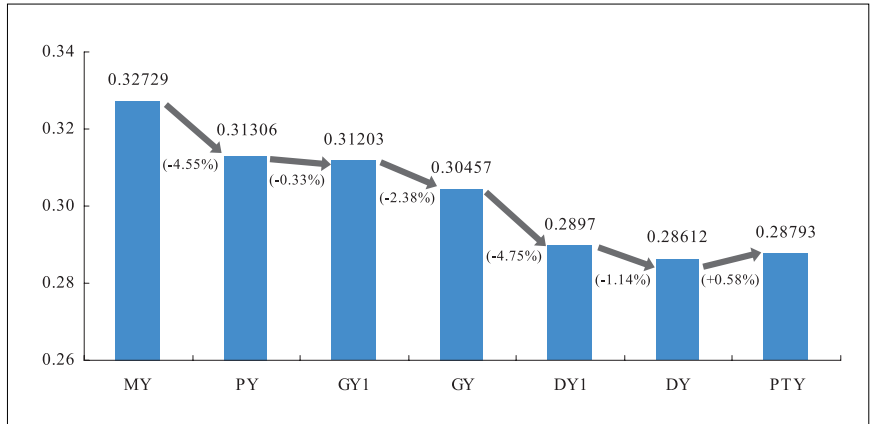
이전소득과 소득세 등 직접세가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소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미미하지만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4)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0년대 이후 가시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재분배 효과가 작은 편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도 선진국에 비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보다 작은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점차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그리고 현행의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수혜대상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는 그만큼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전지출과 직접세는 상대소득격차 축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간접세만 負(-)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빈곤율의 경우에는 이전지출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 소득재분배 효과: 동등화소득 지니계수 변화율 (2007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주: 1. MY = 시장소득(market income)
 PY = 민간소득(private income) = MY - 민간이전소득
 GY1 = 총소득 1 = PY + 공적연금
 GY = 총소득 = GY1 + 기타 사회보장수혜
 DY1 = 가처분소득 1 = GY - 소득세
 DY = 가처분소득 = DY1 - 재산세 등 직접세 -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PTY = 세후소득(post-tax income) = DY - 간접세
 2. 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지니계수를 분모로 한 상태에서 전단계 대비 변화율을 나타냄.

2. 절대빈곤율에 미치는 효과

빈곤율의 경우에는 지니계수의 경우와 달리 조세·재정지출의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정부의 이전지출과 직접세는 상대소득격차 축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간접세만 負(-)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빈곤율의 경우에는 이전지출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기까지 2007년 기준 절대빈곤율은 10.88%에서 3.19%로 7.6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이전소득을 통해 5.65%포인트의 빈곤율이 하락하여 전체 빈곤율 하락의 73.5%를 차지한다. 이는 아직도 최저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빈곤가구가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빈곤율을 1.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적용 확대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짐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노인 가구 가운데 국민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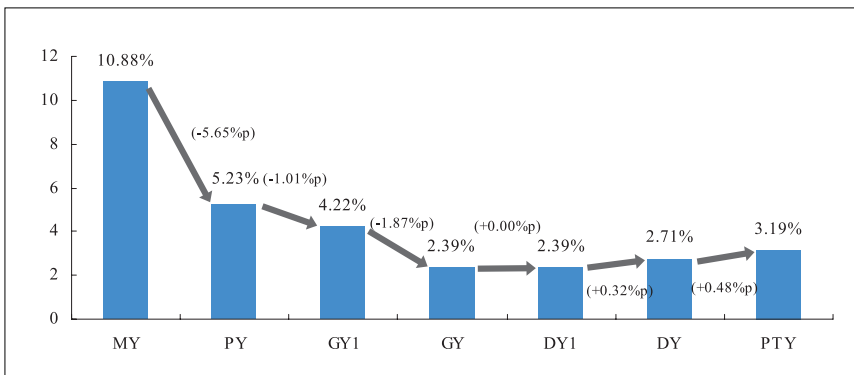


문에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율 저하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 노인인구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연금 수혜가구비율이 높아질수록 공적 연금에 의한 빈곤율 저하효과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빈곤율을 1.8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밖에 조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등은 소득차감항목인 만큼 빈곤율을 낮추기보다는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에는 빈곤율 차이가 0원이거나 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0원이거나 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일망정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므로 기타 직접세를 차감함에 따라 빈곤율이 소폭 상승한다. 간접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나타낸다.

향후에 노인인구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연금 수혜가구비율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율 저하효과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각종 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의 변화효과(2007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주: 1. MY = 시장소득(market income)
 PY = 민간소득(private income) = MY - 민간이전소득
 GY1 = 총소득 1 = PY + 공적연금
 GY = 총소득 = GY1 + 기타 사회보장수혜
 DY1 = 가처분소득 1 = GY - 소득세
 DY = 가처분소득 = DY1 - 재산세 등 직접세 -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PTY = 세후소득(post-tax income) = DY - 간접세

3. 소득상대비 구조의 변화추이

본절에서는 상기의 제1~2절의 내용을 엮어 주요 소득계층별 소득상대비를 고찰해봄으로써 각종 조세·재정지출이 상대소득격차와 빈곤율 등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고소득층/저소득 간 소득상대비 고찰을 위해 10분위와 1분위를 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상대비 격차를
변화시킨 요인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소득층 사이의
격차 확대보다는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면이 훨씬
큼을 시사한다.

택하였다. 아울러 두 분위 간 소득상대비의 변화 원천을 살펴보기 위해 5분위를 매개체로 상기 소득상대비를 분해한 것도 함께 살펴본다.

2007년 현재 시장소득 기준의 10분위/1분위의 소득상대비는 14.55배이다. 각종 이전소득 합산 후 및 조세부담 차감 후의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소득상대비는 8.63배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약 60% 수준으로 현격하게 축소된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에 의한 것은 14.55배에서 11.02배이며, 나머지 11.02배→8.63배는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이전 및 조세부과를 통해서이다.

상기의 소득비를 5분위를 매개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1) \quad \frac{10\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 = \frac{10\text{분위 소득}}{5\text{분위소득}} \times \frac{5\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

10분위/1분위의 소득상대비는 10분위/5분위 및 5분위/1분위의 소득상대비의 곱으로 표현된다. 10분위/1분위 소득상대비의 변화를 위의 식 (1)을 매개로 하여 소득단계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시장소득단계의 소득상대비를 100으로 환산하였을 때 세후소득 기준 소득상대비는 10분위/1분위가 59.3이고, 10분위/5분위의 경우에는 89.5, 5분위/1분위의 경우에는 66.3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상대비 격차를 변화시킨 요인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소득층 사이의 격차 확대보다는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면이 훨씬 큼을 시사한다. 중소득층 이상 계층에서의 소득단계별 소득상대비의 변화가 이전 소득보다는 소득세 등 각종 조세부담을 통해 나타나는 반면에 중소득층 이하의 계층에서는 이전소득에 기인하는 효과가 더 크며, 그 정도도 후자가 훨씬 더 크다. 이는 상대적으로 민간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조세·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상대비 변화도 고소득층에서는 주로 조세를 통해, 저소득층에서는 이전소득을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대수를 취한 경우([그림 7])도 [그림 6]과 대동소이하다.

〈표 3〉 주요 분위별 평균소득의 상대비(2007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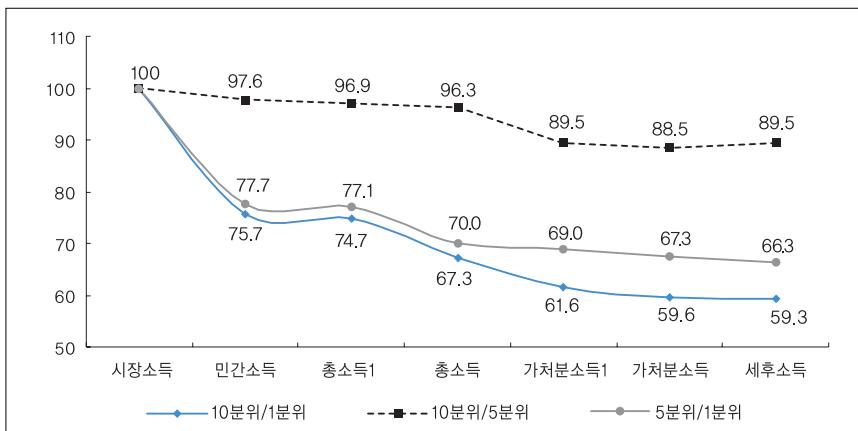
(단위: 배, %)

	시장소득	민간소득	총소득1	총소득	가처분소득1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MY)	(PY)	(GY1)	(GY)	(DY1)	(DY)	(PTY)
10분위/1분위	14.55	11.02	10.87	9.79	8.97	8.67	8.63
10분위/5분위	2.95	2.88	2.86	2.84	2.64	2.61	2.64
5분위/1분위	4.93	3.83	3.8	3.45	3.4	3.32	3.27
ln(소득)	시장소득	민간소득	총소득1	총소득	가처분소득1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MY)	(PY)	(GY1)	(GY)	(DY1)	(DY)	(PTY)
ln(10분위/1분위) (A)	2.678	2.400	2.386	2.281	2.194	2.160	2.155
ln(10분위/5분위) (B)	1.082	1.058	1.051	1.044	0.971	0.959	0.971
ln(5분위/1분위) (C)	1.595	1.343	1.335	1.238	1.224	1.200	1.185
차분 절대치	$\ln(MY)-\ln(PY)$	$\ln(PY)-\ln(GY1)$	$\ln(GY1)-\ln(GY)$	$\ln(GY)-\ln(DY1)$	$\ln(DY1)-\ln(DY)$	$\ln(DY)-\ln(PTY)$	$\ln(MY)-\ln(PTY)$
$\Delta \ln(10분위/1분위)$	0.276	0.015	0.104	0.088	0.035	0.004	0.522
$\Delta \ln(10분위/5분위)$	0.024	0.007	0.007	0.073	0.011	-0.011	0.111
$\Delta \ln(5분위/1분위)$	0.252	0.008	0.097	0.015	0.024	0.015	0.411
차분 비중(%)	$\ln(MY)-\ln(PY)$	$\ln(PY)-\ln(GY1)$	$\ln(GY1)-\ln(GY)$	$\ln(GY)-\ln(DY1)$	$\ln(DY1)-\ln(DY)$	$\ln(DY)-\ln(PTY)$	$\ln(MY)-\ln(PTY)$
$\Delta \ln(10분위/1분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Delta \ln(10분위/5분위)$	8.7	47.0	6.8	83.3	32.4	-305.1	21.3
$\Delta \ln(5분위/1분위)$	91.3	53.0	93.2	16.7	67.6	405.1	78.6

주: 1.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상대비에 대한 자연로그값은 10분위/5분위와 5분위/1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합산한 값임. 이와 같은 이유는 반올림에 의한 오차에 의한 후자의 비중의 합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임.

〈그림 6〉 소득단계별 소득상대비의 상대 변화추이(2007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시장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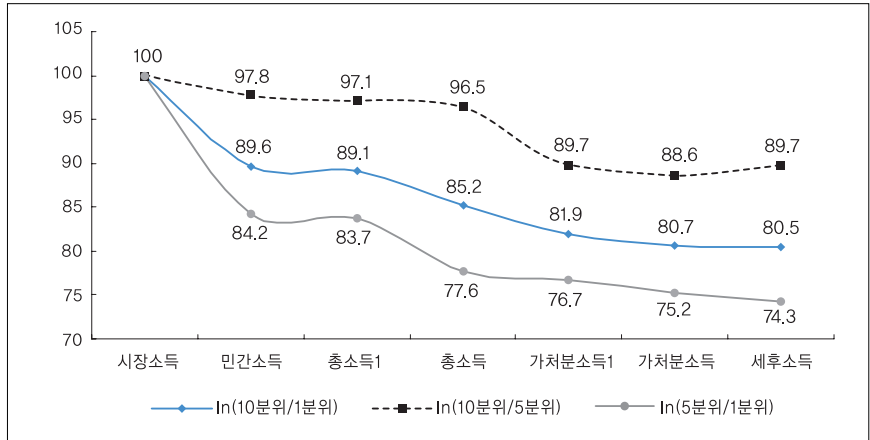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민간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조세·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소득상대비 격차가 크게
확대된 데에는 빈곤율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비중 확대 및 상대소득의
하락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림 7] 소득단계별 ln(소득상대비)의 상대 변화추이(2007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시장소득=100)



시계열적으로 볼 때, 비록 가구포괄대상 범위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지만, 1995~2007년 동안 10분위/1분위의 시장소득상대비는 4.92배에서 14.55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5분위를 매개체로 하여 분해해보면, 10분위/5분위의 시장소득상대비는 같은 기간 동안 2.25배에서 2.95배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5분위/1분위의 상대비는 2.18배에서 4.93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의 소득상대비 격차가 크게 확대된 데에는 빈곤율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비중 확대 및 상대소득의 하락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은퇴후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중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시장소득상대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시장소득의 주요 분위별 평균소득 상대비 변화추이(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배)

상대비	10분위/1분위	10분위/5분위	5분위/1분위
1995	4.92	2.25	2.18
1996	5.06	2.29	2.21
1997	8.09	2.40	3.37
1998	10.28	2.63	3.91
1999	5.77	2.47	2.34
2000	6.30	2.64	2.39
2001	5.79	2.57	2.25
2002	6.33	2.61	2.42
2003	7.92	2.61	3.03
2004	8.42	2.70	3.11
2005	8.87	2.76	3.22
2006	14.10	3.02	4.66
2007	14.55	2.95	4.93

주: 2002년까지는 2인 이상의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의 전국가구, 2006~2007년은 1인 가구포함 전국가구 대상임.

특히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은퇴후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중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시장소득상대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득단계별 소득상대비 변화로 살펴본 조세·재정지출 효과

소득단계별로 소득상대비가 변화하는 정도를 분해해보면 조세·재정지출의 형평효과 분석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식 (1)을 다음과 같이 변환해보자.

먼저 식 (1)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곱의 형태를 합의 형태로 전환한다.

$$(2) \quad \ln\left(\frac{10\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right) = \ln\left(\frac{10\text{분위 소득}}{5\text{분위 소득}}\right) + \ln\left(\frac{5\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right)$$

합의 형태로 변환된 식 (2)를 이웃한 소득단계의 것으로부터 차분하여 다음 식을 도출한다.

$$(3) \quad \Delta \ln\left(\frac{10\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right) = \Delta \ln\left(\frac{10\text{분위 소득}}{5\text{분위 소득}}\right) + \Delta \ln\left(\frac{5\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right)$$

$$\text{단, } \Delta \ln\left(\frac{i\text{분위 소득}}{j\text{분위 소득}}\right) = \ln\left(\frac{i\text{분위 전단계 소득}}{j\text{분위 전단계 소득}}\right) - \ln\left(\frac{i\text{분위 후단계 소득}}{j\text{분위 후단계 소득}}\right),$$

$i, j=1, \dots, 10$



조세의 경우에는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이전소득의 경우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서의
소득상대비 변화
기여도가 높다.

식 (3)의 좌변으로 식 (3)을 나누어주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4) \quad 1 = \frac{\Delta \ln \left(\frac{10\text{분위 소득}}{5\text{분위 소득}} \right) + \Delta \ln \left(\frac{5\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 \right)}{\Delta \ln \left(\frac{10\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 \right) + \Delta \ln \left(\frac{10\text{분위 소득}}{1\text{분위 소득}} \right)}$$

식 (4)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이웃한 두 가지 소득단계 사이의 차이(예: 민간이전소득, 공적연금, 소득세 등)로 인해 발생한 고소득층(10분위)과 저소득층(1분위) 사이의 소득상대비 변화분 가운데 중소득층 이상의 변화에 의한 기여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중소득층 이하의 변화 기여도를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표 3>의 네 번째 요소(차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단계별, 중소득층 이상·이하의 계층별로 기여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10분위와 1분위 사이에는 시장소득에 민간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민간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상대비의 변화효과 중 91.3%는 5분위 이하의 중소득층 이하의 소득상대비 변화에 기인하며 5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민간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상대비의 변화가 미미함을 시사한다. 이는 민간이전소득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중소득층 이상과 이하의 경우가 각각 47.0%와 53.0%로 비슷하다. 이는 국민연금이 대체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비슷한 양상으로 소득상대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사회보장수혜의 경우에는 소득상대비 변화분 중 거의 대부분(93.2%)이 저소득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타사회보장수혜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세의 경우에는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이전소득의 경우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서의 소득상대비 변화 기여도가 높다. 반면에 간접세의 경우에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IV. 시사점 및 맺음말

상대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립·전개·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policy target)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소득재분배 정책의 목표를 상대소득격차(예: 가치분소득 또는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축소로 설정하거나 또는 빈곤율의 축소에 둘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소득재분배 정책목표가 일견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를 요소별로 분해해보면 양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세·재정지출을 통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상대소득격차를 축소하면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소득격차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재정지출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정책목표가 달성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이 저소득빈곤층에 집중될수록 정책목표의 달성이 용이해진다. 반면에 전자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재분배 후 소득의 점유비를 낮추거나 또는 저소득층의 재분배 후 소득 점유비를 높이는 것,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경우 정책목표가 달성된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순혜택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빈곤율이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해 첫 번째 경우에는 상대소득격차 축소에는 성공적이지만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0이 된다. 그러므로 일견 비슷해보이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재분배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 축소를 정책목표로 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및 산업 및 금융구조조정 이후 무직가구 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빈곤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층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런데 상대소득격차의 확대 및 빈곤율 상승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대응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잠재적으로 인식의 혼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율의 축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대소득격차의 축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인식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대응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누진과세 등을 통한 재원 마련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수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방향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재

상대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립·전개·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설정 필요하다.



단순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재분배 후 소득의 상대비 격차를 축소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기보다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회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분배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볼 때,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의 정도는 한계세율 상승에 따른 한계희생 수준이 (역진적 분포구조를 지닌) 복지지출을 통한 한계편익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현실에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하다.

재분배 정책이 재분배 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면 한계편익이 0이 될 때까지 누진과세 및 역진배분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용 측면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누진과세도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효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분배 정책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소득격차 축소와 빈곤율 축소가 상호모순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인과관계에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정책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단순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재분배 후 소득의 상대비 격차를 축소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기보다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회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고소득층이 부정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고소득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고 혁신을 통해 높은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소득 및 잠재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기여도가 높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상대소득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재분배 정책을 빈곤율 저감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후생증진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기대와 달리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정책목표가 빈곤율 축소인지 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상대소득비의 격차 축소인지의 여부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책수단의 선택 및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KIPF**

<참고문헌>

- 김종면·성명재,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 04-02,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성명재, 「소득계층별 조세·이전지출 분포와 소득재분배」,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2006, pp. 5~45.
- _____,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자원 규모의 추정」, 『재정논집』, 제22집 제1호, 2007, pp. 61~88.
- 성명재·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56호), 한국재정학회, 2008, pp. 63~94.

<부록>

〈부표 1〉 최저생계비

(단위: 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1995	259,870	434,304	577,008	765,414	872,380	978,730
1996	270,426	451,457	602,297	793,904	904,594	1,015,564
1997	281,411	469,289	628,695	823,456	937,999	1,053,784
1998	292,842	487,824	656,250	854,107	972,637	1,093,442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부표 2〉 총소득 순위 기준 시장소득의 주요 백분위별 소득(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천원, 배)

	P10	P20	P30	P40	P50	P60	P70	P80	P90	P95	P99
1982	1877	2270	2627	2767	3360	3821	4420	5310	6780	8467	11805
1983	2021	2488	2789	3322	3770	4235	4893	5800	7407	8896	12813
1984	2241	2833	3270	3716	4195	4730	5368	6397	8168	9839	14702
1985	2439	2957	3491	3861	3257	4864	5567	6591	8172	10345	15976
1986	2738	2980	3973	4438	5030	5656	6434	7648	9681	11341	17265
1987	3276	3906	4504	5171	5800	6517	7603	8828	11206	13988	20158
1988	3152	4842	5560	6293	7024	7921	5649	10573	13417	16027	24107
1989	4786	5916	6833	7671	8567	9600	10871	12780	16064	19835	28565
1990	6065	7280	8350	9276	10339	11584	13016	15282	18852	22570	32454
1991	7363	9039	10192	11519	12936	14344	16105	18500	22222	22741	37046
1992	8603	10508	12061	13465	14949	16684	18610	21282	26320	30761	41824
1993	9330	11327	11613	14597	16247	17959	20105	22817	27739	32942	47867
1994	10570	12567	14674	16394	18415	20563	22777	26490	32463	37576	50441
1995	11861	14660	16748	18851	20912	23502	26495	30409	36505	41920	58248
1996	13042	16092	18516	20997	23666	26466	29709	33936	41027	48657	64345
1997	10820	15380	18716	21536	24244	27270	31084	35623	43421	52557	70616
1998	7744	12185	15366	18316	21058	22303	27461	32072	39835	44691	66950
1999	12099	11608	18000	20383	22840	26026	29654	4736	41638	48549	72602
2000	13275	16789	19606	22721	25029	27373	33310	38672	47582	56573	82428
2001	14430	17859	20840	23688	26924	30360	34936	40971	49528	58631	84454
2002	14584	18484	22304	25590	29061	32874	37769	44286	52349	63184	97416
2003	14588	18895	24306	23464	32047	36195	41499	48236	42016	70632	101064
2004	3332	15404	23360	29840	34187	39131	44658	51815	64507	77001	109872
2005	15989	20394	26821	30652	5262	40226	46226	53510	67140	81426	113012
2006	1439	14798	22401	230	33253	36464	45167	53360	63337	79704	106036
2007	11358	17746	24135	28976	34360	40086	46608	54960	69283	81651	117065
상대비	P90/P10	P95/P10	P99/P10	P80/P20	P90/P20	P95/P20	P99/P20	P50/P10	P90/P50	P95/P50	P99/P50
1982	3.612	4.511	6.289	2.339	2.987	3.73	5.2	1.79	2.018	2.52	3.514
1983	3.665	4.401	6.339	2.331	2.977	3.575	5.15	1.865	1.965	2.36	3.399
1984	3.645	4.39	6.56	2.258	2.883	3.473	5.189	1.872	1.947	2.346	3.505
1985	3.35	4.241	6.549	2.228	2.763	3.498	5.402	1.335	2.509	3.176	4.905
1986	3.535	4.141	6.305	2.567	3.249	3.806	5.795	1.837	1.925	2.255	3.433
1987	3.421	4.27	6.154	2.26	2.869	3.582	5.162	1.77	1.932	2.412	3.476
1988	4.256	5.084	7.647	2.184	2.771	3.31	4.979	2.228	1.91	2.282	3.432
1989	3.357	4.145	5.969	2.16	2.716	3.353	4.829	1.79	1.875	2.315	3.334
1990	3.109	3.722	5.351	2.099	2.59	3.1	4.458	1.705	1.823	2.183	3.139
1991	3.018	3.089	5.032	2.047	2.458	2.516	4.098	1.757	1.718	1.758	2.864
1992	3.059	3.576	4.862	2.025	2.505	2.927	3.98	1.738	1.761	2.058	2.798
1993	2.973	3.531	5.13	2.014	2.449	2.908	4.226	1.741	1.707	2.028	2.946
1994	3.071	3.555	4.772	2.108	2.583	2.99	4.014	1.742	1.763	2.041	2.739
1995	3.078	3.534	4.911	2.074	2.49	2.86	3.973	1.763	1.746	2.005	2.785
1996	3.146	3.731	4.934	2.109	2.55	3.024	3.999	1.815	1.734	2.056	2.719
1997	4.013	4.857	6.526	2.316	2.823	3.417	4.591	2.241	1.791	2.168	2.913
1998	5.144	5.771	8.645	2.632	3.269	3.668	5.494	2.719	1.892	2.122	3.179
1999	3.441	4.013	6	0.408	3.587	4.182	6.254	1.888	1.823	2.126	3.179
2000	3.584	4.262	6.209	2.303	2.834	3.37	4.91	1.885	1.901	2.26	3.293
2001	3.432	4.063	5.853	2.294	2.773	3.283	4.729	1.866	1.84	2.178	3.137
2002	3.589	4.332	6.68	2.396	2.832	3.418	5.27	1.993	1.801	2.174	3.352
2003	2.88	4.842	6.928	2.553	2.224	3.738	5.349	2.197	1.311	2.204	3.154
2004	19.359	23.108	32.973	3.364	4.188	4.999	7.133	10.26	1.887	2.252	3.214
2005	4.199	5.093	7.068	2.624	3.292	3.993	5.542	0.329	12.759	15.474	21.477
2006	44.03	55.408	73.713	3.606	4.28	5.386	7.166	23.117	1.905	2.397	3.189
2007	6.1	7.189	10.307	3.097	3.904	4.601	6.597	3.025	2.016	2.376	3.407

〈부표 3〉 시장소득 순위 기준 시장소득의 주요 백분위별 소득(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천원, 배)

	P10	P20	P30	P40	P50	P60	P70	P80	P90	P95	P99
1982	1821	2204	2566	2950	3282	3745	4348	5199	6632	8292	11700
1983	1944	2401	2828	3228	3703	4183	4815	5730	7271	8758	12813
1984	2154	2712	3179	3638	4152	4672	5314	6346	8043	9815	14669
1985	2412	2944	3412	3809	4230	4800	5465	6422	8466	10115	15561
1986	2624	3359	3897	4354	4949	5625	6383	7562	9591	11399	17265
1987	3190	3794	4426	5076	5707	6429	7475	8798	11276	13824	20158
1988	3794	4782	5431	6176	6950	7896	8981	10426	13289	15962	23470
1989	4551	5724	6626	7491	8391	9421	10731	12673	15942	19570	28314
1990	5833	7057	8173	9129	10137	11423	12860	15057	18544	22227	32248
1991	7077	8727	10024	11310	12571	14079	15842	18173	21868	25404	36920
1992	8372	10334	11821	13251	14731	16436	18301	20759	25938	30386	40970
1993	8969	11045	12703	14350	15968	17655	19836	22605	27469	32750	47289
1994	10180	12561	14440	16169	18141	20308	22943	26207	31590	36907	50441
1995	11390	14260	16497	18627	20789	23196	26089	30030	36198	41655	57240
1996	12591	15772	18166	20691	23318	26132	29366	33478	40280	48055	63858
1997	10194	14845	18176	21247	23873	26838	30470	34951	42757	51482	69732
1998	7374	11769	14983	17953	20831	23727	27028	31726	39449	46348	66676
1999	11643	14918	17513	19921	22696	25720	29274	34321	41262	49070	71000
2000	12695	16267	19123	22376	25409	28748	32826	38455	47150	56151	82428
2001	13734	17473	20318	23469	26424	29844	34467	40739	48964	57720	83756
2002	13969	17916	21545	25205	28535	32532	37413	43611	53378	62754	96679
2003	11859	18064	22533	26278	30579	34769	40052	46824	57205	69530	98361
2004	11862	18368	23266	27807	32390	36989	42648	49859	62327	75817	109739
2005	11685	18233	24096	28614	33033	38344	44220	51738	65265	78956	111189
2006	7448	13457	19297	24660	30402	36407	42973	51048	64171	77813	115075
2007	7705	14006	19929	26125	31510	37787	44669	52945	67190	79455	115583
상대비	P90/P10	P95/P10	P99/P10	P80/P20	P90/P20	P95/P20	P99/P20	P50/P10	P90/P50	P95/P50	P99/P50
1982	3.643	4.555	6.426	2.359	3.009	3.762	5.308	1.803	2.021	2.526	3.565
1983	3.741	4.506	6.592	2.387	3.028	3.648	5.337	1.905	1.964	2.365	3.461
1984	3.734	4.557	6.81	2.34	2.965	3.619	5.408	1.928	1.937	2.364	3.533
1985	3.511	4.195	6.453	2.182	2.876	3.436	5.286	1.754	2.002	2.392	3.679
1986	3.655	4.344	6.58	2.251	2.855	3.393	5.139	1.886	1.938	2.303	3.489
1987	3.535	4.334	6.32	2.319	2.972	3.643	5.313	1.789	1.976	2.422	3.532
1988	3.502	4.207	6.186	2.18	2.779	3.338	4.908	1.832	1.912	2.297	3.377
1989	3.503	4.3	6.222	2.214	2.785	3.419	4.947	1.844	1.9	2.332	3.374
1990	3.179	3.811	5.529	2.134	2.628	3.15	4.569	1.738	1.829	2.193	3.181
1991	3.09	3.59	5.217	2.082	2.506	2.911	4.231	1.776	1.74	2.021	2.937
1992	3.098	3.629	4.894	2.009	2.51	2.94	3.965	1.76	1.761	2.063	2.781
1993	3.063	3.651	5.272	2.047	2.487	2.965	4.281	1.78	1.72	2.051	2.962
1994	3.103	3.626	4.955	2.086	2.515	2.938	4.016	1.782	1.741	2.034	2.78
1995	3.178	3.657	5.026	2.106	2.538	2.921	4.014	1.825	1.741	2.004	2.753
1996	3.199	3.817	5.072	2.123	2.554	3.047	4.049	1.852	1.727	2.061	2.739
1997	4.194	5.05	6.841	2.354	2.88	3.468	4.697	2.342	1.791	2.157	2.921
1998	5.35	6.285	9.042	2.696	3.352	3.938	5.665	2.825	1.894	2.225	3.201
1999	3.544	4.214	6.098	2.301	2.766	3.289	4.759	1.949	1.818	2.162	3.128
2000	3.714	4.423	6.493	2.364	2.898	3.452	5.067	2.002	1.856	2.21	3.244
2001	3.565	4.203	6.099	2.332	2.802	3.303	4.794	1.924	1.853	2.184	3.17
2002	3.821	4.492	6.921	2.434	2.979	3.503	5.396	2.043	1.871	2.199	3.388
2003	4.824	5.863	8.294	2.592	3.167	3.849	5.445	2.579	1.871	2.274	3.217
2004	5.254	6.392	9.251	2.714	3.393	4.128	5.975	2.731	1.924	2.341	3.388
2005	5.585	6.757	9.515	2.838	3.579	4.33	6.098	2.827	1.976	2.39	3.366
2006	8.616	10.448	15.451	3.793	4.769	5.782	8.552	4.082	2.111	2.559	3.785
2007	8.721	10.313	15.002	3.78	4.797	5.673	8.253	4.09	2.132	2.522	3.668

<부표 4> 총소득 순위 기준 시장소득의 10분위별 평균소득(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천원, 배)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1460	2032	2394	2788	3139	3513	4036	4772	5787	8911	3883
1983	1591	2214	2627	3078	3472	3892	4471	5260	6384	9576	4257
1984	1757	2484	3022	3403	3894	4416	4945	5783	7108	10572	4739
1985	1925	2677	3216	3643	4034	4522	5145	5929	7182	11082	4935
1986	2118	3046	3650	4114	4638	5287	5944	6910	8446	12411	5657
1987	2525	3510	4130	4801	5396	6064	6906	8109	9873	14971	6628
1988	3034	4312	5146	5853	6541	7351	8415	9608	11617	17517	7938
1989	3717	5285	6242	7099	7918	8878	10049	11541	14018	21382	9613
1990	4742	6500	7646	8711	9656	10846	12066	13730	16592	24008	11448
1991	5828	8089	9327	10722	11998	13411	14819	16873	19868	27574	13850
1992	6758	9471	11114	12593	14066	15539	17332	19403	23021	31888	16119
1993	7203	10254	12035	13543	15277	16809	18768	20954	24349	35624	17482
1994	8085	11577	13589	15438	17091	19143	21595	24561	28612	38946	19866
1995	9067	13085	15415	17402	19774	21965	24586	28041	32549	44569	22644
1996	9949	14431	17000	19568	22028	24788	27520	31229	36399	50346	25328
1997	6695	12997	16759	19703	22556	25335	28562	32587	38498	54196	25789
1998	4941	9675	13413	16534	19342	22280	25431	29323	34881	50811	22663
1999	9196	13486	16288	18663	21501	24131	27426	31728	37399	53045	25287
2000	9983	14731	17747	20825	23867	27057	30648	35412	42467	62936	28570
2001	11079	15724	18984	21820	24934	28110	32030	37215	44564	64189	29865
2002	11046	16289	19926	23300	26738	30417	34755	40185	48253	69888	32081
2003	9417	15957	20268	24555	28540	32557	36758	43241	50263	74546	33611
2004	9573	16499	21133	25763	29787	34673	39464	45728	54486	80561	35768
2005	9499	16158	21823	26287	30595	35396	40614	47399	57242	84293	36933
2006	5938	11905	17040	21937	27696	33175	39296	46600	55675	83729	34299
2007	5907	12174	17898	23237	29104	34147	39927	47985	58560	85922	35485
상대비	10분위 /1분위	10분위 /1+2분위	9+10분위 /1+2분위	9+10분위 /1~4분위	8~10분위 /1~3분위	9+10분위 /5+6분위	5+6분위 /1+2분위	10분위 /5분위	5분위 /1분위	10분위 /6분위	6분위 /1분위
1982	6.10	2.55	4.21	1.69	3.31	2.21	1.90	2.84	2.15	2.54	2.41
1983	6.02	2.52	4.19	1.68	3.30	2.17	1.94	2.76	2.18	2.46	2.45
1984	6.02	2.49	4.17	1.66	3.23	2.13	1.96	2.71	2.22	2.39	2.51
1985	5.76	2.41	3.97	1.59	3.09	2.13	1.86	2.75	2.10	2.45	2.35
1986	5.86	2.40	4.04	1.61	3.15	2.10	1.92	2.68	2.19	2.35	2.50
1987	5.93	2.48	4.12	1.66	3.24	2.17	1.90	2.77	2.14	2.47	2.40
1988	5.77	2.38	3.97	1.59	3.10	2.10	1.89	2.68	2.16	2.38	2.42
1989	5.75	2.38	3.93	1.58	3.08	2.11	1.87	2.70	2.13	2.41	2.39
1990	5.06	2.14	3.61	1.47	2.88	1.98	1.82	2.49	2.04	2.21	2.29
1991	4.73	1.98	3.41	1.40	2.77	1.87	1.83	2.30	2.06	2.06	2.30
1992	4.72	1.96	3.38	1.37	2.72	1.85	1.82	2.27	2.08	2.05	2.30
1993	4.95	2.04	3.44	1.39	2.74	1.87	1.84	2.33	2.12	2.12	2.33
1994	4.82	1.98	3.44	1.39	2.77	1.86	1.84	2.28	2.11	2.03	2.37
1995	4.92	2.01	3.48	1.40	2.80	1.85	1.88	2.25	2.18	2.03	2.42
1996	5.06	2.07	3.56	1.42	2.85	1.85	1.92	2.29	2.21	2.03	2.49
1997	8.09	2.75	4.71	1.65	3.44	1.94	2.43	2.40	3.37	2.14	3.78
1998	10.28	3.48	5.86	1.92	4.10	2.06	2.85	2.63	3.91	2.28	4.51
1999	5.77	2.34	3.99	1.57	3.14	1.98	2.01	2.47	2.34	2.20	2.62
2000	6.30	2.55	4.26	1.67	3.32	2.07	2.06	2.64	2.39	2.33	2.71
2001	5.79	2.39	4.06	1.61	3.19	2.05	1.98	2.57	2.25	2.28	2.54
2002	6.33	2.56	4.32	1.67	3.35	2.07	2.09	2.61	2.42	2.30	2.75
2003	7.92	2.94	4.92	1.78	3.68	2.04	2.41	2.61	3.03	2.29	3.46
2004	8.42	3.09	5.18	1.85	3.83	2.10	2.47	2.70	3.11	2.32	3.62
2005	8.87	3.29	5.52	1.92	3.98	2.14	2.57	2.76	3.22	2.38	3.73
2006	14.10	4.69	7.81	2.45	5.33	2.29	3.41	3.02	4.66	2.52	5.59
2007	14.55	4.75	7.99	2.44	5.35	2.28	3.50	2.95	4.93	2.52	5.78



국방조달계약에서의 비용절감유인: 비용유인계약을 중심으로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kim@kipf.re.kr)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 변화와 예산절감 제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산절감에 대해 각 부처청 단위의 자율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절감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예산사업의 성질에 따라 절감 노력이나 절감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조달이나 구입 사업의 경우 가격 할인이나 구입처 변경 등의 방식이 유력할 수 있다. 기타직접사업일 경우 노동 강도의 조정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달성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조달사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부와 민간 간의 조달계약,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국방분야에서의 조달계약에 대해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비용절감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방조달계약 중 비용유인계약의 이해와 특성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방분야는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방분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주체가 주로 민간 또는 해외부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의 실행은 국방획득업무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방분야의 조달 또는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 위주로 이루어지며 국방 이외의 다른 분야의 조달 업무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달청 업무와 같이 국방조달업무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국방 관련 군수품 및 상용품 조달은 경제력 증가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인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 변화와
예산절감 제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산절감에
대해 각 부처청 단위의
자율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방산계약제도의
문제점은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계약유형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이 계약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부서에서 지나치게
확정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획득업무 중 국방조달업무는 주로 생산자와 국방당국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방조달의 계약방식은 일반물자는 일반적인 조달업무와 동일하지만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독특한 계약방식을 따른다. 즉, 일반물자에 대하여는 조달업무의 계약방식처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나뉘며,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낙찰,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다양한 방식의 독특한 계약방식이 활용된다. 따라서 방산물자의 성격에 기인한 계약방식의 효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심이 요구된다.

일반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경우, 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특정 단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존재하여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식이 존재하여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다분하지만, 조달계약에서의 비용절감 유인책의 적절한 사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 실행이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산계약제도의 문제점은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계약유형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이 계약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부서에서 지나치게 확정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유인부 계약제도로서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정산계약이 있음에도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목표원가산정 능력이 미흡하여(조직/인력/시간 및 비용 포함) 계약가 산정의 위험이 다소라도 있을 경우에는 정산형계약을 하고, 계약가 산정의 위험이 거의 없을 경우에만 확정형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 국방조달계약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III장에서는 조달계약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을 천착할 것이다. 또한 제IV장에서는 미국 국방조달계약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조달계약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기로 한다.



II. 국방조달계약 현황

1. 국방조달계약의 종류

조달계약을 일반적으로 계약자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가격의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분류한다.

국방조달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정부계약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제도와 방산물자 조달 시에 적용하는 방위사업법상의 계약제도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조달계약의 종류를 적용 법규에 따라 계약방식 및 계약방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국방조달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정부계약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제도와 방산물자 조달 시에 적용하는 방위사업법상의 계약제도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표 1> 적용법규별 국방조달계약의 종류

적용 법규	계약 방식	계약 방법	계약 종류
국가계약법 (일반물자)	경쟁계약	확정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확정계약	일반수의계약
			분할수의계약
		개산계약	일반개산계약
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수의계약	확정계약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개산계약	한도액계약
			일반개산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분류한다. 경쟁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조달하는 계약방식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경쟁계약의 특징은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다수의



현재 방산물자 계약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유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9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별 계약 건마다 그 이행에 관련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쟁의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이 있다.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상대로 협상에 의하여 조달하는 계약방식으로 가장 잘 준비된 계약상대자와 가장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당초 계획된 조달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의계약은 특히 계약체결 시 계약가격의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분류된다. 확정계약은 결정된 가격이 이행되는 것이고, 개산계약은 결정된 가격이 이후에 조건부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현재 방산물자 계약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유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9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별 계약 건마다 그 이행에 관련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각 계약 건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사용해야 계약당사자 갑, 을 모두의 위험을 줄이고 공동의 잠재적 이익을 용이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계약론적 관점이 고려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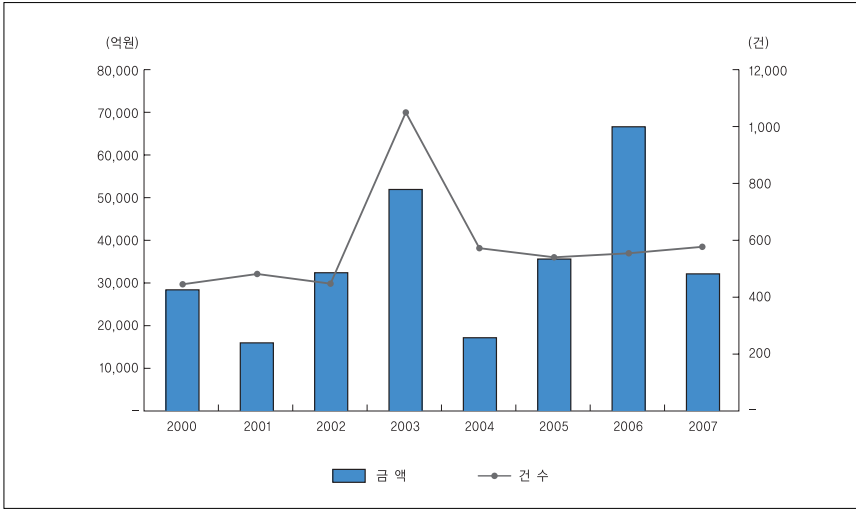
방산물자의 조달에 활용되는 계약유형으로는 확정형 계약으로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한도액계약 등과 정산형계약으로 일반개산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등이 있다.

2. 국방조달계약의 현황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등은 그 취지는 매우 고무적이거나 실질적으로 계약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2006년에 신설된 한도액계약은 1건으로 매우 저조하나 향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형은 일반 확정계약을, 정산형은 중도확정계약을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원가에 대한 정보가 확인 가능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산물자 조달 전체의 계약 건수 및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003년 계약 건수의 1회적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계약 건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06년에 계약금액의 증가가 나타나 거액의 주기성을 갖는 사업이 국방조달업무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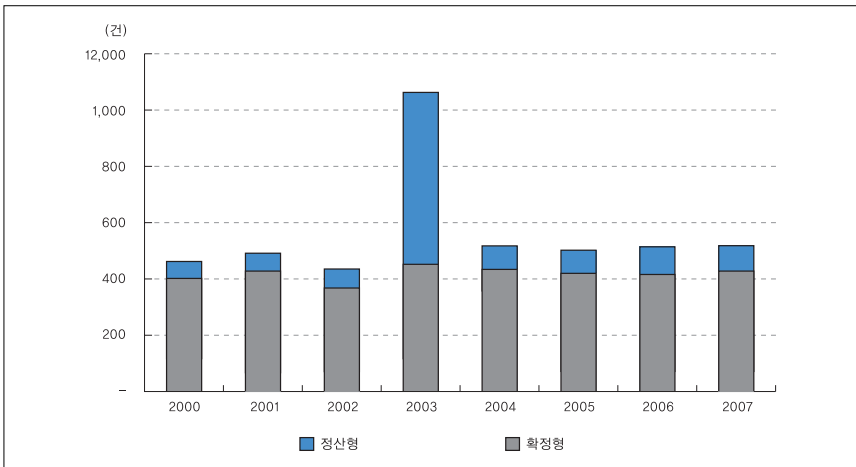
[그림 1] 총계약금액 현황



2003년도에 정산형계약의 건수가 1회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정산형 및 확정형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현황을 정산형계약과 확정형계약으로 양별하여 분석한 것이 [그림 2]와 [그림 3]이다. 2003년도에 정산형계약의 건수가 1회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정산형 및 확정형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3]에 의하면 2003년과 2006년의 주기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산형과 확정형 계약의 계약금액의 비율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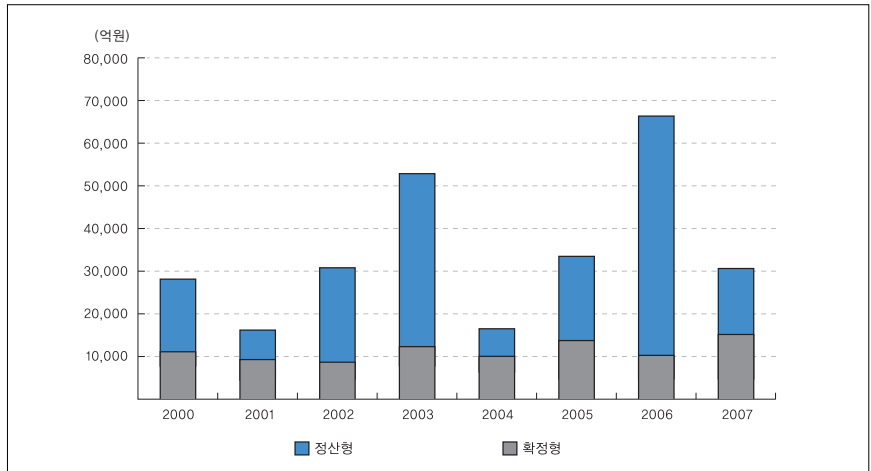
[그림 2] 정산형과 확정형 계약건수 추이





현재 국방조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일반확정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원가절감보상계약과
유인부확정계약은
계약건수가 전무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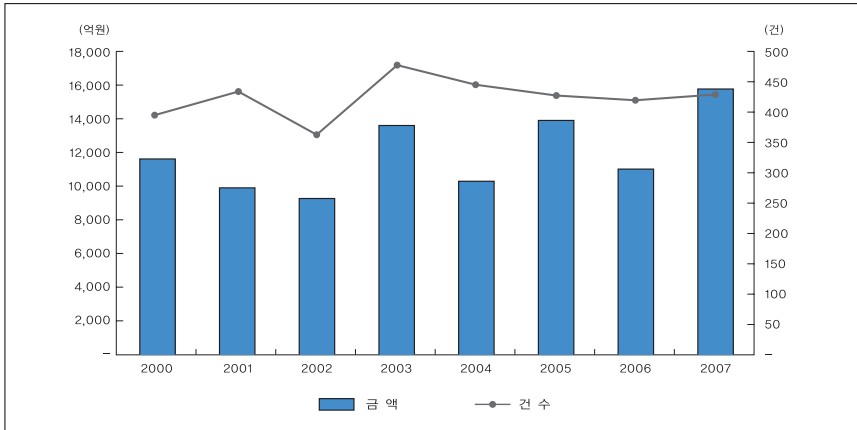
[그림 3] 정산형과 확정형 계약금액 추이



확정형계약 유형으로는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한도액계약의 5가지가 존재한다. 현재 국방조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일반확정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원가절감보상계약과 유인부확정계약은 계약건수가 전무함을 볼 수 있다. 확정형계약은 원가계상이 원활한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2003년도 이후에는 계약건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총계를 계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림 4]는 확정형계약의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보여준다. 확정형계약의 계약건수는 약 450건 내외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계약금액은 1조원 내지 1.5조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확정형 계약 추이



일반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이 이행되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계약형태이다.

일반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이 이행되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계약형태이다. 주로 규격과 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원가분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일반확정계약은 계약 후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계약금액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에 대한 절감분 모두가 기업에게 귀속된다. 이것은 계약이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가정할 때, 가장 강력하게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종종 그러나, 너무 큰 액수가 확정되어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거나, 너무 작은 액수가 확정되어 조달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가조정단가계약은 최근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최근 계약 실적 단가를 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조정하여 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이다. 최근 2년 이내에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 실적이 있고,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사용한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은 계약체결 시 원가절감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여 원가절감 성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보상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형태이다. 3년 이내 동일 품목 계약시 계속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고 원가절감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원가절감방안이 구체화되면 원가절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건수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실무적 차원에서 계약이행중에도 원가절감계획서를 제출할 수



유인부 확정계약은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은 계약 이행 후에 실제 발생원가에 목표이익과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계약형태이다.

있도록 하거나, 원가절감 입증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유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은 다른 계약에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인부 확정계약은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은 계약 이행 후에 실제 발생원가에 목표이익과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계약형태이다. 최고한도의 계약금액과 목표원가를 정하여 계약 상대자의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산식으로 표현된다.

$$\begin{aligned} \text{계약 대금} &= \text{실발생 원가} + \text{목표 이익} + \text{유인이익} \\ \text{유인 이익} &= (\text{목표원가} - \text{실발생 원가}) \times 50\% \end{aligned}$$

예를 들어 계약금액 120억, 실제 발생원가 90억, 목표원가 100억, 이윤율 15%일 때, 계약 대금은 110억원(= 90억+15억+(100억- 90억)×50%)이 된다. 만약 실제 발생원가가 130억원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지급한도액)인 120억원을 초과하므로 120억원만 지급하게 된다.

유인부 확정계약은 이하에서 살펴볼 미국국방조달계약의 비용유인계약(cost incentive contract)과 유사하다. 1966년에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비용유인 계약으로의 변환이 총조달비용의 10%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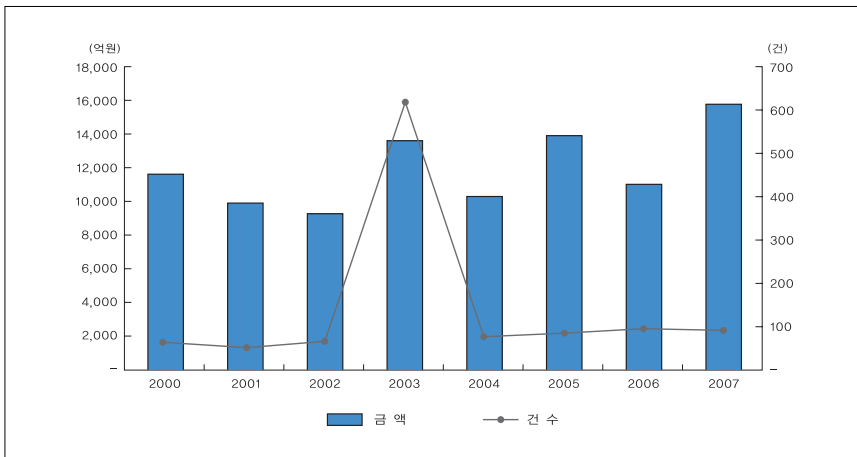
한도액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 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형태이다. 다른 계약유형과 달리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세부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실제 계약상대자가 독점공급원인 경우가 많아 국가계약법령이 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산형 계약의 유형으로는 일반개산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의 4가지가 존재한다. 정산형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국방조달의 대부분은 중도확정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계약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5]는 정산형계약의 계약금액과 계약건수를 보여 준다. 정산형 계약은 2003년도에 일회성으로 계약건수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건수가 100건 이내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증감을 나타내지만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이며 현재 1.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산형 계약은 주로 확정원가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대한 추계가 어렵다.

일반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 이행 후에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형태이다.

[그림 5] 정산형 계약 추이



계약금액 또는 가격의 결정시점에 따라 정산형 계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개산계약은 생산시점 이후에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중도확정계약은 이보다 좀 더 앞선 생산 중간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특정비목 불확정계약은 가능한 한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특정 비목에 대해서는 이후로 결정시점을 미루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계약체결 시 조건부적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일반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 이행 후에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형태이다. 계약금액은 계약 이행 후 총원가와 총원가에 일정 이윤율을 곱해서 산출한 이윤을 합하여 결정된다. 주로 연구, 시제 또는 초도 생산을 위한 계약으로서,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도확정계약은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의 결정이 곤란하여 계약 이행 중도에 그 때까지의 비용발생 실적을 기초로 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형태이다. 연구개발 및 시제 생산 후의 품목으로서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 이행 중 상당한 비용 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기간 중에는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은 원가 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계산이 곤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사하나
이윤지급범위를 목표원가의
7% 이상 1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형태이다.

란한 비목은 계약 이행 후에 정산하여 확정하는 계약형태이다. 일부 비목만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며,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시 확정된 부분의 원가와 계약 이행 후 확정된 부분의 원가를 합하여 결정된다.

이는 고액의 사업 또는 품목에 대해 일반개산계약이나 중도확정계약이 사용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정한 패턴을 갖는 소액의 특정비목에 대해 불확정계약을 하여 향후 정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중도확정계약의 취지와 비슷하다고 간주된다.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사하나 이윤지급범위를 목표원가의 7% 이상 1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형태이다. 유인부확정계약보다는 비용변동의 위험이 높을 경우 사용하는데, 유인부원가정산계약도 계약건수가 전무하여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살펴볼 미국 국방조달계약을 통해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III. 최적계약이론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전투기나 군함 같은 분리불가능(indivisible)한 국방물자에 대한 조달사업을 상정한다. 국민은 동 사업에 의해 S 만큼의 소비자 후생을 얻고, 이에 해당하는 조세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조세를 걷어 사용하는 데에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1원의 사용을 위해서는 $1+\lambda$ 만큼의 조세를 걷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λ 는 정부부문 전반의 비효율성 지표가 된다.

국방물자의 생산을 위해 발생한 비용 C가 사후적으로 정부와 업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가정하듯이 정부가 업체의 비용을 변상(reimburse)해 준다고 가정한다. 비용함수는 업체의 생산기술과 생산에 실제 투여되는 노력에 의존하는데

$$(1) C(\beta, e) = \beta - e$$

와 같다. 여기서 β 는 기업의 생산기술수준(타입)에 의해 달라지는 비용분을 의미한다. e 는 노력에 의해 감소하는 비용절감을 나타낸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투입하는 노력(effort)에 대해 부가적으로 금전적인 비용 $\psi(e)$ 가 발생한다고 한다. $\psi(e)$ 역시 노력을 강화할수록 수반 비용이 체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력(e)에 대한 증가함수이면서 볼록한 함수가



된다. 즉, $\psi' > 0$, $\psi'' > 0$, 그리고 $\psi(0) = 0$ 을 가정한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 투입 정도에 따라 순이전(net transfer) t 만큼 보전해준다.

기업의 노력(effort)에 대해 부가적으로 금전적인 비용 $\psi(e)$ 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기업의 순수익은

$$(2) U = t - \psi(e)$$

가 된다. 즉, 정부가 기업의 노력 투입에 대해 t 만큼 보전해 준 것에서 노력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여기서 t 는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주는 이전비용이므로 비용 C 와 합한 것이 예산규모가 된다. 즉, 예산규모는 사업 수행의 직접적 비용 C 와 기업의 노력 제공에 따른 부가적 이전비용을 합한 값이 된다. 동 예산은 국민의 조세로 충당된다고 가정한다.

국민은 사업에 대해 수익과 비용을 각각 가지는데 순후생은

$$(3) V = S - (1 + \lambda)(t + \beta - e)$$

와 같다. 정부는 국민의 순후생과 기업의 순수입의 합

$$(4) W = V + U = S - (1 + \lambda)(t + \beta - e) + t - \psi(e) \\ = S - (1 + \lambda)\{\beta - e + \psi(e)\} - \lambda U$$

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lambda > 0$ 이므로 위의 식에서 가능하면 U 를 줄이는 것이 최적이다. 즉, U 가 0이 되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예견된다.

정부와 업체 사이에 생산기술 수준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업체의 유형의 집합이 $[\underline{\beta}, \bar{\beta}]$ 로 연속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에 대한 확률누적함수를 F 라고 하고, 확률밀도함수를 f 라고 하자.

시현원칙(revelation principle)에 의해 어떠한 유인합치적인 제도(게임형식)도 β 에 대해 참된 보고를 하는 직접시현경기와 동일하다. 즉, 직접시현경기는 유형에 대한 보고와 보고에 근거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유형에 대한 보고 $\hat{\beta}$ 의 함수로 순이전과 비용보전을 나타내면 각각 $t(\hat{\beta})$, $C(\hat{\beta})$ 가 된다. 그러면 기업의 순수익은 자신의 유형과 보고에 의해 표현되는데

$$\varphi(\beta, \hat{\beta}) \equiv t(\hat{\beta}) - \psi(\beta - C(\hat{\beta}))$$

예산규모는
사업 수행의 직접적
비용 C 와 기업의 노력
제공에 따른 부가적
이전비용을 합한
값이 된다.



인센티브 메뉴를 설계하여 각각의 타입이 참된 타입을 보고하게 하고, 이러한 계약의 시행으로 손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다. 기업은 자신의 유형을 알고, 정부는 그 분포를 안다고 가정하자.

개괄적으로 말해서, 이때에는 정부가 기업의 각각의 타입에 맞는 순이전과 비용보전의 메뉴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센티브 메뉴를 설계하여 각각의 타입이 참된 타입을 보고하게 하고, 이러한 계약의 시행으로 손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 IC)과 개인합리성(individual rationality, IR)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인합치성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β, β' 에 대해서

$$(5) IC(\beta): t(\beta) - \psi(\beta - C(\beta)) \geq t(\beta') - \psi(\beta - C(\beta'))$$

식 (5)의 β 와 β' 을 바꾸고 더한 식을 (5')라 하고, 식 (5)와 (5')를 더하여 적분 형태로 바꾸면, $\beta' > \beta$ 에 대해 $C(\beta') \geq C(\beta)$ 가 성립한다. 즉, 유인합치성 조건은 $C(\cdot)$ 가 비감소(non-decreasing)함수임을 의미한다.

$$(6) \dot{C}(\beta) \geq 0$$

따라서, 비용함수는 거의 모든 값에 대해 미분가능하다. 식 (5)와 (6)을 통해 순이전 t 도 또한 거의 모든 값에 대해 미분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된 보고를 한다는 유인합치성의 필요조건은

$$\varphi_2(\beta, \beta) = 0 \text{ 또는 } \dot{t}(\beta) = -\psi'(\beta - C(\beta))\dot{C}(\beta)$$

이다. 유형 β 의 렌트를 $U(\beta) \equiv \varphi(\beta, \beta)$ 라고 정의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을 얻는다.

$$(7) \dot{U}(\beta) \equiv -\psi'(\beta - C(\beta))$$

따라서, $U(\cdot)$ 는 비감소(non-decreasing)함수이다. 식 (7)을 적분하면,

$$(8) U(\beta) = \int_{\beta}^{\bar{\beta}} \psi'(e(\beta))d\beta + U(\bar{\beta})$$

이다.

유인합치성 조건의 필요조건인 식 (6)과 (7)을 합쳐서 유인합치성 조건의 총



분조건이 된다. 즉, 식 (6)과 (7)은 유인합치성 조건과 동일하다.

정부의 극대화 문제는

$$\max_{\{e(\cdot), U(\cdot)\}} \int_{\underline{\beta}}^{\bar{\beta}} [S - (1 + \lambda)[\beta - e(\beta) + \psi(e(\beta))] - \lambda U(\beta)] dF(\beta)$$

subject to

$$(7) \dot{U}(\beta) = -\psi'(e(\beta))$$

$$(9) \dot{e}(\beta) \leq 1$$

$$(10) U(\beta) \geq 0 \text{ for all } \beta$$

이다. 식 (9)는 식 (7)의 다른 형태이다. 식 (10)으로부터 $U(\bar{\beta}) = 0$ 를 알 수 있다.

1계 조건을 구하면,

$$(11) \psi'(e(\beta)) = 1 - \frac{\lambda}{1 + \lambda} \frac{F(\beta)}{f(\beta)} \psi''$$

이다.

가장 효율적인 타입은 최적노력을 하도록 유인하면서 일종의 정보지대 (information rent)를 주고, 비효율적인 타입들에게는 최적노력보다 작은 노력을 유도한다. 최적제도에서 나타나는 비용보전을 구하면, $C^*(\beta) = \beta - e^*(\beta)$ 이다.

또한 순이전 t 와 실현비용 C 도 각각

$$(12) t^*(\beta) = \psi(e^*(\beta)) + U(\beta)$$

$$(13) C^*(\beta) = \beta - e^*(\beta)$$

로 구해진다.

타입의 분포가 로그오목성 또는 단조위험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유형에 대한 비용함수가 강증가성을 띠게 된다. 즉, 비용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여 비용에 대해 단조증가하는 유형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를 순이전함수에 대입하면, 비용에 대한 순이전함수

$$(14) T^*(C) \equiv \psi(e^*(\beta^*(C))) + U^*(\beta^*(C))$$

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미분을 통해 순이전함수가 볼록함수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장 효율적인

타입은 최적노력을

하도록 유인하면서 일종의

정보지대를 주고, 비효율적인

타입들에게는 최적노력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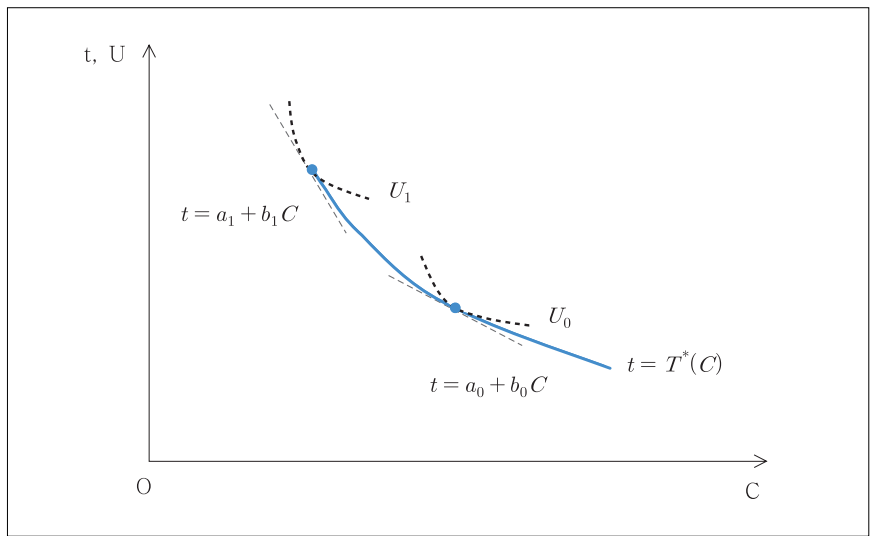
작은 노력을 유도한다.



순이전함수의
비용에 대한 볼록성은
최적계약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선형계약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러한 순이전함수의 비용에 대한 볼록성은 최적계약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선형 계약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은 순이전함수와 순수익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 선형계약이 주어졌을 때나 볼록한 최적계약이 주어졌을 때나 접점이 동일함을 보여준다.

[그림 6] 최적계약과 최적선형계약



최적선형계약은

$$(15) t(\hat{\beta}, C) = t^*(\hat{\beta}) - \psi'(e^*(\hat{\beta}))[C - C^*(\hat{\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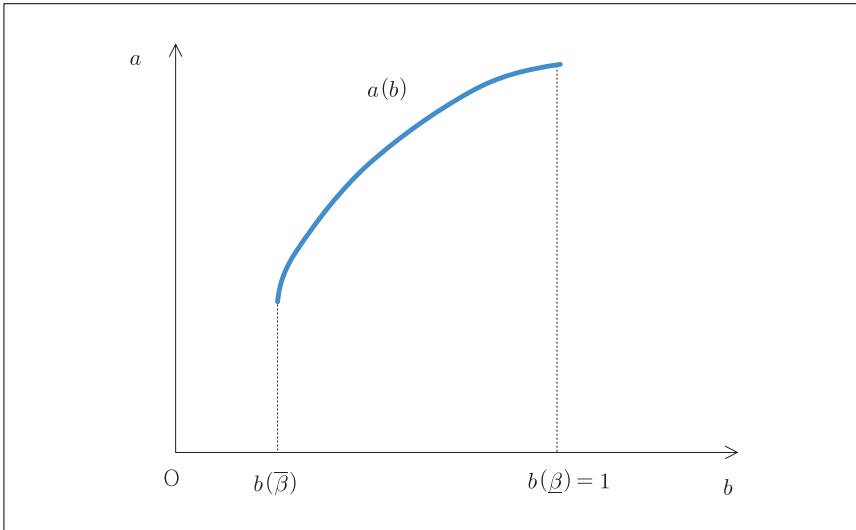
로 나타난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16) t = a + bC$$

이다. a 와 b 를 β 의 함수로 풀어쓴 후에, 두 식의 관계를 통해 β 를 상쇄시키면

$\frac{da}{ab} = C$ 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7] 비용분담과 고정가격의 관계



비용유인체계가 유형 또는 타입별로 변할 때, 기업의 지분이 커지면서 고정가격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7]은 유인체계의 기울기 변화가 고정가격에 미치는 정도를 보여준다. 기울기는 결국 비용절감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용유인체계가 유형 또는 타입별로 변할 때, 기업의 지분이 커지면서 고정가격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볼록성을 띠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비용추계치 또는 목표비용을 보고 받아서 이를 기준으로 기울기와 기대이익을 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현실의 계약제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용유인계약(cost incentive contracts)제도이다. 비용유인계약은

$$(17) t(C^a, C) = \tilde{a}(C^a) - \tilde{b}(C^a)[C - C^a]$$

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기울기는 초과비용에 대한 부담률을 나타낸다. C^a 는 표적비용 또는 목표비용이라 불리는 것으로, 표적비용이 제시되면 정부는 여기에 기초하여 고정가격분과 비용분담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분담률의 값에 따라, 비용유인계약을 다음의 정리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방산 물가를 조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형태는
연방획득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리 1]:

- (1) 타입의 분포가 단조위험성을 갖는 경우, 최적계약제도는 최적선형제도로 시행 가능하다.
- (2) 최적선형제도는 비용분담비율과 고정가격부분을 정하는 방식인 식 (17), 즉 비용유인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비용유인계약은 업체의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는데, (i) 만약 분담비율이 1이라면 고정가격계약(firm fixed-price contracts)이고, (ii) 만약 분담비율이 0이라면 비용부 고정수수료계약(cost-plus fixed-fee contracts)이며, (iii) 만약 분담비율이 0과 1사이라면, 고정가격유인계약(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이다.

다음 장에서는 [정리 1]에서 유형화된 국방계약제도가 비교적 잘 이해되고 활용되고 있는 미국 국방조달계약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V. 미국국방조달계약의 종류

전장에서 논한 최적선형계약 또는 비용유인계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 미국 국방조달계약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국방조달업무의 다양한 영역에서 표준적인 근거와 이론적 함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미국의 국방조달계약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방조달업무, 특히 조달계약의 선진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가 방산 물가를 조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형태는 연방획득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형계약(Fixed-price Type Contracts), 원가정산형계약(Cost Reimbursement Type Contracts), 유인부계약(Incentive Contracts)이 그것인데,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계약제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확정형계약(Fixed-price Type Contracts)은 사전에 확정가격을 정하거나 적당한 상황하에서 조정 가능한 확정가격을 결정하는 계약 형태이다. 이 계약에서는 계약자는 계약대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대신 정부는 특정한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의무를 진다. 이 계약 형태에 의하면 가격 면에서 경쟁이 가능하며 위험에 대한 부담과 비용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비교적 계약의 기대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확정형계약의 적용 전제는 타당



하고 명확한 계획 혹은 계약수행 세부 설명서가 사용가능하고 확정가격이 설정 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형계약에는 고정가격계약, 가격조정 조건부 확정계약, 재결정 고정가격 계약, 소급가격 재결정 고정상한가계약 등이 있다.

고정가격계약(Firm Fixed-Price Contract, FFP)은 계약 당시 가격을 확정하는 계약으로 우리나라의 일반확정계약과 동일한 계약이며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경쟁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고 비용에 대한 책임은 방산업체가 지게 되고, 정부는 최소한의 감독을 실시하고 결정된 가격은 변동을 하지 못한다.

가격조정 조건부 확정계약(Fixed-price Typ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FPC/EPA)은 상당히 긴 계약수행기간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변동이 예상될 경우 계약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가격을 조정하는 계약으로 가격조정 방식은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특정부품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 설정한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기간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단 특정부품의 가격변동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계약 기간 중 특정 노무비나 재료비가 변동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가격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단 비용 변동이 계약수행업체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재료비나 노무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 지수가 변동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계약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재결정 고정가격 계약(Fixed-Contract with Prospective Price Redetermination, FPRP)은 계약수행이 상당히 추진되었거나 완료된 후에, 최초로 결정한 계약가격을 소급하여 재결정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하에서 가격 재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계약수행 기간중 발생한 실제원가자료이다.

소급가격 재결정 고정상한가계약(Fixed-Ceiling-Price Contracts with Retroactive Price Redetermination)은 체결 당시 최고가를 설정한 후 계약 만료 시에 이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형태는 10만달러 이하의 R&D계약에 적합하며 앞서 기술된 다른 확정형 계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둘째, 원가정산형 계약(Cost Reimbursement Type Contracts)에는 비용 계약, 비용분담계약, 그리고 비용부 고정수수료계약, 비용부 장려수수료계약 등이 포함된다.

비용계약(Cost Contracts, C)은 계약기간중 발생한 원가를 모두 보상해 주

확정형계약에는 고정가격계약, 가격조정 조건부 확정계약, 재결정 고정가격 계약, 소급가격 재결정 고정상한가계약 등이 있다.



유인부 계약의
 종류로는 일정수준
 노력조건부계약, 고정가격
 유인수수료계약, 비용부 장려
 수수료계약, 비용부
 상여수수료계약
 등이 있다.

지만 이윤은 지급하지 않는 계약방식으로 이 계약은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다. 이 계약방식은 전혀 유인제공이 없는 것이다.

비용분담계약(Cost Sharing Contracts, CS)은 계약기간중 발생한 원가 중 일부만을 보상해주는 계약으로 발생 비용을 계약 당사자가 분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한다.

비용부 고정수수료계약(Cost Plus Fixed Fee Contracts, CPFF)은 발생 원가를 보상해주고 계약 당시 결정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연구나 설문 등에 있어서 수행할 노력의 정도나 결과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을 때 또는 개발/시험 등에 있어서 비용부 장려수수료계약(Cost-Plus-Incentive Contracts)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된다. 단, 예비연구가 사전에 수행되어 개발목표와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계약은 우리나라의 원가정산 이익확정계약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유인부 계약(Incentive Contracts)의 종류로는 일정수준 노력조건부 계약, 고정가격 유인수수료계약, 비용부 장려수수료계약, 비용부 상여수수료계약 등이 있다.

일정수준 노력조건부계약(Firm Fixed-Price, Level of Effort Term Contracts, FFPLOE)은 계약기간중 수행하기로 한 업무에 대해 일정 수준의 노력을 할 경우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행 노력에 대가가 지불된다. 주로 사전조사나 연구개발 계약에 사용된다.

고정가격 유인수수료계약(Fixed-Price-Incentive Fee Contracts, FPIF)은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사전에 확정된 후 실제 발생원가가 목표원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 중 일부를 미리 약속된 분담비율에 따라 유인이익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단, 계약 체결 시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이 금액까지만 계약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계약은 다음의 2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첫째, 목표가격을 계약 체결 시 확정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유인부 확정계약과 동일하다. 둘째, 목표가격을 조정하는 형태로서 계약 당시 정한 시점에 이르러 그간에 확보된 원가자료를 이용해 확정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목표비용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새로운 FPI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비용부 장려수수료계약(Cost-Plus-Incentive Fee Contracts, CPIF)은 우리나라의 유인부 원가 정산계약과 동일한 계약 형태로서 상한가가 없고 계약 상 위험을 경감하여 업체의 경쟁참여를 장려할 목적으로 기술 및 경제적 위험이 극히 높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무기시스템의 개발 계약에 적합한 계약이다.

비용부 상여수수료계약(Cost-Plus-Award Fee Contracts, CPAF)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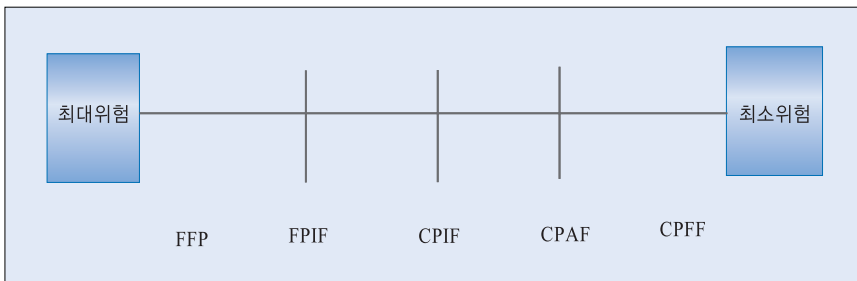


약완료 후 원가를 보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상여수수료로 구성되며 상여수수료는 계약 당시 합의된 평가기분에 대한 계약 수행자의 성과를 심사하여 계약담당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된다.

국방조달계약이 선진화되어 효율성과 경제성, 더 나아가 비용효과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계약 형태는 계약자와 국방부가 부담하는 원가 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펙트럼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8]은 3가지 주요 계약 형태의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다. 스펙트럼의 왼쪽 끝은 계약자가 위험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확정계약이고, 오른쪽 끝은 국방부가 배분하고 허용할 수 있는 계약자의 실제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고정수수료개산계약이다. 이 두 가지 양 극단 사이에는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기술 또는 원가, 공기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상이한 계약자 위험을 부담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림 8] 주요 계약형태의 종류와 계약자 위험과의 관계



출처: 안태식(2001)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국방조달계약의 현황과 비용유인계약에 기초한 미국 국방조달계약을 살펴보았다. 비용유인계약 자체가 역사적으로 많은 활용을 거쳐 형성되었지만 제III장에서는 정보경제학과 제도설계이론의 발달로 이론적 검증 또한 마쳤음을 보고하였다. 국방조달계약이 선진화되어 효율성과 경제성, 더 나아가 비용효과성(Value for Money)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용유인계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하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국방조달제도의 실제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요약컨대, 일반개산계약의 축소 및 단계별 폐지, 단계별 계약방법의 도입, 유인부 계약형태의 활성화 등을



국방조달에서 계약 형태를 적용할 때의 원칙은 계약환경의 불확실한 정도에 따라 정부와 업체 간 비용과 성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상호 효과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시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일반개산계약의 축소 및 단계별 폐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계약 이행 후 실발생비용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방산업체에게 실발생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일반개산계약은 비용절감유인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실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일반개산계약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반개산계약은 발생비용이 클수록 이윤이 증대되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계약이어서,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기대하기 곤란한 계약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조달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상세히 분류하여, 조달 유형에 적절한 계약 형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 개발 또는 시험, 시제 또는 성능개량, 초도생산, 대량생산 등의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는 계약방식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 사업별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 팀제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방법의 묵시적 활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명시성과 민간부문과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국방조달 단계별 계약 방법의 제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사료된다.

또한, 유인부 계약 형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유인부 계약제도는 업체가 원가를 절감할 경우 절감된 금액 중 일부를 추가이윤으로 업체에게 지불함으로써 업체의 원가절감을 유인하는 계약제도이다. 현행 유인부계약제도는 업체에 대한 보상 미흡, 상한가 적용규정 등으로 업체만 불리한 제도로 인식되어 계약체결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인부계약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유인이익 분담비율을 재조정하여 유인부계약제도의 시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유인부계약제도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방조달에서 계약 형태를 적용할 때의 원칙은 계약환경의 불확실한 정도에 따라 정부와 업체 간 비용과 성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상호 효과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가 가능한 확정가격계약으로 유도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개산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유인부 계약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용전액을 보상하는 개산계약의 형태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IDF



<참고문헌>

- 국방부, 『재정회계용어 해설집』, 1997
- 방위사업청, 『유인부계약제도 개선방안』, 2007
- 안태식, 「방산업체 적정원가 보상대책(2)」, 『국방과 기술』 제67호, 2001
- 안태식, 『방산물자 원가/계약 및 이윤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 장훈기, 『정부계약제도 해설』, 1998, 법률문화원
- 정원, 『공공조달계약법』, 2007
- Baron and Beshanko, “Monitoring of Performance in Organizational Contracting: The Case of Defense Procurement,”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90 pp. 329~356
- Hiller and Tollison, “Incentive versus Cost-Plus Contracts in Defense Procurement,”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26 pp.239~248
- Laffont and Tirole, *A Theory of Incentives in Procurement and Regulation*, 1993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표준비용모형에 대하여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ecpmh@kipf.re.kr)

EU 및 OECD의 많은 회원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안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을 계량화하여 측정하였고,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I. 서론

최근 OECD의 많은 회원국들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실시중이다. 이를 통해 규제에 의한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administrative burdens) 또는 형식적 행정절차(red tape)를 축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행정부담 축소 노력의 목적은 불필요한 민간부문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한 나라의 정부규제가 상대적으로 과할 경우 그 나라의 기업들은 새로운 경제환경에 더 느리게, 덜 신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한정된 자원이 행정적 활동에 투입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규제에 의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많은 OECD국가들이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중반 소규모 개방국가인 네덜란드는 이웃 나라인 앵글로색슨계 나라들보다 과잉규제로 인해 자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 등 경제성과가 낮음을 자각하였다. 또한 EU는 그 회원국들과 미국을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장 및 1인당 GDP에서의 격차가 EU회원국의 과잉규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네덜란드, 영국 등 개별 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하여 EU 및 OECD의 많은 회원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안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을 계량화하여 측정하였고,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추진 하는 등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¹⁾.

민간부문의 행정부담에 대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도로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민간의 행정부담 측정방법론이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이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형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라 기업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²⁾. 이 방법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수반된 활동들을 분석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산정하는 ‘활동기준원가(Activity-Based Costing, ABC)’ 계산법을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에 적용한 것이다.

표준비용모형의 특징은 규제를 받는 전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기업들을 조사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 측정치의 통계적 정확성은 비록 낮지만 전반적인 행정부담 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 모형은 규제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행정부담을 유발하는지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동 모형의 측정결과는 행정부담 감축 목표치의 설정 및 달성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선(baseline)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서 EU 회원국 같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여러 나라들 간의 행정부담 규모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들에 근거하여 표준비용모형은 행정부담의 측정 및 감축방안 마련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3년에는 표준비용모형의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함에 있어서 표준비용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총 행정부담은 GDP의 2~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세제도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은 총 행정부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체코 30%(사회보장세를 포함), 덴마크 25%, 네덜란드 27%, 영국 25% 등 조세제도로 인한 행정부담은 전체 행정부담의 적어도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규제로 인한 민간부문의 행정부담을 측

이러한 용도로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민간의 행정부담 측정방법론이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이다.

1)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에 관한 사항은 <부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표준비용모형은 기업의 행정부담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비영리단체의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표준비용모형을 활용하여 국세 및 국세행정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중이다. 이에 보고는 아직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에게 조차 생소한 표준비용모형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노력은 최근까지 기존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와 같이 총량 위주의 규제 정비에만 초점을 두어왔다(이종한 등, 2006). 그 결과 객관적 자료 및 정보에 의거하여 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OECD에서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논의가 확대되고, 2006년 실시된 OECD 규제개혁모니터링에서 우리나라에 행정부담 측정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정책 도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 의거 2007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표준비용모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해 보았고, 이를 통해 특정분야³⁾와 관련된 기업의 행정부담을 시범적으로 측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제3조①의 6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술적으로 세제당국과 세정당국은 규제기관(regulator)이 아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담 측정 및 감축방안 도입계획에는 전체 행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조세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조세제도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이명박정부의 집권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세청장은 2008년 3월 영국, 네덜란드 등 OECD국가에서 활용중인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도입하여 국세로 인한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보고는 아직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에게 조차 생소한 표준비용모형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재 표준비용모형을 활용하여 국세 및 국세행정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측정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행정부담을 시범적으로 측정하였다.



II. 표준비용모형

1. 표준비용모형의 개요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 SCM)이라 함은 특정기간 동안 정부의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민간부문의 행정적 부담을 측정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부의 규제가 민간부문에 요구하는 의무, 즉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활동(Administrative Activities)’에 소요되는 비용인 ‘행정부용(Administrative Costs)’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표준비용모형은 행정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특정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수반된 활동들을 분석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측정하는 ‘활동기준원가(Activity-Based Costing, ABC)’ 접근법을 행정비용의 측정에 적용한 것으로서 행정활동비용을 [원가×수량]으로 공식화하여 측정한다.

표준비용모형의 행정비용 산출방식을 간략하게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부문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특정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무내용을 파악하고, 요구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며, 궁극적으로 그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투입된 시간을 측정한다. 그리고 소요된 시간에 적절한 임금률을 적용하여 특정 정보제공의무의 ‘원가’를 계산한다. 이처럼 원가를 산정할 때 표준비용모형은 특별히 더 효율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표준적으로 효율적인(normally efficient)’ 기업이나 개인을 상정하여 표준화된 원가를 측정한다. 그런 다음 특정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수 및 수행 빈도 등으로부터 ‘수량’을 도출한 후 ‘원가’와 결합시킴으로써 행정비용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표준비용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받는 전체 기업이나 개인들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기업이나 개인들을 조사하여 행정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 측정치의 통계적 정확성은 비록 낮지만 전반적인 행정부담 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실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표준비용모형은 규제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행정비용을 유발하는지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곳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적절한 감축계획을 수립하게 해준다. 즉 행정비용 측정을 바로 행정비용 감축방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동 모형의 측정결과는 행정부담 감축 목표치의 설정 및 달성 여부의 판단에 필

표준비용모형은 특정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임금률을 측정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의 수 및 수행빈도를 조사하여 수량변수를 도출한 후 원가에 수량을 곱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4) 표준비용모형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민간에 부과한 의무를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이라고 부른다. 이하에서는 본 용어를 사용한다.



표준비용모형의 장점은
 측정치의 통계적 정확성은
 비록 낮지만 전반적인 행정부담
 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고 민간부문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곳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적절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한 기준선(baseline)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EU 회원국 같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여러 나라들 간의 행정부담 규모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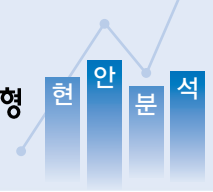
한편 표준비용모형의 측정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업들을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표준비용모형은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는 모형이지만 그 주요 개념들 중 일부는 사용하는 나라들 간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Cavallo et al., 2007).

2. 표준비용모형의 주요 개념

본절에서는 표준비용모형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세제도로 인해 민간부문이 감당하는 납세협력비용과 개념적으로 연계시켜보고자 한다.

가. 규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규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정의된 행정규제의 유형과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다음의 <표 1>과 같이 분류된다.



〈표 1〉 규제의 유형

구분	세 부 내 용
(유형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1. ①허가 ②인가 ③면허 ④특허 ⑤승인(승락) ⑥지정 ⑦추천 ⑧동의(협의) 검사 인정 2. ①시험(심사) ②검사(검정, 검인) ③인정(인증, 공인) ④ 확인 ⑤ 증명 ⑥기타2
(유형 2)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① 면제(공제, 해제) · 말소 등의 결정 ② 시정 · 개선조치 등의 명령 ③ 지도(감독 · 권고) ④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⑤ 행정질서벌 (영업정지, 취소, 과태료부과 등) ⑥ 기타3
(유형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content obligation)를 부과하는 사항	① 신고의무 ② 보고의무 ③ 등록의무 ④ 고용의무 ⑤ 통지의무 ⑥ 제출의무 ⑦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 공시, 공고 ⑧ 금지(부작위) ⑨ 기타4: 해당항목에 유사 분류될 수 있으나 열거된 세부유형으로 (용어가 없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비용모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①직접적인 재무비용, ②구조비용, ③순응비용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제3조①의 6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세법 및 세무행정 관련 규정들은 인·허가, 세무조사, 신고의무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

나. 규제와 관련된 제 비용 개념들

표준비용모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용을 크게 ①직접적인 재무비용(direct financial costs), ②구조비용(structural costs), ③순응비용(compliance costs)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적 재정비용’은 직접적인 지불의무가 부과된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행정수수료, 세금 등을 나타낸다. ‘구조비용’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유와 선택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에 따른 비용이다. 이는 조세제도의 비중립성으로 인한 초과부담(excess burdens) 또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es)과 동등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순응비용’은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 직접적인 재무비용과 장기적 구조비용을 제외한 것을 나타낸다. 조세를 하나의 커다

표준비용모형에서는 순응비용을 다시 '실체적인 순응비용'과 '행정비용'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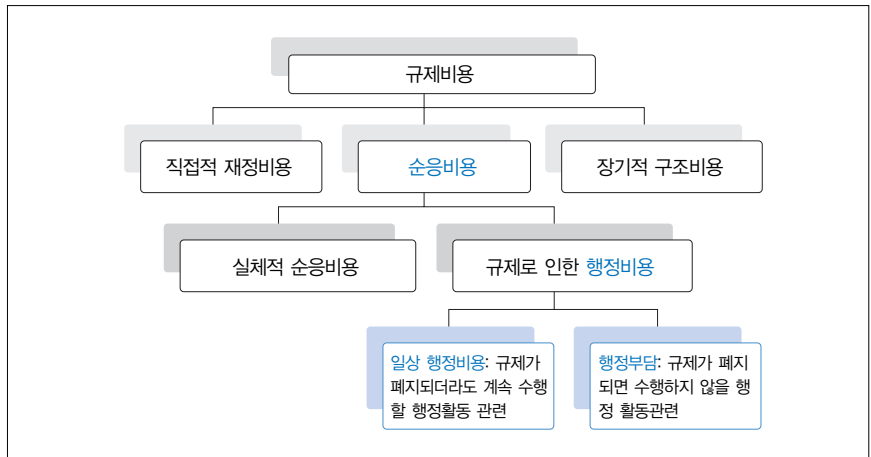
란 규제로 간주한다면 '순응비용'의 개념이 바로 납세협력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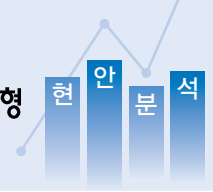
또한 표준비용모형에서는 순응비용을 다시 '실체적인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과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으로 구분한다. 이때 '실체적 순응비용'은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 또는 개인들이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말아야 하는 작위·의무(content obligation)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체적인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에 따른 필터 설치비용, 근무조건 규제에 따라 설치된 물리적 시설들에 투입된 비용이 실체적 순응비용에 해당한다.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가 실체적인 순응비용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작위·부작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규제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규제의 요구가 바로 정보제공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에 투입된 비용이 바로 '행정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필터 설치에 관한 문서작성 비용, 근무조건에 관한 연간보고서 작성 비용 등이 바로 행정비용에 속한다.

한편 행정비용은 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등 민간부문들이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표준비용모형에서는 규제가 폐지되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행정활동에 따른 비용을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으로 정의하며 행정비용의 한 구성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규제로 인한 비용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형의 1차적인 측정대상은 행정비용이지만 이 중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계속 수행할 행정활동 관련 비용인 '일상 행정비용(business as usual costs)'을 제외한 '행정부담'을 측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나라의 측정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를 하나의 커다란 규제로 간주한다면 '순응비용'의 개념은 흔히 세무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납세협력비용 개념과 상통한다. 순응비용에서 실제적 순응비용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조세분야에서는 협의의 납세협력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세분야에 있어서 실제적 순응비용은 그 규모가 작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표준비용모형을 활용하여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세를 하나의 커다란 규제로 간주한다면 '순응비용'의 개념은 흔히 세무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납세협력비용 개념과 상통한다. 순응비용에서 실제적 순응비용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조세분야에서는 협의의 납세협력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 IO)와 자료요구(Data Requirement, DR)

정보제공의무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이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외에도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요청에 대비하여 정보를 보관·갱신해야 하는 것도 정보제공의무에 포함된다. 또한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세무조사, 감사 등의 행정처분 및 감독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도 정보제공의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식별된다. 이때 하나의 규제가 여러 개의 정보제공의무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조세 및 조세행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는 아래의 <표 2> 같이 1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제공의무란

정부의 규제에 의해 민간부문이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정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정부를 보관·갱신해야 하는 의무, 세무조사 및 감사 등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등을 가리킨다. 조세 및 조세행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는 1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정보제공의무의 유형

번호	구분	개념	세부내용
①	등록	납세자의 세법상 지위 취득 및 변동사항 등을 과세관청 공부(公簿)에 수록하는 행위	-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 휴·폐업 신고
②	거래증빙서 발급 등 제3자에게 정보제공	국세청을 제외한 제3자(고객, 피고용인, 주주 등)에 대해 거래 관련 정보 제공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작성·보고
③	기록 및 서류 보관	세무조사 등 미래의 정보제공에 대비하여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신고서, 등록증 등의 보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증빙 등 증빙서류 보관 - 각종 신고서, 등록증, 허가증 보관
④	변경사항(사실) 통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실관계의 발생·변경 등에 대해 알리는 절차	- 사업연도 신고·변경, 내용연수 신고 -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간이과세포기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의도 통지
⑤	인가(승인)신청	세무와 관련된 납세자의 행위가 세법상 적법하도록 과세관청에 승인 요청 *인가·신청에 의한 행위 보완(승인 필요)	- 감가상각방법 변경, 감가상각특례 신청 - 기한연장, 징수유예 신청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⑥	허가·면제 신청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거나,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 * 허가 - 일반적·상대적 금지 사항(부작위)의 해제 * 면제 - 법에 의한 작위·급부·수인 등 의무 해제	- 주류 제조·판매 허가 - 각종 면제 신청
⑦	질의·자문신청	세법상 과세여부,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 서면·인터넷 질의 - 과세쟁점자문 신청
⑧	신고·납부	세법상 규정된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신고와 세금 납부	- 각종 제세의 신고(수정신고, 경정청구 포함) - 신고서 첨부·부속서류의 제출(④, ⑤, ⑥, ⑨ 등 타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
⑨	공제·감면 신청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 신청	- 연구 및 인력 개발비세액공제, 임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액감면
⑩	세무조사·소명요구 협조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협조	- 회계처리·세무조정 근거 제시 - 거래사실 입증서류 제출 - 과세자료 소명서 제출
⑪	불복청구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 과세전적부심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청구 - 심판청구, 행정소송
⑫	증지(증명)부착	세금관련 정보제공 목적의 표지(label) 부착	- 주류에 각종 표시 부착 - 계약서 등 과세문서에 인지 부착 - 가격 구분 표시
⑬	자료제출	법령 근거 등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한편 자료요구는 정보제공의무의 하위 개념으로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준비·제공하여야만 하는 개별 데이터 및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정보제공의무는 한 가지 이상의 자료요구로 구성된다. 아래의 <표 3>은 자료요구의 유형과 세부내용을 나타낸다.

행정활동이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 및 그 구성요소인 자료요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내용 숙지, 자료수집, 서식 작성, 자료 제출 등과 같이 수행해야 하는 다수의 구체적인 행정적 업무들을 의미한다.

<표 3> 자료요구의 유형

구분	개념 및 세부내용
기업자료 (business data)	- 기업과 관련된 고정 자료*로서 신고의 대부분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정보 예: 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업자료는 다른 자료요구 유형과는 달리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자료임 (예: 기업명 및 주소는 자주 변경되는 자료가 아님)
생산자료 (production data)	- 기업의 실제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 예: 생산규모, 생산물
인사자료 (personnel data)	- 기업의 인사관련 자료로서 개별 피고용자에 관련된 정보가 이에 해당됨 예: 보수, 고용기간, 출산휴가, 병가 등
구매자료 (purchasing data)	- 기업의 투입(input)에 대한 자료로서,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된 정보가 이에 해당됨
판매자료 (sales data)	- 기업의 산출(output)에 대한 자료로서,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됨
생산품자료 (product data)	- 소비자정보를 포함한 생산품 자체에 대한 자료 예: 무게, 법정경고문, 내용물 등
세무 및 회계자료 (tax/accounting data)	- 위의 6개의 자료요구 유형들로부터 처리된 정보로 구성되며 신고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세무 회계 상 자료임

라. 행정활동(Administrative Activities)

행정활동이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 및 그 구성요소인 자료요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내용 숙지, 자료수집, 서식 작성, 자료 제출 등과 같이 수행해야 하는 다수의 구체적인 행정적 업무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활동들을 완수하는 데 투입된 시간 및 활동 수행자의 임금률 등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됨으로써 개별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원가의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형에서는 행정활동을 아래의 <표 4>와 같이 16가지



한편 정보제공의무 유형들과 표준 행정활동 유형들 간에 용어가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으로 표준화시켜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⁵⁾.

〈표 4〉 조세분야와 관련된 민간의 행정적 업무 유형

I. 정보제공의무의 이해(Understanding the requirement)	
1. (정보제공의무의 숙지) 세금신고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정부 또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내용의 숙지	
2. (직원교육) 담당 직원에게 해당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와 관련된 개정세법 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II. 정보 수집 및 평가(Gathering the information)	
3. (자료수집)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수치의 검색 및 수집	
4. (자료평가) 수집된 자료나 수치 중 과세당국이 용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수치가 무엇인지 판별, 수집된 정보가 과세관청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평가	
III. 수치계산 및 보고서/신고서 등 작성준비(Calculation and Preparation)	
5. (계산 및 추계)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등 필요한 수치 계산 및 추계	
6. (오류검토) 다른 자료와의 비교 등을 통해 기재된 수치의 정확성 여부 등을 검토	
7. (수정) 검토 결과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	
8. (내부의견수렴) 정보제공의무의 준수와 관련된 내부직원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내부회의 개최	
9. (외부의견수렴) 정보제공의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이를 위한 회의 개최	
IV. 확정 및 보고(Finalization and transmission)	
10. (보충자료작성) 요구된 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설명·진술 등의 목적으로 보충적인 자료 및 보고서 작성	
11. (수치기재) 신고서식 등 각 란에 산출된 값을 기입하여 요구된 서식 작성	
12. (신고 및 관련 서류제출) 세무당국에 신고서(전자신고·수동신고) 또는 각종 자료 제출	
13. (서류정리 및 보관) 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 정리·보관	
14. (확정·납부) 세금 및 수수료 등을 확정하여 납부	
V. 합의도달(Reaching the agreement)	
15.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협조	
16. (경정처분반영)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수정	

한편 정보제공의무 유형들과 표준 행정활동 유형들 간에 용어가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3개 정보제공의무 유형 중 “세무조사 및 소명요구 협조”와 16개 표준 행정활동 유형 중 “세무조사”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세무조사”라는 행정활동에서는 국세청이 실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

5) 여기서는 일반적인 행정규제를 상정하기보다는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이 수행하여야만 하는 행정적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에서 민간부문이 국세청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직전 또는 그 과정중에 요청된 자료수집 및 자료평가를 위해 투입된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은 각각 자료수집 및 자료평가라는 행정활동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조사 및 소명요구 협조”라는 정보제공의무는 일련의 표준행정활동을 수반한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국세청을 지원하는 활동을 나타내는 “세무조사”라는 행정활동은 “세무조사 및 소명요구 협조”라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행정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표준비용모형에서는 개별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와 관련된 원가를 행정활동별로 측정함에 있어서 ‘표준기업’의 원가 정보를 활용한다.

마. 표준기업

표준비용모형에서는 개별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와 관련된 원가를 행정활동별로 측정함에 있어서 ‘표준기업’의 원가 정보를 활용한다. 즉 행정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더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업 및 개인의 원가 정보를 제외시키고 ‘정상적으로 효율적인(normally efficient)’ 기업 및 개인의 원가 정보만을 활용한다. 따라서 표준기업이란 표준비용모형의 기본 측정 단위로써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업종별, 규모별로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형에서는 처음부터 조사대상자들을 그 규모나 업종에 따라 유형구분(segmentation)을 한 후에 유사한 속성을 지닌 그룹 단위별로 표준기업의 원가 정보를 파악한다. 이때 표준기업의 원가 정보는 개별 기업 및 개인들의 인터뷰 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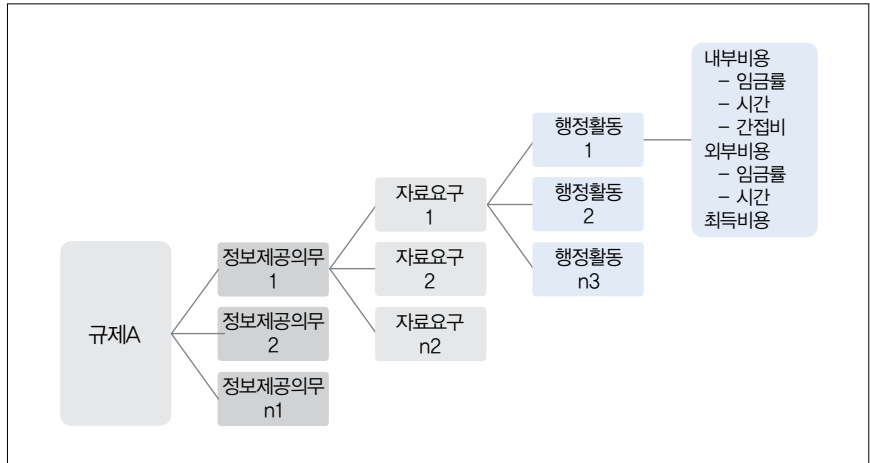
3. 표준비용모형의 비용 산정 방식

먼저, 표준비용모형의 비용 산정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 규제물(정보제공의무 → 자료요구)로 단계적으로 분류한 후 각 자료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수행한 표준행정활동을 식별하고, 해당 표준행정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내부비용과 외부비용 및 취득비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특정 정보제공의무의
수량정보는 국가적으로
해당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전체 기업 또는 개인의 수와
정보제공의무의 연간 발생 빈도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림 2] 표준비용모형의 구조



출처: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 Measuring and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for businesses』, p. 9, SCM Network.

내부비용은 특정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활동을 내부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측정되며, 관련 행정활동의 완료에 투입된 총 시간과 해당 직원의 시간당 임금률을 곱한 인건비와 인건비의 일정비율로 배분되는 간접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간접비는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대료 또는 건물 감가상각비, 냉난방비, 사무용품비, 전화, 전기, IT장비 등 고정된 행정비용(fixed administrative costs)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간접비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 인건비의 25% 내지 30%로 간주된다.

한편 외부비용은 특정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활동을 외부인사가 수행한 경우에 측정되며, 외부인사의 투입시간과 시간당 임금률의 곱으로 계산된다.

취득비용은 특정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의 이행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의 연간 환산비용으로서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예를 들면, 세무신고서를 세무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요금, 편지지 비용 및 세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등이 취득비용에 해당된다. 한편 특정 정보제공의무의 수량정보는 국가적으로 해당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전체 기업 또는 개인의 수와 정보제공의무의 연간 발생 빈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원가 정보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유형별로 도출



된 경우 수량 정보도 각 유형별로 도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국가단위의 전체 행정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은 해당 정보제공의무의 원가에 수량을 곱하여 유형별 납세협력비용을 구한 다음 그 합계를 도출하면 된다. 아래에서는 특정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산정 방식을 보여준다.

특정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국가단위의 전체 행정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은 해당 정보제공의무의 원가에 수량을 곱하여 유형별 납세협력비용을 구한 다음 그 합계를 도출하면 된다.

[사례] A라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총 행정비용의 계산

- 1) A라는 정보제공의무(예: 법인세 신고서 작성과 제출)와 관련된 기업은 전국에 1만개가 있으며, 동 정보제공의무는 연간 4회 제출하도록 법령(세법)에 규정
 - 2) 동 의무를 1회 준수하기 위해 표준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5,000원인 사무직 직원이 10시간 정보검색을 하고, 시간당 임금이 15,000원인 사무직 직원 2명과 시간당 임금 20,000원인 중간관리자 1명이 2시간의 내부회의를 개최하는 활동을 수행(간접비는 25%의 비율 적용)
 - 3) 법인세 신고서의 일정 부분은 세무사와 계약을 맺어 작성하며, 외부용역 1회당 비용은 500,000원
 - 4) 동 신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발송료, 인쇄비 등 취득비용은 10,000원
-
- ▷ 수량변수의 계산
 - 10,000개 기업×연4회 = 40,000
 - ▷ 원가변수의 계산
 - 내부비용(인건비+간접경비): 312,500원
 - * 인건비 = [(15,000원×10시간)+(15,000원×2+20,000원)×2시간] = 250,000원
 - * 간접비 = (250,000원×25%) = 62,500원
 - 외부비용 : 500,000원
 - 취득비용 : 10,000원
 - 원가 = 내부비용+외부비용+취득비용 = 312,500원+500,000원+10,000원=822,500원
 - ▷ A라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총 납세협력비용
 - 원가×수량=822,500원×40,000=329억원

주: 국무조정실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의 사례를 수정한 것임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형의 측정과정은 크게 4개의 국면, 15단계로 이루어진다. 4개 국면은 시작 국면, 예비분석 국면, 자료수집 및 표준화 국면, 비용산출 및 보고 국면으로 구성된다.

IV. 표준비용모형의 측정과정

본절에서는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규제로 인한 민간부문의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형의 측정과정은 크게 4개의 국면(phase), 15단계(step)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별 측정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표준비용분석의 측정과정

국면 0: 시작(Star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분석하려는 규제 식별 -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간 분석 범위, 작업일정, 작업분담 등의 합의를 위한 회의 	
국면 1: 예비 분석(Preparatory analysis)	
1단계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행정활동의 식별 및 규제의 원천에 따른 구분
2단계	관련 규제의 식별 및 경계설정
3단계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별 분류 (optional step)
4단계	기업 등 조사대상의 유형구분(segmentation)
5단계	(조사대상 유형별) 모집단, 비율 및 빈도수의 식별
6단계	정보제공의무별 조사 방법론(기업인터뷰 vs 전문가평가) 결정
7단계	관련 비용변수의 식별
8단계	인터뷰 가이드의 준비
9단계	step 1-8에 대한 전문가 검토
국면 2: 자료 수집 및 표준화(Time and cost data capture and standardization)	
10단계	인터뷰 대상자 선정
11단계	인터뷰 실시
12단계	비용변수의 (조사대상 유형별) 표준화
13단계	step 10-12에 대한 전문가 검토
국면 3: 비용산출 및 보고(Calculation, data submission and reports)	
14단계	행정비용 산정
15단계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화

출처: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 Measuring and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for businesses", pp. 20-21, SCM Network.

먼저, '시작' 국면에서는 예비 분석(preparatory analysis)이 시작되기 전에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분석하려는 규제를 식별하여야 한다. 즉 사전적인 검열 작업을 통해 분석에 포함될 규제의 목록을 작성하는 등 분석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행정비용 규모 파악 및 감축량 설정에 사용할 기준치(baseline) 측정 등과 같은 대규모 분석의 경우 시작국면 단계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발족회의(start-up meetings)를 열어서 분석대상, 일정, 상호 업무분담 등에 합의를 도출한다.

‘예비분석’ 국면은 크게 규제분석을 통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를 식별하는 작업과 수량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각 규제를 분석하여 민간부문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및 그 구성요소인 자료요구를 식별하여야 한다. 표준비용모형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는 규제와 민간부문이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활동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와 자료요구를 식별하는 작업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후속 작업들이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활동을 유형화·표준화하는 등의 식별도 1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에서 제시한 16개 표준 행정활동을 차용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식별된 정보제공의무와 규제 간에 대응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하나의 정보제공의무가 다수의 규제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행정비용이 중복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소관 부처 간에 행정비용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개별 정보제공의무와 규제들을 파악하고, 하나의 정보제공의무와 여러 개의 규제가 연결된 경우 어떻게 관련 행정비용을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3단계에서는 식별된 정보제공의무를 그 유형별로 묶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단계는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이고 표준비용모형 측정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단계는 아니다.

4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이질적인 경우 표준화의 작업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유형구분(segmentation)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소기업이 특정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하는 자원의 범위가 크게 상이할 것이므로 이 두 그룹을 분리해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형구분의 기준은 업종, 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 수, 외부전문가 이용 여부 등이 사용된다.

5단계에서는 각 정보제공의무별로 수량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즉 개별 정보제공의무별마다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업 및 개인의 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를 연간 몇 번의 빈도로 이행하는지 결정한다.

‘예비분석’ 국면은 크게 규제분석을 통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를 식별하는 작업과 수량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자료수집 및 표준화 국면에서는 앞서의 예비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 및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다. '비용산출 및 보고' 국면에서는 행정비용 산정 및 보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6단계에서는 개별 정보제공의무의 특성을 검토하여 비용변수에 대한 정보를 실제 인터뷰를 통해 확보할지 아니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확보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외부전문가에 의해 이행되는 정보제공의무는 직접적인 인터뷰보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비용변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7단계에서는 비용변수를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내부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임금률을 어떻게 산정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내부직원들의 직급을 유형화하고, 각 직급별 임금률을 통계청의 임금 관련 서베이 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다. 그런 다음 전문가와의 평가를 거쳐 이를 확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8단계에서는 실제 인터뷰에 사용할 인터뷰 가이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보다 일관된 인터뷰가 실시되도록 한다.

'자료수집 및 표준화' 국면에서는 앞서의 예비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 및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다. 즉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와 더불어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먼저, 10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서 표본크기 및 표본추출 방식에 대한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11단계에서는 실제 인터뷰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개별 정보제공의무마다 수행되어야 하는 행정활동들이 식별되고, 각 비용변수들의 구체적 정보가 수집된다. 12단계에서는 11단계의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비용변수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작업은 조사대상 유형구분별로 자료요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비용산출 및 보고' 국면에서는 행정비용 산정 및 보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14단계에서는 개별 정보제공의무별로 표준화된 원가 정보에 수량 정보를 결합하여 전국적인 단계의 행정비용을 계산한다. 또한 각 규제별로 행정비용도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 15단계에서는 행정비용 도출 전 과정에 대한 소개 및 결과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후속 분석에 활용한다.



III. 결어

최근 많은 OECD국가들이 규제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상당수 유럽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행정부담 실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특정시점까지 목표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은 행정부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조정기관인 규제개선처(Better Regulation Executive)와 독립적 자문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n Commission)를 설치하는 등 조직적 인프라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도 친기업적인 환경조성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각종 규제개혁을 계획·추진중에 있다. 최근 쇠고기 파동 및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미국발 금융위기, 환율 불안정 등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신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약화·지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2008년 OECD 보고서의 내용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행정부담의 크기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규제개혁 노력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데 객관적인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실천하려는 마음자세를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로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Quantifying the magnitude of the burden problem and setting challenging targets for its reduction are widely regarded as critical steps in creating a mindset for action, as well as providing an objective means for evaluating progress.)”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행정비용을 측정함으로써 민간부문에 과다한 행정비용을 부과하는 분야의 식별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로 등록된 2개 법률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행정비용이 측정되었고, 이를 통해 표준비용모형에 대

행정부담의 크기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규제개혁 노력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 객관적인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실천하려는 마음 자세를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조세분야는 행정규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민간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국세청에서 추진중인
 표준비용모형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세법의 개·제정이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세청을 중심으로 국세와 국세행정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을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측정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과 결과들을 바탕으로 행정비용 측정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정보제공의무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들에 관련된 경우 부처간 또는 규제간 동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행정비용을 중복 계산하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조세분야는 행정규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한 민간부분의 행정비용에서 조세분야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세법의 개·제정시 민간부분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⁶⁾. 이를 위해서 타 분야에서 이미 실행 중인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KIPF**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매뉴얼』, 2008.
 김명환·최유성·강재상·유종선,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의 시사점과 향후과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7.
 이종환·최종일·조주현, 『행정부담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6.

Better Regulation Executive,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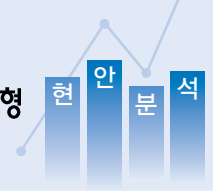
Evans, C and Walpole, M, *Compliance cost control: a review of tax impact statements in the OECD*, Sydney: Australian Tax Research Foundation, 1999.

KPMG, *Administrative Burdens-HMRC Measurement Project*, 2006.

OECD, "Information Note: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2008.

SCM Network,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 2005

6) Evans and Walpole(1999)이 시행한 OECD 국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1개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동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고, 9개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표〉 주요국의 행정부담 측정액 및 감축목표

국가	행정부담 추정결과		감축목표
	정부전체 행정부담	조세법과 세무행정 관련 행정부담	
오스트리아	43억유로(2007)	10.8억유로(소득세 6억, 부가가치세 2.9억유로)	2010년까지 25% (EU규제: 2012년 기한)
캐나다	329억 CAD (219억유로, 2005)		2008년 11월까지 중소기업자 부담 20% ('07년 기준)
덴마크	44억유로(2001) 43억유로(2004) 41.7억유로(2005)	12억유로(2001) 11억유로(2004): 소득세 5.9억, 부가가치세 1.33억유로	2010년까지 25% ('02년 기준)
독일	270억유로(2007)	부가가치세 111억유로 법인세 35억유로	2011년까지 25%
네덜란드	163억유로(2002년 GDP 3.6%)	44.3억유로: 부가가치세 14억, 임금관련 7억, 소득세법 6억유로	2007년까지 2002년 기준 부담의 25%, 2011년까지 25% 감축 신설
노르웨이	2007년 11월 안료	부가가치세 1.2억유로 (2004) 소비세 9백만 유로 (2005)	2007년 감축목표 설정, 2009년 평가
스웨덴	-	부가가치세 6.3억 SEK(2005), CIT 20억 SEK(2004), 주세 등 4가지 물품세 0.3억 SEK (2004)	2010년까지 전 부처 차원의 기업부담 25% 감축 (기존의 2010년까지 조세 관련 부담 20% 감축 대체)
영국	200억유로(2007)	51억파운드(76억유로, 2005/6): 부가가치세 10.2억, 기업소득세 8.57억, 고용주세 7.59억, 법인세 6.08억, CIS 3.21억 파운드	- 2010년까지 25%('06 기준) - 조세관련: 2011년까지 • 신고서/양식: 최소 10% • 세무조사: 최소 15%

주: 1) 2004년 추정금액은 덴마크 7.52억, 네덜란드 18.6억, 영국 31.4억유로

2)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Forum on Tax Administration: Tax Payer Service Subgroup, CITA/CFA(2007)68/REV1, OECD(2008)

특 집



2009년 예산안

-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조규홍 /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 2009년 예산안 평가(I)
박정수 / 이화여대 교수
- 2009년 예산안 평가(II)
송호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2009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편집자 주)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



조규홍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이명박 정부가 첫 번째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부진 등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6. 8)' '세계개편(9. 1)', '1~2차 기업환경개선대책(6. 11, 9. 18)'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2009년 예산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달성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철학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1. 2009년 성장 전망 및 재정 규모

우리 경제는 그동안 고유가,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도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경제도 감세·규제완화 등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로 예상되나, 최근 미국의 금융불안이 새로운 불확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전망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경제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2008년 대비 7.2% 증가한 209.2조원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총수입은 세계개편에 따른 2009년 누적 감세규모 13.0조원 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동안 과표양성화 등 항구적인 세입여력 증대분에 해당되어, 기금수입을 포함하여 금년에 비해 7.6% 증가한 295.0조원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73.8조원 수준으로 금년보다 6.5%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내년도 재정규모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 수준이다. IMF에서 재정기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FI(Fiscal Impulse)로 본다면,

2009년 FT는 $\Delta 0.05\%$ ¹⁾로서 거의 '0'에 가까워 2008년 예산대비 중립 수준이며 예산증가율(7.2%)도 경상성장률 전망(7.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단위: 조원)

	'08	'09안	증감률(%)
○ 예산	195.1 (199.7)	209.2	7.2 (4.8)
○ 기금	74.5 (74.8)	78.8	5.8 (5.3)
○ 총지출	257.2 (262.1)	273.8	6.5 (4.5)
○ 예산	195.1	209.2	7.2
• 국세	165.6	179.6	8.4
• 세외수입	21.3	21.5	0.6
• 보전수입(국채 등)	8.2	8.1	$\Delta 1.2$
○ 기금	87.3	94.0	7.7
○ 총수입	274.2	295.0	7.6

주: () 안은 추경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포함한 규모 및 증가율임

II.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내년도 재정수지는 금년 GDP 대비 $\Delta 1.1\%$ 보다 다소 개선된 $\Delta 1.0\%$ 수준 적자가 예상된다.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금년보다 다소 낮은 32.3%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에는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적자성 채무는 더욱 철저히 규모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국채는 금년보다 1천억원 줄어든 7.3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단위: 조원)

	'08	'09안	증 감
○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11.0$ ($\Delta 1.1$)	$\Delta 10.4$ ($\Delta 1.0$)	0.6 (0.1)
○ 국가채무 (GDP 대비, %)	317.1 (32.7)	333.8 (32.3)	16.7 ($\Delta 0.4$)
■ 적자성 채무 (GDP 대비, %)	134.8 (14.3)	138.2 (13.4)	3.4 ($\Delta 0.9$)
* 일반회계 국채	7.4	7.3	$\Delta 0.1$
* 외평채	10.0	15.0	5.0

III. 내년 자원배분의 중점

내년 예산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최근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중점을 두었다.

1.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첫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는 금년 들어 지속되는 고용부진과 경기 둔화를 해소하고, 성장과 고용간 선순환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원 강화로 향후 5년간 5만개 신기술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위한 Job-Training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1)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적 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GDP 대비 0.05% 개선(긴축)되었다는 의미임.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고용서비스 확대 등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도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며, 정부 재정투자도 금년 11.1조원에서 2009년 12.3조원으로 10.8% 증가시키고, 2012년 16.6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및 연구비 관리제도 효율화 등 R&D 투자 효율성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는 재원 다원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해 국민편익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다. 내년 SOC 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 2.5%보다 확대된 7.9% 수준이 되며, 민간 先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 제도개선을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난 9월 초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재원 등을 통해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둘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저소득층·서민의 자활·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통합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대

폭 확대하는 등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의 절반에 대해 무상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신설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을 확충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동시에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하여, 복지지원에 있어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시키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해 나가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이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지원 방식을 개별 사업단 위주의 지원에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총액배분(Formula Funding)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농어업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돈 버는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였다. 농어업을 식품산업 등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시군 유통회사 설립·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것이다.

3.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

셋째,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린에너지 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풍력·수소 연료전지·그린카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확대, 에너지절약시설·반도체 조명기기(LED) 등 에너지 고효율 보급기기 확산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안심사회를 위하여 사전 예방적 방재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재해관련 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완공을 추진함으로써,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에도 중점을 두었다. 범정부 차원의 합리적 법·제도 개선, 준법 시위문화 정착 등 법질서 확립 활동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 교통 분야의 예방·단속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국방분야는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및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기술 중심의 최첨단 전력 증강 지원 및 R&D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군주거시설 조기개선 추진(2013→2012년) 및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귀한 국군포로, 전사자 등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 및 글로벌 코리아 구현에도 역점을 두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 따라 대북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경험은 '대북경협 4대 원칙'²⁾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대외원조(ODA)도 우리 경제발전에 따라 확대하고, 재외 과학자, 교수, 문화·관광인 등 한인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에너지·자원 부국들과의 에너지 협력 외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넷째,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절약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63만명)으로 유지하고, 불가피한 증원 소요는 해당 부처내 인력재배치 또는 타부처 정원을 감축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직사회부터 경제 살리기 솔선수범하고 고통분담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였다. 보수 동결로 절감되는 약 5,800억원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소요를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2) 대북경협 4대 원칙 : 비핵화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국민적 합의.

따라서 정부예산의 10% 수준인 총 20조원(2008년 2.5조원, 2009년 17.5조원)을 절감하여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등에 활용하였다.

4대 기본방향과 12대 중점과제

1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③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
2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④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⑤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 ⑥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3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⑦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⑧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⑨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 ⑩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⑪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및 글로벌코리아 추진
4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⑫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

이러한 자원배분 중점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08*	'09안	증가율
1. R&D	11.1	12.3	10.8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13.2	5.0
3. SOC	19.6	21.1	7.9
4. 농림수산식품	16.0	16.6	4.1
5. 보건·복지	67.7	73.7	9.0
6. 교육	35.6	38.7	8.8
7. 문화·체육·관광	3.3	3.4	3.4
8. 환경	4.5	4.7	5.6
9. 국방(일반회계)	26.6	28.6	7.5
10. 통일·외교	2.8	2.9	2.2
11. 공공질서·안전	11.7	12.2	4.4
12. 일반공공행정	45.9	47.5	3.5
◇ 예산(순계)	195.1	209.2	7.2
◇ 총지출	257.2	273.8	6.5

주 당초 예산

IV. 맺음말

재정은 국가 전체에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재정은 정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국가경영의 핵심수단이자,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내년 예산은 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가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으로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혹시나 예산안 편성 직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정부 재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

2009년 예산안 평가(I)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I. 서론

2009년도 나라살림의 부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정해졌다. 올해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기에 새 정부의 색깔이 여실히 드러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집권한 새 정부로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747전략(7% 경제성장률, 4만달러 1인당 국민소득, 세계 7대 대국)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녹여내는가 하는 어려운 과제로 참으로 힘든 씨름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 10월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은 매우 비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정책으로 어떻게 해보기 어려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과 신뢰 부족 등으로 환율, 물가와 주가 등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장 내년 경제의 거시적인 파라메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발 금융불안이 우리나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의 펀더멘탈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과정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중시되면서도 자원배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권력투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과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다고 해서, 전달체계가 무균상태여서 그대로 현실로 실현되리라 믿는 것도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나라 행정 현실을 제약조건으로 감안한 계획이라야 실행이 가능해진다. 시차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에 따라서는 오늘의 투입이 바로 내일의 결과 내지는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초를 개략

적으로 살펴본 뒤에,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반적인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부문별 문제점과 그 중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SOC투자과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논의해본다.

II. 국가재정운용기조

1. 대내외 환경

정부는 이제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4.7%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4%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간연구소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상반기 5.3%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성장세 둔화로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에 우리 경제가 4.8~5.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민간경제연구소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낮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성장률도 3.0%로 수정했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1930년대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올해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내년 하반기에야 완만한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미국은 내년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EU·0.6%)과 일본(0.5%)의 성장률도 1%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장률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이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3%대 중반

으로 떨어지면 세수가 많이 줄어 큰 폭의 적자가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재정운용기조

정부는 재정운용방향을 시장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면서 재정지출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정했다. 지난 정부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시장 중심의 경제구조를 시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지향해 2012년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는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지출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2012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며 국가채무비율도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정부는 2004년 19.5%였던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2007년에는 22.7% 수준에 이르렀고, 재정지출도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국가채무비율이 2001년 19.6%에서 2007년 33.2%로 가파르게 높아져 온 것과는 확실히 차별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당장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의 변화를 크게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나마도 최근 외부 환경의 여건악화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계획으로 보여진다. 재정건전성과 경기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당국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지만 당장의 환경변화에 미봉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저선(base line)을 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경기대응성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은 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모두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책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건이 된다. 특히 재정의 조기 집행과 구조화한 추경편성 등의 재정지출확대정책이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둘러싸고 내수부진 등 현재의 경기상황에 비추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와 동시에 예산배분이 너무 성장에 중점을 둔 나머지 복지 투자 등을 줄임으로써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09년도 나라살림의 규모가 273.8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6.5%의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4조 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다.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적절하나 국내총생산의 1.0%에 이르는 적자규모와 333.8조원대나 되는 국가채무 및 그 증가추세는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09년 국가채무잔액 전망이 처음 나타난 2005년과 지금의 국가채무잔액 전망의 차이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2005년 당시 2009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는 GDP 대비 30.0%였으나 지금은 32.3%에 달한다.

국가채무관리

(단위: 조원)

	2001	2002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잔액	122.1	133.6	165.7	203.1	248.0	282.8	298.9	317.1	333.8
(대GDP 비중)	(19.6)	(19.5)	(22.9)	(26.1)	(30.6)	(33.4)	(33.2)	(32.7)	(32.3)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GDP 대비 통합재정 및 국민부담의 비율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2006년 결산기준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의 비율은 30.1%로 OECD 회원국 평균 40.4%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가 아직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향후 노령연금급여가 본격화되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부담률은 2007년 22.7%로 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나 향후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산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규모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운영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997년 60.3조원에서 2008년에 317.1조원으로 5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성장동력 확충, 고령화 및 저출산 그리고 불합리한 수급구조에 따른 건강보험과 4대 공적연금의 재정부실요인 현재화, 노동투입 증가세 둔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남북협력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향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본

적인 처방은 재정지출 증가와 같은 경기부양정책보다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특히 공급능력을 증가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수단의 동원에서 찾아야 한다.

Ⅲ.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1.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2009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자원배분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 및 균형배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R&D, 교육, 보건·복지 및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물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지원 등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율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8년과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SOC 건설의 약진으로, 성장동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경제사업, 교육 및 국방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균형잡힌 배분상태로 수렴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중소기업, 농업 구조개선 등에 대한 투자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결과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부문별 자원배분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미래선도·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지원,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지원, 기초·원천투자 확대,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활용 등을 위한 R&D분야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10.8%)하였고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비도 7.5% 증가하였다.

사회복지분야는 연금제도의 성숙, 경기부진 등에 따라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의 내실화,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의 본격 추진,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그리고 보건의료 예방투자 및 저소득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인프라와 서비스전달체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한 개혁과제이기는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제도 개혁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교육부문 증가율(8.8%)도 정부예산평균(6.5%)을 상회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08~'12)의 교육분야 연평균증가율도 7.6%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대학 입학자원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대학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맞춤형 장학제도의 확충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자금 이차보전의 지속적인 확충에 중점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자칫 기관별 지원 방식의 확대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교육부문의 예산증가율이 고등교육부문의 경우는 5.6%인 데 비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경우 7.9%로 교육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체 교육재정투자의 87.6%를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사교육비 흡수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 및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극복해야 한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재정투자도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부문간, 부문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 견인,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에 중복과 낭비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중소기업지원의 체계 정비 등 관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과 2·3차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지원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소비자 유통조직과의 교섭력 및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자금지원의 확대 및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축 지원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효과성으로 지속적인 사업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실제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도모하는 성과관리라고 하겠다.

2. SOC와 복지재정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녹색성장, 안심사회, 소프트혁명, 교량국가의 5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비전을 위해 큰 시장 작은 정부를 구축,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트렌드를 감안해 성장잠재력이 큰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자원·에너지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와 같은 비전과 전략에 의거 2009년 SOC투자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21.1조원이 투자되고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7.3%를 유지할 계획이다.

계속비 규모를 2008년 7.7조원에서 '09년 21.1조원으로 크게 확대해 적기 준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그간 SOC투자의 정체로 SOC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어왔던바, 물류비용의 증가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 2009년부터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간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로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7대 광역권의 30대 국책사업이, 기획하는 파급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선정하기보다는 면밀한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과 조화 및 활용가치(value for money)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 공기기업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활용,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나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지방공항 14곳 중 10곳이 이미 적자상태이며 이 중 3개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발표해 놓고 영남신공항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인재육성의 일

환으로 지역별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지정해 500억여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단위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투자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효율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SOC 저량의 축적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연계체제 구축 및 광역사업, 기추진사업의 완공 위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SOC의 저량이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투자기회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총사업비관리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과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투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며 복지전달 체계 선진화 및 효율화 그리고 바우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타당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복지재정은 2009년 73.7조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해 10.8% 증가한 R&D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체감하는 이유는 이 중 32%는 공적연금 그리고 21%는 주택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건설, 서민주택안정지원과 같은 부문을 복지재정으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적 지출 소요가 대폭 늘고 있어 복지분야 재량적 지출의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 의무적 지출부문의 기준선(base-line) 추계를 면밀하게 하고

이에 기준한 연금개혁방안이 전향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열악한 취약계층 복지부문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KIP**

2009년 예산안 평가(Ⅱ)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hsong@kipf.re.kr)

I. 서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 호의적이지 않은 대외여건으로 경기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가운데 소비자물가 오름세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 등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금융 및 외환시장에도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커다란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및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기치를 내건 2009년 예산안 및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해서인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이 예산편성의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강조했던 참여정부와는 다소 차별화된 모습으로 새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발표한 예

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재정 총량 및 재원배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재정 총량

가. 총수입, 총지출 및 재정정책 기초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7.2% 늘어난 209.2조원이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기금을 포함한 개념인 총수입 및 총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입은 295.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7.6% 늘어난 데 비하여 총지출은 273.8조원으로 6.5% 늘어나 내년도 총수입이 총지출을 약 20여 조원 상회한다.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렇게 총수입이 총지출을 상회하는 것은 공기업 민영화 수입 및 사회보장기금 흑자 추세 등을 중심으로 각각 세외수입 및 기금의 순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같

은 기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상회한다. 설령 사회보장기금의 흑자와 같은 요인이 재정당국의 정책적 노력과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총수입의 상대적인 높은 증가는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재정기조를 판단하는 지표인 재정충격지수는 영(0)에 가까운 음수로 내년도 재정기조는 사실상 중립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여파 등을 감안할 경우 확장적인 재정으로의 정책기조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재정기조를 판단하기 위한 재정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수지(단위: 조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2.5	9.0	8.0	6.7	7.4	7.3	7.1	7.0	7.0
통합재정수지	5.2	3.5	3.6	33.8	17.1	21.2	23.8	30.5	40.2
사회보장기금 수지	21.2	23.6	26.0	30.2	28.1	31.6	33.5	43.7	40.2
공적자금 원금 상환	12.0	12.0	12.0	-	-	-	-	-	-
관리대상 재정수지	-4.0	-8.1	-10.8	3.6	-11.0	-10.4	-9.7	-6.6	0.0
(명목GDP 대비, %)	(-0.5)	(-1.0)	(-1.3)	(0.4)	(-1.1)	(-1.0)	(-0.9)	(-0.5)	(0.0)
총수입 (증가율)	213.1	222.4	235.3	250.6	274.3	295.0	314.7	339.2	367.0
	-	(4.4)	(5.8)	(6.5)	(9.5)	(7.6)	(6.7)	(7.8)	(8.2)
재정지출규모 (조원, %)									
총지출 (증가율)	196.9	209.6	224.1	238.4	257.2	273.8	290.9	308.7	326.7
	(-)	(6.4)	(6.9)	(6.4)	(7.9)	(6.5)	(6.2)	(6.1)	(5.8)
일반회계 총계 ¹⁾ (증가율)	120.1	134.4	148.9	165.5	182.8	195.0	-	-	-
	(2.5)	(11.9)	(10.8)	(11.1)	(10.4)	(6.7)			
통합재정 (증가율)	173.5	187.9	205.9	209.8	230.2	-	-	-	-
	(5.6)	(8.3)	(9.6)	(1.9)	(9.7)				
순용자제외 (증가율)	172.1	184.9	200.1	202.7	225.1	-	-	-	-
	(3.2)	(7.4)	(8.3)	(1.3)	(11.1)				
재정충격지수(FI) (명목GDP 대비, %)									
FI	0.72	0.49	0.40	-1.57	-0.42 ²⁾ 0.69 ³⁾	-0.05 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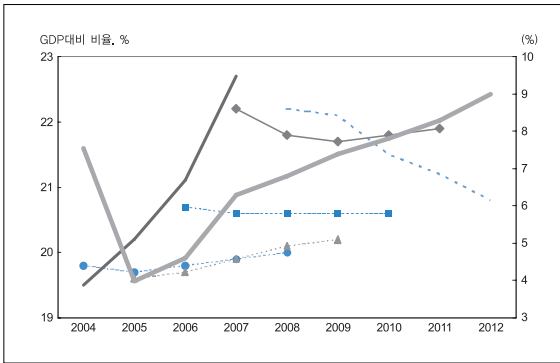
주: 1)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이전 총계
 2) '07 예산대비 '08년 예산 FI
 3) '07 예산대비 '08년 추경 및 교부금포함 FI
 4) '08 예산대비 '09년 FI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연구원 계산.

나. 조세부담률

감세정책을 주요 재정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내년도에는 22.1%가 되어 금년도(전망치)에 비해 0.1%포인트만 소폭 하락하지만 2010년부터는 비교적 뚜렷하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 21.5%, 2011년 21.2%, 2012년 20.8%).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2010년부터 눈에 띄게 하락하는 이유는 감세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201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보다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에 제시된 조세부담률의 중기목표는 전년도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치와는 다르게 향후 뚜렷한 하락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 의지 및 그에 따른 향후 높은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조세부담률 및 경상성장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2004~2008	19.8	19.7	19.8	19.9	20.0				
▲▲▲ 2005~2009		19.6	19.7	19.9	20.1	20.2			
■ ■ ■ 2006~2010			20.7	20.6	20.6	20.6	20.6	21.9	
◆◆◆ 2007~2011				22.2	21.8	22.1	21.5	21.2	20.8
○○○ 2008~2012					22.2	22.1	21.5	21.2	20.8
— 조세부담률실적치	19.5	20.2	21.1	22.7					
— 경상성장률(우)	7.6	4.0	4.6	6.3	6.8	7.4	7.8	8.3	9.0

주: 경상성장률은 2007년까지는 실적치, 2008년부터는 전망치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최근 세수 호조로 전년도에 흑자(결산기준)를 기록하였던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는 새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등으로 내년도 약 10.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 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2012년에는 균형 재정수지를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이전 중기 계획에 견주어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규모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1년 및 2012년의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의 선순환 효과 및 그에 따른 세입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

한 구체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금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절약·효율·책임'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 최저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전(前)단계에서의 예산절감을 꾀하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여 평가와 예산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그 방향에 있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그러한 정부의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전문성 확보도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지출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공적자금원금 상황이 2006년에 완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한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에도 흑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꾸준히 낮아져 2012년에는 3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과 관련된 적자성 채무는 동 기간 동안 연평균 4.2% 증가하는 반면 외환시장 안정 등과 관련된 금융성 채무는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금융성 채무가 국가채무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듯 환율 변동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외평채와 같은 금융성 채무관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표 2〉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08	'09	'00	'11	'12
통합재정수지(조원)	17.1	21.2	23.8	30.5	40.2
(대GDP 비중,%)	(1.8)	(2.1)	(2.1)	(2.5)	(3.1)
관리대상수지(조원)	△11.0	△10.4	△9.7	△6.6	0.0
(대GDP 비중,%)	(△1.1)	(△1.0)	(△0.9)	(△0.5)	(0.0)
국가채무(조원)	317.1	333.8	355.5	380.2	407.3
(대GDP 비중,%)	(32.7)	(32.3)	(31.9)	(31.5)	(30.9)
적자성 채무(조원)	134.8	138.2	143.8	151.5	159.2
(증가율)	-	(2.5)	(4.1)	(5.4)	(5.1)
금융성 채무(조원)	182.3	195.5	211.7	228.7	248.1
(증가율)	-	(7.2)	(8.3)	(8.0)	(8.5)

2. 분야별 자원 배분

2009년 예산안에서 명시한 자원배분의 중점은 크게 4가지로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두 번째는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세 번째는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네 번째로는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강조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분야별 특징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성장능력 확충: R&D 및 SOC 투자 확대

분야별 자원 배분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SOC 및 R&D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R&D 및 SOC는 2008~2012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0.7% 및 7.3%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정부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R&D 예산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R&D 투자가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R&D와 관련하여 2012년까지 연평균 12%의 높은 정부지출 증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초·환경·에너지·생명 등에 중점을 두는 정부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투자한 기초연구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초연구의 결과를 기업 및 일반 연구기관들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지출관련 R&D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사후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R&D 관련 예산낭비의 재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투자는 광역경제권의 발전과 연계하여 도로 확충 및 물류 기반 시설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SOC의 경우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이미 절대 부족 상황은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는바, 효율적인 정부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결정시 정부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 그리고 진행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녹색성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환경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녹색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

약시설 보급 확산,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에 배분된 재원은 약 3.8조원으로 전년도인 2008년도 3.1조원에 비해 약 23.7% 증액되었다. 비록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증가율은 높지만 증가금액은 0.7조원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예산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고유가를 겪으면서 우리는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므로 언젠가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경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전체 총지출 대비 비중은 4.7%로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¹⁾. 오히려 2008년도에서 2012년도로 가면서 비중은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환경 분야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녹색성장 자체가 장기적인 꾸준한 투자를 요구하는 이슈인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 선진국들을 앞서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게 정부 투자 확대를 계획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삶의 질 선진화 및 안심사회: 복지

보건복지 분야는 총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율도 꾸준히 높는데 이는 복지관련 지출이 대부분 법정지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건복지 지출의 규모 및 증가 추이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는 복지지출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 내실 있는 복지 전달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바우처 방식의 확대 적용,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선진화 등은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는 보다 적절하고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가 별도의 독립적인 분야별 자원계획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나와 있는 일부 자료를 보면 2009년에는 '광역경제권 선도 육성산업'을 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10년부터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국민적인 관심사항인 만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과거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재정운용계획의 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 측면에서 아쉬운

1)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증가율은 각각 '04~'08년 2.7%, '05~'09년 3.0%, '06~'10년 0.8%, '07~'11년 1.0%이며 총지출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비중은 각각 '04~'08년 5.3%, '05~'09년 5.4%, '06~'10년 5.0%, '07~'11년 4.7%이다.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표 3〉 2008~2012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분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연평균 비중
1. R&D	11.1	12.3	13.5	14.9	16.6	[10.7]
(총지출 대비 비중, %)	(4.3)	(4.5)	(4.6)	(4.8)	(5.1)	(4.7)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13.2	13.7	14.3	15.0	[4.4]
(총지출 대비 비중, %)	(4.9)	(4.8)	(4.7)	(4.6)	(4.6)	(4.7)
3. SOC	19.6	21.1	22.7	24.3	26.0	[7.3]
(총지출 대비 비중, %)	(7.6)	(7.7)	(7.8)	(7.9)	(8.0)	(7.8)
4. 농림수산식품	16.0	16.6	17.0	17.4	18.0	[3.0]
(총지출 대비 비중, %)	(6.2)	(6.1)	(5.8)	(5.6)	(5.5)	(5.9)
5. 보건·복지	67.7	73.7	80.3	87.2	94.4	[8.7]
(총지출 대비 비중, %)	(26.3)	(26.9)	(27.6)	(28.2)	(28.9)	(27.6)
6. 교육	35.6	38.7	41.4	44.4	47.6	[7.6]
(총지출 대비 비중, %)	(13.8)	(14.1)	(14.2)	(14.4)	(14.6)	(14.2)
7. 문화·체육·관광	3.3	3.4	3.5	3.6	3.7	[3.1]
(총지출 대비 비중, %)	(1.3)	(1.2)	(1.2)	(1.2)	(1.1)	(1.2)
8. 환경	4.5	4.7	4.9	5.0	5.2	[3.7]
(총지출 대비 비중, %)	(1.7)	(1.7)	(1.7)	(1.6)	(1.6)	(1.7)
9. 국방(일반회계)	26.6	28.6	30.6	32.7	34.8	[6.9]
(총지출 대비 비중, %)	(10.3)	(10.4)	(10.5)	(10.6)	(10.7)	(10.5)
10. 통일·외교	2.8	2.9	3.0	3.1	3.2	[3.6]
(총지출 대비 비중, %)	(1.1)	(1.1)	(1.0)	(1.0)	(1.0)	(1.0)
11. 공공질서·안전	11.7	12.2	12.8	13.4	14.0	[4.7]
(총지출 대비 비중, %)	(4.5)	(4.5)	(4.4)	(4.3)	(4.3)	(4.4)
12. 일반공공행정	45.9	47.5	48.3	49.9	51.5	[2.9]
(총지출 대비 비중, %)	(17.8)	(17.3)	(16.6)	(16.2)	(15.8)	(16.7)
총 지 출	257.2	273.8	290.9	308.7	326.7	[6.2]

주: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예산을 집계

III. 결론

지금까지 2009년 예산안 및 2008~2012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만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 발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실물경기의 둔화 등 예측이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토론투리포트

■ 2008년 세계개편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세계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본 원고는 2008년 10월 2일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08년 세계개편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2008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일 시 2008년 10월 2일(목) 14:00~16:3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00~14:20 개회사 및 인사말

- ▶ 개 회 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 ▶ 인 사 말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20~15:20 주제발표

- ▶ 제1주제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이 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 제2주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우석진 명지대 교수

15:20~16:20 종합토론

- ▶ 사 회 자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토 론 자 나성린 국회의원(한나라당)
박노승 경향신문 논설위원
오제세 국회의원(민주당)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아주대 교수)
홍중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 교수)
- (가나다 순)

16:20~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30 폐회

제1주제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이 영 / 한양대 교수

I.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올해 세제개편안의 전체 제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이다. 국정철학으로 통합형 자유주의를 그리고 실행원칙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는 조세정책의 기초를 ‘경제재도약 세제’로 설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거의 모든 세목의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에 앞서 세제개편안의 기본적인 내용과 특징은 아래의 일곱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소득세율을 각각 2%p씩 인하하여 6~33%로 인하할 예정이다. 소득세 인적공제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렸다.

둘째로, 투자와 성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이다. 법인세율의 과표구간을 이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현재의 13, 25%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2009년(2008년 귀속) 11, 25%로, 2010년 11, 22%, 2011년 10, 20%로 5%p 인하할 예정이다.

셋째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이 확대된다.

넷째로, 양도소득세 완화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율도 인하하여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켰으며,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인상하였다.

다섯째로, 상속·증여세를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여섯째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주택분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였다.

일곱째로,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개별소비세 등 본세로 통합하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카지노사업자(순매출액의 10%)를 추가하였다. 점담 양도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서화와 골동품)에 한정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될 계획이다.

II. 전문가 설문에서 나타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조세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국재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세제개편 각 내용에 대해서 (1) ‘적극 찬성’; (2) ‘찬성’; (3) ‘중립적’; (4) ‘반대’; (5) ‘적극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설문이 이루어졌다. 원점수 1~5를 100~20으로 전환한 값들로 보고하였는데, 변환 점수가 80점이면 찬성, 60점이면 중립적, 40점이면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감세 규모 적정성과 2012년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개편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질문도 덧붙여졌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조세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 기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술형 답변 형식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의 4가지 사항으로 정리되었다.

(1) 조세개편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

개별 세제개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의 전체 평균값은 80점(원점수 ‘2’)으로 나타나, 이번 조세개편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새로운 정부가 지난 정부와 차

별성을 가지고 발표한 세계개편안으로 '작은 정부 지향'을 기저에 담고 있다. 감세를 목표로 하여 거의 모든 세목을 조정하였으며, 목적세 정비, 카지노 사업 과세 등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였으나 그간 실행하지 못하였던 개혁들도 담고 있다. 이러한 작은 정부 지향과 조세체계 합리화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감세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

내년의 감세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응답자의 40% 가량이 적절한 것으로 30% 가량이 각각 과소 또는 과다를 선택하였다. 2012년의 적절한 조세 부담률에 대해서 18~30% 사이의 수치가 제시되었으며, 응답자의 1/4 정도가 각각 20%와 22%를 선택하였으며, 제시된 적정 조세부담률의 평균값과 중앙값은 22%였다. 정부가 제시한 20%라는 목표치보다는 큰 수치를 제시한 응답자가 상당수 존재하여 전문가들은 작은 정부 지향에 찬성하나 조세부담률 수준은 중기적으로 21~22%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개별 세계개편 내용별로 상이한 평가

목적세 정비, 법인세 세율 인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유가환급금, 중소기업지원 확대, 소득세 세율 인하, R&D 준비금 확대, 소득세 인적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소득세율 부담 감소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는 소득세의 실질적 누진도 제고를 통한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세계개편안 세부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세계개편 내용
적극 찬성 90점 이상 (원점수 1.5 이하)	목적세 정비 법인세 세율 인하
찬성 80점 이상, 90점 미만 (원점수 1.5, 2 사이)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확대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중부세 세율 인하 중부세 인상범위 제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약간 찬성 70점 이상, 80점 미만 (원점수 2, 2.5 사이)	중부세 과세범위 6억원→9억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소득세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6억원→9억원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 R&D 준비금제도 재도입 소득세 세율 인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립적 60점 이상, 70점 미만 (원점수 2.5, 3 사이)	유가환급금 지급

주: 각 범위 내에서도 평균 점수 순서에 따라 목록이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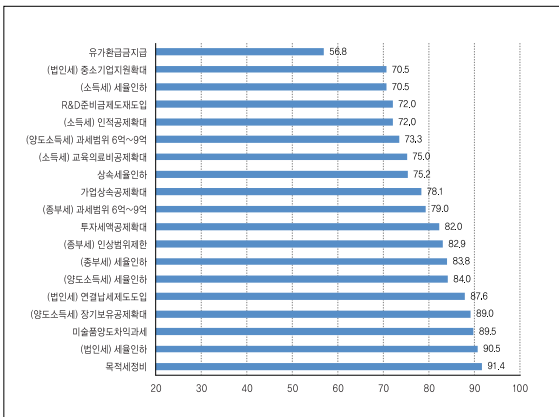
(4)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답변들(전문가들의 개별 의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서술형 답변 질문에 대해 세원 양성화, 지출 조정, 부동산 세제 관련 지적, 소득세 인하 속도 조절, 감세 자체에 대한 반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과표양성화 지속적 추진을 통한 항구적인 세수 확보 노력
- 감세안은 법인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세율 인하와 함께 비교세 및 감면 조항이 대폭 정비되어야 함.
- 공무원연금에 대한 추가적 개선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지출의 합리적 조정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중부세 감면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현 시점

- 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성이 떨어짐.
-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인하도 필요.
 - 감세를 반대하는 입장임. 현재 국가 채무가 약 280조원 규모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지 않음.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은 당장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유리한 금번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한 정책으로 판단함.
 - 소득세율 인하는 약간 과도한 것으로 1%p 정도가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세율 인하보다는 과표구간 조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은 충실히 제시되지 못함.
 - 향후 조세부담률 및 정부규모의 장기적 수준에 수렴할 수준의 감세안 마련이 필요

〈그림〉 감세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제2주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석진 / 명지대 교수

I.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

- 기존 보유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 도입·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납세자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는 개편을 단행
 - 2004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가격상승이 타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
 - 특히 일부 고가의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급속히 상승시키는 등 기대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추진

구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개요			
	2005년	2006년 이후		
과세방법	인별 전국합산	개인만 세대별 전국합산		
과세기준액	공시가격 합 9억원	공시가격 합 6억원		
과세표준	(Σ 주택공시가격-9억원) × 50%	(Σ 주택공시가격)-6억원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5.5억원 이하	1%	5.5억원 이하	1%
	45.5억원 이하	2%	45.5억원 이하	1.5%
	45.5억원 이하	3%	45.5억원 이하	2%
			45.5억원 이하	3%
세부담 상한액	전년 대비 총세액의 150%	전년 대비 총세액의 300%		
과표적용률	50%(재산세 준용)	'06년 70%, '09년까지 연 10%씩 ↑		

II.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단기간에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야기

- 특정 지역의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부세를 강화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의 과도한 상승 및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
 - '07년 전체 종부세 신고세액은 '05년 대비 4.5배 증가
 - 특히 주택분 종부세 개인의 신고세액은 '05~'07년간 42.8배 증가
 - * 최근 개인소득세 징수액과 법인세 징수액이 각각 4.5배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각기 13년 및 11년 정도 소요
 - '07년 전체 종부세 신고인원은 '05년 대비 7.2배 증가
 - 주택분 종부세 개인 신고인원 '05~'07년간 10.9배 증가
 - 주택분 종부세 개인 납세자의 1인당 신고세액은 '05~'07년간 약 3.9배 증가
 - 특정 지역의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는 '06년~'07년 한 해 동안 종부세 부담액이 500% 이상 급등한 경우 존재
- 종부세 강화를 통한 보유세의 급격한 상승은 유효세율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의 '05년 유효세율 0.30%에서 '06년 0.48%로 약 61% 상승한 후 '07년 0.52% '08년 현재 0.59%로 최근 4년간 약 2배 상승
- 종부세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는 다음의 7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① 기준금액 인하 : '05년 9억원 → '06년 이후 6억원
 - ② 세율체계 변화 : 최저 세율구간 추가 및 기존의

최저 세율구간 세율 인상

- ③ 세부담 증가율 한도 4배 증가: '05년 50% → '06년 이후 200%
- ④ 과표적용률 인상: '05년 50% → '06년 70%(이후 '09년까지 매년 10%씩 상승)
- ⑤ 과세방식 변경: '05년 인별합산 → '06년 이후 세대별 합산(법인, 별도합산토지 제외)
- ⑥ 매년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 ⑦ 세액산출 방식의 변경: '05년은 과세표준 산출시 과표적용률 적용 → '06년 이후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과표적용률 적용

- 최근 우리나라보다 높은 부동산가격 증가율을 경험한 미국 및 영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단기적인 부동산가격 변동에 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미국: 연간 2~5%) 및 과도기적 세부담 조정제(영국)를 운영
-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 도입 이전인 2004년 GDP 대비 2.3%로 전체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
 - 종부세 도입 이후 2007년에는 자본이득세 중 부동산 관련부분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3.7%로 미국,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급증

2. 재산과세로서의 한계 증폭

- 일반적으로 저량(stock)의 성격을 지닌 재산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담세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여 과세기준으로 삼는 경우 납세자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반영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과도하게 세부담을 상승시키고 있는 현행 중부세제는 납세자의 현금흐름 측면에서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 소득 규모, 주택소유 및 주택가격 실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수준('06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치(PIR)가 평균적으로 약 6.8로 주요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치 비율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전체 유주택자 가구보다 가구주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이 약 57%나 높아 고령자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존재
- 특히 세부담의 전가가 불가능한 자가거주 1주택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이 U자 형태를 지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저위 소득구간에서 역진적임을 시사
-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소득으로 평가한다면 현재의 보유세 부담 실태는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을 위배하기 때문에 저분위의 세부담 경감 필요

III. '08년 중부세 개정안의 효과분석

1.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예측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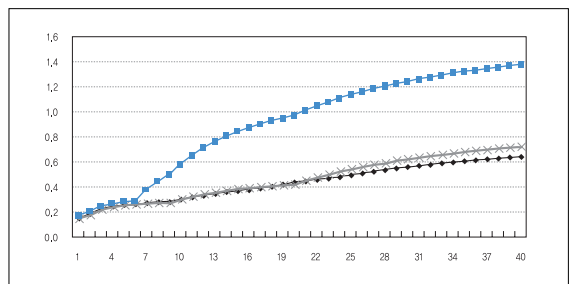
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정부가 이미 발표한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그 결과 민간의 주택 공급도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유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2. 세부담 및 유효세율의 인하 효과

- 주택분 중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총보유세의 유효세율 인하 크기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0.03%p 미만인 반면 6억원 이상에서는 최소 0.1%p여서 기존 중부세 대상 주택의 총보유세 유효세율이 2005년 수준으로 감소

〈그림〉 중부세 개정안에 따른 총보유세 유효세율 변화



3. 소득재분배 효과

- 누진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갖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통계청의 '06년 가계자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
- 세전 총소득의 지니계수 약 0.3522에 비해 '08년 보유세제에 의한 총보유세액 차감후 지니계

1) 김경환(2007, 도시경제: 주택가격과 주택정책)에서는 주요국의 연소득대비 주택가치 비율이 미국 3.7('03년 기준), 일본 4.9('03년 기준), 영국 3.8('02년 기준), 독일 6.0('02년 기준)이라고 제시

수는 약 0.3499로 약 0.0023 감소하여 소득불평등 개선도는 미약

- 개정안에 따른 세후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09로 '08년 지니계수보다 약 0.001 높아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 없음

4. 세제 정상화 및 단순화 효과

- 금년도 개편안은 그동안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지속되어온 중부세 체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산과세 정상화로의 물꼬를 텃다는 데 의의를 찾는 것이 가능
 -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 및 가치평가 시점과 과세시점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현 시세에 비해 세 부담이 무거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표 적용률을 동결한 것은 합리적인 세 부담 조정이 라고 판단
 - 기존 중부세 대상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이 양도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의 정의를 원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동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세 부담의 합리적인 조정 결과라고 판단 가능
 - 고가주택을 '05년 중부세 도입 당시와 같이 상위 1% 정도로 생각할 경우, '07년 주택공시가격 분포에 의거 기준금액을 8억~9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존재

5. 세수효과

- 개편안에서는 중부세 기준금액 조정과 동시에 세율을 실질적으로 1/3 정도 인하하였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예를 들면 전체 세수가 1조 2천억원 정도인 주택분 중부세의 경우 최고구간의 한계세율이

1/3씩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수가 최대 9천 4백억원(77%) 감소, 반면 한계세율이 1/2씩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8천5백억원(70%)이 감소 예상

IV. 향후 과제

- 과표적용률이 연도별로 상승하게 되어 있고 과표 적용률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
 - 이러한 문제를 본 개편안에서는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탄력적(± 20%p)으로 운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나,
 - 동 방식은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분에 80%의 과표적용률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정하던 '05년의 방식에 과표적용률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가격변동에 정책당국이 좀 더 신속하고 탄력적(± 20%p)으로 대응할 수단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
 -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단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필요
- 향후 보유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더 넓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
 - 현행 재산세도 세율과 과표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음을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재정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연계하여 보유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존재
 - 또한 재산세를 현행과 같이 누진세 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외국과 같이 단일세율 (flat tax rate)로 전환할 것인지,

- 누진세 체계를 유지한다면, 현행 주택분 재산세 처럼 물건별 과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별 혹은 세대별 과세를 할 것인지,
 - 주택분 종부세는 당연히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재산세와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과 같이 국세로 놓아 둘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
- 개정안과 같이 종부세수가 2.2조원 정도 감소할 경우 시·군·구에 배분할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므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곳에 대한 정책적 대안 필요
- 지방교부세를 조정을 통한 보충 방식, 균특회계를 통한 보충방식, 기존 종부세 납부자에 대한 재산세 조정을 통한 보충방식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

토론 요약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전오 / 성균관대 법대 교수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나 정권을 선택하는 때에 정책결정을 위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기본 이념이나 정책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위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보보다는 시장’, 그리고 정부 안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세계개편 방안은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납득할 만한 개편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감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전에 비해 개편의 폭이 크긴 하나, 여전히 중장기적 플랜이 부족하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세계개편이라는 느낌이다. 최소한 이번 정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세제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감세라는 방향이 맞긴 하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개혁, 지출통제 등과 같은 지출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 제시가 부족하다. 세금은 줄이면서 쓰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셋째,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감세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워내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학자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감세의 혜택이 부자 또는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포퓰리즘적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세금을 적게 낸 사람보

다 많이 낸 사람에게 감세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물의 본질상 당연하고 부득이한 것이며,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논리상 문제점 있어

다음으로 종부세에 대한 의견을 말하자면,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더러 논리상 무리가 있는 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부세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종부세가 효율적이며 꼭 필요한 수단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종부세법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조세부담 측면에서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달성이 가능한지 회의적이고, 소득세가 아닌 보유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세이론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과거 수 십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나중에 억제되어 왔던 가격이 갑자기 뛰어들러 서민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재산세를 국세화하여 지방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National Non-domestic Rates; NNDR)의 사례를 들어 국세로 유지하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으나, NNDR은 종부세와 그 내용이 많이 다르고, 보유세를 국유화하는 방식은 지자체의 독립성 보장 또는 지방분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종부세가 헌법적인 측면에 부합하는가에 대

한 문제이다. 법논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대별 합산문제, 과잉금지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년도에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것이 소득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과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혼인생활과 가족제도의 보장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제도 보장일 뿐만 아니라 헌법원리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의 전 영역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소득세제에서만 지켜져야 하고, 보유세제에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편법에 의한 보유세 회피는 부동산실명법, 상증세법 규정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증여세를 내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행위까지 보유세 단계에서 부인하는 모순을 낳는다.

또한 종부세의 정책 목적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종부세를 채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자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현행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 장기보유자, 무소득자, 정년퇴직자, 채무부담자(예컨대,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보유자)에게까지 무차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세 부담 폭등으로 인해 다른 소득에서 가져와서 내야 하는 세금이란 점에서 이는 원본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원본이란 것은 부동산 가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의 취득 경위, 취득 목적, 보유현황, 보유기간, 소유자의 현재 자산상태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외 없이 고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넘는 과잉조치라고 해석될 수 있다.

종부세는 조세이론과 법리상 무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에서 만들어진 세제이고,

그 실효성 또는 법논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세제이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최소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실현이익에 과세 후 양도세 납부시 공제

이창희/서울대 법대 교수

일단 종부세가 좋은 세금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현재 종부세는 급격한 세율로 인한 세부담 증가 문제, 과도한 세부담 문제, 현금흐름의 유동성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외에 보유하는 재산 역시 담세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00억원이고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담세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부세 과세논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소득과세 보완이라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귀속임대료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재산과세는 이와 같은 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과세에 대한 논리를 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찾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산 그 자체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이다. 소득과세를 넘는 부분은 재산 그 자체에 대한 과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과세대상 자산을 부동산에 국한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채권 관련 문제가 있는데, 재산을 담세력으로 삼는 과세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차입금을 과세대상 자산에서 차감하여 총자산이 아닌 순자산에 대해 과세해야 할 것이다. 즉, 재산과세를 재

산 그 자체에 대해 과세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려 한다면 종부세보다는 오히려 부유세가 더 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종부세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는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발제 내용에 의하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이라면, 종부세의 존재 사유는 없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누진세, 혼인의 자유 내지 혼인에 관한 소득세의 중립성, 소득이 같은 부부에게 같은 세금을 물리는 수평적 공평, 이 세 가지의 동시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평등과 혼인의 자유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종부세가 좋은 세금이 아니나 위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종부세의 위헌 여부는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관련 문제 해결 방안

그렇다면, 종부세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종부세는 보유세에 비해 거래세 비중이 높았던 재산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는 방편이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부의 평등을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높다고 하나 GDP 대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GDP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가치와 대비하여 비교해야 적절한 것이다.

종부세 대안을 생각해 보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

다. 보유세에 대한 방편으로 종부세에 대한 과세방식은 보유중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향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소득과세의 보완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과세해야 마땅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세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과세하지 않는 편이 아마 안전한 선택일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의 초토세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 종부세를 매년 납부함으로써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도 시점에서 실제 납부능력이 생겼을 때 과세하는 것이다. 단, 과세이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정치문제인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부동산만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의문이며,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탄력세율을 통해 투기세력을 잡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종부세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민노당에서 주장했던 부유세가 옳다고 생각된다.

감세가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

박노승 / 경향신문 논설위원

먼저, 현재 상황에서 감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조세부담

률은 22.1%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금 외에 4대 보험 등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8.7%(작년 기준)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2005년 OECD 평균 36.2%)이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세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도 감세론자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령화의 진전과 낮은 복지 수준으로 인해 향후 복지지출 수요의 급증이 예견되고 있어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감세가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이다. 참여정부 말 GDP에서 복지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8%인 데 비해 다른 OECD 국가들 대부분은 20%를 넘어섰고, 또한 복지 투입에 인색하다는 미국, 일본 등도 우리의 2배 가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해 미국에서 빈부 간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케인즈 정책에 대한 '다시보기'가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케인즈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속적인 경제침체 문제는 빈부격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 세제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상장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0조원에 달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 등의 이유로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법인세를 5번 이상 인하하였지만, 성장률이 증가하였거나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인수위에 제출했던 보고서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던 내용이다.

감세보다 소비지출 확대 필요

소득세 인하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소비 진작 목적에서 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세수 손실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를 100원 깎아주면 15원만کم 소비가 증가하며, 나머지 부분들은 해외소비 또는 저축으로 간다고 한다. 감세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세제상의 혜택이 더 많이 집중되는바, 이 사람들이 세금이 줄었다고 하여 당장 국내소비를 늘릴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감세보다 조세지출 확대가 소비 진작에도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00원을 저소득층에 지출한다면 이는 대부분 소비로 되돌아올 것이다. 감세를 하는 대신, 늘어나는 세수를 중증 노인 치료시설이나 자녀보육 시설 등에 투자하면 일자리 창출, 가계소비 증가, 가정의 고통 해결(노인·아동 복지 증진) 등 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감세안, 시의적절한 정책

은기운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세율 인하, 세원 확대 차원에서 감세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 외에도 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50%에 달하는데 선진국처럼 80% 정도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율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개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면세점을 낮추는 것이다. 한편, 8,800만원 최고세율구간은 물가 인상 및 소득

인상 수준에 맞춰 신속히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인하를 1년 유예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1년 미루는 것이 과연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문이며, 오히려 빨리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 경기활성화 및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100% 자회사로 한정하였는데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효세율을 낮춰야 하고, 유가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인하되면 환급금 역시 조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재산세 등 부동산 과세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세계잉여금이 지속된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부세의 경우 납부자 중 35%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결국 종부세 부담자가 상위 2%의 부유층은 아니며, 따라서 저소득층에서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종부세 과세기준액 인상 합리적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2005년 6억원으로 정해진 이후 동결되어 왔는데 이를 9억원으로 인상한 것은 소득 상승,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인상이라 생각된다.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부부재산에 대해 합산과세 및 별도과세가 혼재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소득에서 부부재산에 대해서는 별도과세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는 반면, 종부세를 내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종부세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 또한 옳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종부세

계산시 부채도 고려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증가시켜

현진권 /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감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법인세 감세이다. 법인세 감세를 논의할 때에는 명목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모든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에서 계속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의 결론을 살펴보면 명목세율 인하를 포함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체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500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법인세 변화가 기업들의 투자 패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더니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본인의 2008년 연구결과).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의외라는 생각이다.

종부세의 두 가지 목적

종부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종부세에는 크게 부동산 투기 방지, 조세공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부동산 투기 방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경제학적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연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외국 연구 survey인데, 한국에선 종부세가 큰 토픽 중 하나이나 다른 국가에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가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없다. 이는 다른 국가들은 부동산세제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의 자본화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집값이란 것이 세금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05년 종부세 강화 이후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였으나, 최근 종부세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세금이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론적인 연구는 없다.

다음으로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역시 누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재산세를 통해 부동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비례세 형태의 재산세 제도를 갖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정치적인 분권만이 이뤄졌을 뿐 재정적인 측면에선 지방분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은 재산세를 지방정부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또한 종부세 납부금액 중 86%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바, 기업의 투입요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종부세의 부과대상 자체가 땅 부자인데 개인의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자본, 노동, 부동산 세 가치를 3대 input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땅을 얼마만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법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법인이 가진 부동산에 종부세를 매긴다면 자본이나 노동에도 종합자본세 또는 종합노동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중부세 도입취지 고려한 대안 제시를

홍종학 / 경원대 교수

먼저 재정학회 회원 중 80%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찬성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80%가 반대할 내용을 재정학자의 80%가 찬성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재정학자의 80%가 찬성했다면 이는 학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객관적이라면서 반대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역시 지적하고 싶다.

일곱 가지 감세안을 두고 관련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를 생각해 보면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현재가 감세정책에 적절한 시기인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는 감세의 결과 재정규모가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도로 투자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재정학자들이 이러한 정책에 어떻게 동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감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역시 이와 같이 급진적인 감세정책을 두 차례 시행한 바가 있다. 그 첫째는 레이건의 감세이고, 두 번째는 1920년대의 앤드류 멜론의 감세이다. 레이건과 앤드류 멜론 감세의 차이점은 레이건의 경우 감세를 하면서도 균형재정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쌍둥이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감세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지 않은 사회적 환경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면에서 앤드류 멜론의 감세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미국은 과거 앤드류 멜론의 감세와 후버의 친기업주의로 인해 소득불균등도가 악화되었고, 이것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가져와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

로 인해 소득불균등도가 개선되었고, 이것이 1970년대까지 유지되어 왔다.

결국 미국에서 단행되었던 두 차례의 감세정책은 (규제완화 등 친기업정책과 더불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 정책인데,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정책을 집행하고 이러한 정책을 재정학자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세로 인한 소득불균형도 분석 필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오면서 현재 소득불균등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감세를 할 경우 소득불균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OECD 자료에 의하면 10분위배율이 28개국 중 28위라고 보고될 정도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있고,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통계청에서 개정한 소득불균등 지수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감세로 인해 소득불균등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감세를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문제로 본다.

또한 중부세와 관련해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비율을 계산하기보다는 중부세 도입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중부세를 왜 도입했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방책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중부세 등이 패키지로 논의된 것이다. 중부세를 없애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국민소득계정에서 주거용 건물은 투자로 들어가며, 주거용 주택은 자기가 자신한테 세놓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학적 분석 방법으로, 이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

면 주택가격 대비 동 임대소득과 노동소득 등이 일정 비율로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임대소득을 무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가격이 노동소득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이는 임대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에 따라 임대소득의 비중이 과다해지고 이에 따라 세금이 급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면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인데, 부동산 거품을 줄일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려는 저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부동산 통계 역시 문제이다. 현재 공식통계로 사용되는 국민은행의 부동산통계는 주택가격의 차이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이므로, 고가 주택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 과소측정되는 특징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를 것이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랐으면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보유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에서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펴 왔다.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에만 의존하는 정책도 문제지만, 다른 가격 안정정책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세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택가격은 조세로 잡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조세는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 DTI 강화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택가격 문제는 금융규제를 통해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2005년 8·31 대책에서 종부세 강화와 동시에 강력한 DTI규제를 추진하였다면, 거품이 억제되고 종부세 세액의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DTI 규제를 강

화하는 것이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마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것은 오직 부자와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조합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를 논의하는 발제문에 포함된 재산세 비중을 비교하는 자료에서 거래세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토론을 마친다.

종부세 부과는 정당한 조치

오세세 / 국회의원(민주당)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지역의료보험 역시 재산이 3억원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연 240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 및 부가세를 내는 것과 동일하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봉이 8,500만원이면 1년에 약 1,2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 중 4,000만원을 소비하면 약 400만원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득세 및 부가세가 우리나라 국세의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종부세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의 1%에 불과하다.

은마아파트 43평(국민은행 시가 11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9억 8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에는 38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였으나, 2007년에는 300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7배 이상 증가했다. 비율로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나 소득세 및 부가세 부담과 비교했을 때는 편익 대비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다른 세금들은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으나,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재산세 측면에선 현실화가 여전히 미흡하다. 고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세 탈루 비율이 50%에 달한다. 99% 이상의 개인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의 고소득자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과세대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6억원 이상 아파트를 가진 38만명이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라는 것이 일정 기준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더 많이 내란 것이 아니다.

소득 양극화보다 재산 양극화가 더 문제

소득의 양극화보다 재산의 양극화가 더 큰 문제이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가난했고, 지방세이다보니 재산세 부담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설정하여 왔으나(0.1% 실효세율), 현재는 소득수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수준(1% 실효세율)에 맞춰 납부하라는 것이다(현재 실효세율 0.5%).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국세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종부세 재원을 지방이나 시골의 교육이나 복지재정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세는 새 정부의 경제철학에서 나온 것

나성린/한나라당 국회의원

감세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 아쉽다. 감세는 단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경제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려는 현 시점에서 2010년부터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5% 이상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가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선진화, 개방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세를 경제성장을 위한 한 방안이라는 거 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무한경쟁사회에서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파와 좌파의 경제성향이 다른데, 우파는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반면, 좌파는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세의 경우 이를 통해 투자 증대, 자본 축적, 근로의욕 촉진이 가능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여 종국에는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층은 줄어들게 되는데, 경제성장으로 늘어난 세수로 줄어드는 빈곤층을 지원한다면 이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재정지출로 하는 빈곤층의 경우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빈곤계층에 대해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새 정부는 전체적인 경기활성화 정책 추진

새 정부의 새 정책을 신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2~3년간 지켜보고 평가해 줄 것과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새 정부의 철학이 담긴 감세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빈곤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많이 추진하고 있다. 빈곤층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EITC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이에 더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하였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고 있다. 따라서 감세가 빈곤층과 중소기업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다. 새 정부는 전체적인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하여 새 정부의 기본적인 조세정책 방향은 되도록이면 직접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목표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중부세와 관련하여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조세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조세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와 공공 확대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음을 상기하면 현 부동산 시장은 지나친 규제와 과세로 거래가 소강된 것이지 이를 안정된 상태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할 것이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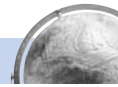
동향 08-19

요약

- 중국 세무당국은 15% 우대세율(일반 25%)이 적용되는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관한 세부 요건 발표
 - 우대세율 적용 요건에는 적격 R&D 프로젝트, R&D 비용, R&D 인력, R&D 수입금액 조건 등을 포함
 - 제도 이행규정, 승인절차, 핵심적인 지적재산권 규정은 08-18호 참조
-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8월 부가가치세율 1%p 인상(19%→20%) 폐기 발표
 - 부가가치세 인상은 2008년 예산의 일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둔화된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취소 결정
- 헝가리 수상 Gyurcsany는 지난 8월 경기부양책으로 감세 패키지 발표
 - HUF1.2조(약 USD75억) 규모 감세안으로 4%의 법인세 부가세 폐지, 개인소득세에서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단계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에 제출될 예정

1. 중국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대한 세부요건(2/2)

- 중국 세무당국은 7월 11일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세부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통지 362(Guo Ke Fa Huo [2008] No.362)를 발표
 -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일반적인 경우에는 25% 세율 적용)
 - 08-18호에 이어 R&D관련 우대세율 적용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요건을 충족하는 R&D 프로젝트
 - R&D 활동이란 기술·제품 및 공정을 상당 수준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정의
 - R&D에는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가 모두 포함
 - 통지 362에서는 일상적인 엔지니어링과 기술적인 향상의 구분을 명확히 함
 - 기술적인 향상이 있었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최소한 자신의 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
 - 통지 362에서는 당국이나 전문가가 R&D 활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
 - 여기에는 산업표준기준, 전문가기준 및 결과지향적인 기준에 기초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음
 - ▲ 산업표준방법: 국가 차원의 전문가 및 당국이 생



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 ▲ 전문가 패널 방법: 국가 표준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전문가 패널이 기술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기술적인 장점에 기초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
- ▲ 결과지향적인 방법: 상기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만 이용되는 보충적인 방법

■ 요건을 충족하는 R&D 경비

- 첨단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R&D 경비의 성격 및 유형에 대한 지침
- 종업원보상비용: 급여, 보너스, 수당, 초과근무수당, R&D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기타 보상 등이 포함
- 직접비: 재료비, 시험설비 및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실험재료비, 연료비, R&D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장비의 수선비, 운영리스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임차료가 포함
- 감가상각 및 감모상각: R&D 프로젝트를 위해 구입한 설비의 감가상각, R&D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하였거나 구입한 건물의 감가상각, 재건축·개량·수선 과정에서 R&D 설비에 지출된 경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감모상각
- 설계비용: 신제품·신기술·신공정의 설계를 위한 비용
- 시험비용: 제조장비에 관한 연구, 제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방법이나 기준의 확립 등과 같은 세공 작업 과정에서 수행되는 R&D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비용
 - ▲ 일반적인 세공 준비작업 및 대규모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목적으로 한 산업 프로젝트 경비는 R&D 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적재산권 경비: R&D 활동을 위해 구입한 지적재산권의 감모상각
- 계약 R&D 비용: 계약 R&D 경비의 80%
- 기타 경비: R&D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추가적인 경비로서 전체 R&D 경비의 10%로 제한
 - ▲ 사무용품비, 통신비, 특허권 신청비 및 유지비 그리고 첨단기술 R&D에 대한 보험료가 여기에 포함
- 한편 통지 172에서는 R&D 비용의 60%가 중국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중국에서 지출된 R&D 비용이란 기업 내부의 R&D 비용 및 제3의 중국 기업에 지급된 위탁 R&D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고 정의함
- 통지 362에서는 기업이 주요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이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 따라서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비의 종류 및 프로젝트별 추적이 가능하게 회계시스템을 신규 구축 혹은 수정해야 함

■ 요건을 충족하는 R&D 인력

- 통지 362에서는 R&D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R&D 인력의 범주를 연구인력, 기술인력, 보조인력으로 구분
- 연구인력: R&D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 기술인력: 엔지니어링 기술 및 자연과학·생활과학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고, 연구인력의 지시하에 R&D 활동에 통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기술인력은 과학 및 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 및 중요한 서류의 편집, 프로그래밍, 실험 및 테스트·분석의 수행, 실험을 위한 재료 및 장비의 준비·테스트·분석, 시험 데이터의 기록, 계산 및 도표의 작성, 통계 편집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
- 보조인력: R&D 활동에 참여하는 숙련공
- R&D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 및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근무일수가 누적하여 183일 이상이

이야 함

- 직무내용 설명서, 작업별 소요시간 명세서, 연간 평가서와 같은 서류는 R&D 인력 요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금액

-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금액에는 첨단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수입, R&D 계약 수입 및 기술서비스 수수료가 포함

2. 네덜란드 VAT 인상안 폐기

■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2007년 공표한 부가가치세율 1%p 인상안(19%→20%) 폐기를 발표

- 부가가치세 인상은 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발표한 2008년 예산의 일부로 계획대로라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 부가가치세 인상이 취소됨에 따라 2009년 20억유로의 세수결손이 예상

- 당초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를 실업보험료(Unemployment contributions) 인하를 충당하는데 사용할 계획
- 그러나 실업보험료 인하는 실업률을 낮추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부가가치세 추가 세수가 없더라도 계속 진행할 계획
- 9월 중반 2009 예산을 앞두고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

3. 헝가리 감세 패키지(Tax Cut Package)

■ 헝가리 수상 Gyurcsany는 지난 8월 27일 경기부양책으로 감세 패키지를 발표

- HUF1.2조(약 USD75억) 규모의 감세안은 가을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 중 2/3는 법인세 분야에서 나머지 1/3은 개인소득세 분야 감세

■ 법인세 분야(Corporate income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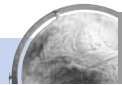
- 감세안의 첫 번째 단계는 2009년부터 법인세에서 4%의 부가세(solidarity tax)를 폐지하는 것
- 법인세 부가세는 정부의 긴축정책 관련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
- 재정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16%에서 18%로 인상

■ 개인소득세 분야(Personal income tax)

- 개인소득세의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2009년 HUF2백만, 2010년 HUF2.5백만, 2011년 HUF3백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헝가리의 개인소득세율은 과세소득 중 첫 HUF1.7백만에 대해서는 18%,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6%를 적용
- 따라서 개인소득세율은 결국 18~20%를 중심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몇몇 주변국의 단일세율 제도(flat tax system)에 견주어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

■ 감세안에 대한 재정조달 방법

- 감세안에 대한 재정조달을 위해 수상은 조세회피자(tax evaders)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장
- 또한 반조세회피정책(anti-tax evasion measures)이 감세안으로 인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못할 것을 대비해 특별준비금(special buffer fund)을 설정

- 2009년 특별준비금으로 HUF3,000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동향 08-20

요약

- 9월 22일 일본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아소 다로는 선거과정에서 소비세 인상 반대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공약
 - 지난 8월 29일 발표한 11.7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예정대로 실시
- 미국 감사원(GAO)은 낮은 법인세 부담요인이 미국의 다국적기업 투자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행
 - 국내소득 법인세 부담률이 평균 25%인 데 반해 외국원천소득 법인세 부담률은 약 4%에 불과하고 저세율국가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평균을 상회
 - 낮은 세부담의 원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과실송금 이연, 이전가격 등
- 그리스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월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안과 함께 세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조세회피 근절을 제안
 - 법인세율 인하(25%→20%)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25% 세율구간→20%)
 - 정부계정을 예산과정에 포함, 정부지출 감시단체 설립, 주식에 대해 10%의 자본이득세 및 배당소득세 도입 등 포함

1. 일본 자민당총재 Taro Aso의 조세정책 방향

- 9월 22일 자민당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아소 다로의 조세정책 방향은 후쿠다 수상의 노선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다수당인 자민당 신임총재는 다음 달 총선을 통해 총리로 선출될 예정
 - 자민당 간사장 Taro Aso의 조세정책 방향
 - 소비세 인상에 반대
 - ☞ 소비세 인상은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제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
 - 소득세 인하와 공공지출 확대
 - ☞ 자민당이 8월 29일에 발표한 11.7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계획
 - 2011년 재정수지 흑자라는 정부목표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의견 표명
- 지난 8월 29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은 다음과 같음
 - 명칭은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으로 불안 해소, 지속 가능한 사회에의 변혁 가속, 성장력 강화의 3가지를 목표로 함
 - 종합경제대책 규모는 용자범위의 확대 등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을 포함하여 11.7조엔 수준
 - 재정지출은 2조엔으로, 정부는 약 1.8조엔을 2008년 추가예산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고 적자국채(deficit-financing bonds)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
 - 그러나 소득세나 주민세의 정책 감세를 금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
 - 구체적인 대책으로 중소기업 지원, 트럭운전자 또는 버스 및 택시 사업자와 같이 원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소득세 및 주민세 감

면 내용 등이 있음

- 소득세 및 주민세의 정액 감면은 고소득층보다는 중하위소득층에게 혜택
-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포함

2. 미국 법인의 소득이전과 법인세율의 상관관계(GAO)

- 감사원(GAO)은 2008년 9월에 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행태와 국가별 법인세율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 발표하였음¹⁾
 - 다국적기업의 외국 원천소득(foreign-source earnings)을 신고하는 투자국가의 장소와 투자국의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 다국적기업의 국내소득(domestic earnings)에 대한 세부담이 외국 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유효법인세율은 평균적으로 25.2%(명목세율은 39%)이지만, 외국 원천소득에 대한 평균적인 유효법인세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GAO의 보고서에 의하면 낮은 조세부담률의 원인으로 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용과 ② 다국적기업이 외국 원천소득을 배당 형태로 미국에 송금하지 않고 소득을 이연하려는 행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세청(IRS)의 자료에 의하면 이전가격의 남용(transfer pricing abuse)에 기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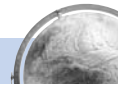
다는 분석도 있음

- 다국적기업에 조세부담은 실제 사업 활동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을 유보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다국적기업 투자 유치를 위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주요 국가로 버뮤다, 아일랜드, 케이먼 군도, 스위스,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세율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수익률(ROA)이 높음.
 - 제조업(평균 투자수익률이 7.7%)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한 저세율국가의 투자수익률이 버뮤다(20.3%), 아일랜드(17.3%), 네덜란드(14.9%), 스위스(10.3%)이며
 - 서비스업(평균 투자수익률이 13.8%)의 경우 아일랜드(38.2%), 버뮤다(19.6%), 네덜란드(16.7%), 스위스(15%)로 나타남

3. 그리스(Greece) 감세정책

- 그리스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월 27일 둔화된 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감세안과 함께 이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조세 회피(tax evasion) 근절을 제안
 - 중도 우파 정부가 제안한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세(tax reductions)방안
 - 법인세율을 현 25%에서 20%까지 인하
 - 2009년을 시작으로 매해 1%p씩 단계적으로 인하
 - 개인소득세에서 2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의

1) 2008년 8월 감사원(GAO)은 미국 상원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대한 정보요청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나, 9월 8일 추가적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세율을 20%까지 2009년을 시작으로 매해 1%p씩 단계적으로 인하

- 그리스의 현 개인소득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리스의 개인소득세율〉

근로소득(연금소득 포함) ¹		기타소득	
과세표준(EUR)	세율(%)	과세표준(EUR)	세율(%)
~12,000	0	~10,500	0
		10,500~12,000	15
12,000~30,000	27(25) ²	12,000~30,000	272
30,000~75,000	37(35) ²	30,000~75,000	372
75,000~	40	75,000~	40

주 1: 근로소득의 세율체계는 근로소득이 전체 신고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2: 2009년부터 각각 25%, 35% 적용

- 세수부족(revenue shortfall)에 대한 대응방안
 - 정부지출 통제를 위해 일반예산에 속하지 않았던 정부계정(government accounts)을 예산과정에 들여 오고, 정부지출을 감시하는 정부단체를 설립
 - 주식에 대해 10%의 자본이득세 및 배당소득세 도입
 - 단 지분 매각시 적용되던 현 0.15%의 세금은 폐지할 계획
 - EUR10,000 미만의 자영업자 소득에 대해 10%의 신규 과세 도입
-
- 동 정책으로 국가의 예산결손이 GDP의 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책흐름

- 2009년 예산안
-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
- 2009년 국세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
- 알쏭달쏭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

2009년 예산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제도약 예산

* 이 자료는 2008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제도약 예산」중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I.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전체 모습

1-1. 성장 전망

- '09년 경제성장률은 실질기준 4.8~5.2%, 경상기준 7.2~7.6% 예상¹⁾
- '08년은 유가 상승,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4%대 후반 성장 전망
- '09년은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 성장궤도로의 복귀가 예상되어 연간 5% 내외의 성장 전망

1-2. 수입 전망

- '09년 예산수입은 '08 대비 7.2% 증가한 209.2조원
-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08 대비 7.6% 증가한 295.0조원

(단위: 조원)

	'08	'09안	증감률(%)
■ 예산	195.1	209.2	7.2 ¹⁾
• 국세	(165.6)	(179.6)	(8.4)
• 세외수입	(21.3)	(21.5)	(0.6)
• 보전수입(국채 등)	(8.2)	(8.1)	(△1.2)
■ 기금	87.3	94.0	7.7
■ 총수입 ²⁾	274.2	295.0	7.6

주: 1) 국채 등 보전수입 제외시 증가율은 7.6%

2) 국채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국세, 세외수입, 기금 자체수입의 합계

1-3. 지출규모

- '09년 예산은 '08 대비 7.2% 증가한 209.2조원
- 총지출은 금년보다 6.5% 증가한 273.8조원 규모로 편성

(단위: 조원)

	'08	'09안	증감률(%)
• 예산	195.1 (199.7)	209.2	7.2 (4.8)
• 기금	74.5 (74.8)	78.8	5.8 (5.3)
• 총지출 ¹⁾	257.2 (262.1)	273.8	6.5 (4.5)

* () 는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한 규모 및 증가율

주: 1)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1) 수입 전망은 실질 5.0%, 경상 7.4% 전제

1-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는 '08년보다 다소 개선된 GDP 대비 $\Delta 1.0\%$ 수준 적자
-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금년보다 다소 낮은 32.3% 수준
 - 향후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08년 대비 다소 하락한 13.4% 수준

(단위: 조원)

	'08	'09안	증 감
■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11.0$ ($\Delta 1.1$)	$\Delta 10.4$ ($\Delta 1.0$)	0.6 (0.1)
■ 국가채무 (GDP 대비, %)	317.1 (32.7)	333.8 (32.3)	16.7 ($\Delta 0.4$)
• 적자성 채무 (GDP 대비, %)	134.8 (14.3)	138.2 (13.4)	3.4 ($\Delta 0.9$)
* 일반회계 국채	7.4	7.3	$\Delta 0.1$
* 외평채	10.0	15.0	5.0

2. 자원배분의 중점

2-1. 12대 과제

1 |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

2 |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 내실 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강화
-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3 |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범치사회 구현
-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및 글로벌코리아 추진

4 |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

2-2. 과제별 내용

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책방향

- ◇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Job-training 강화
- ◇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고용서비스 확대

-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15만명) 창출 ('09년 8천개, 3만명)
 - 아이디어상업화, 모태펀드 확충,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원 강화
-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Job-training 강화
 - '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09년 18천명) 및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 분야 청년리더 10만명('09년 13천명) 육성
 - 공공기관 인턴제('09년 10천명) 및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09년 5천명)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08) 10천 → ('09) 40천명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12년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 ('08) 170 → ('12) 1,000개
 - 경력단절여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일센터' 운영('09년 50개) 및 주유·택배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09년 128천개)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벤처창업활성화지원	7,810	13,008	• 창업활성화 용자 : 6,400 → 10,000
■ Job-Training 강화	1,018	2,745	• 글로벌·미래산업 : 1,018 → 2,006
■ 직업능력개발지원	14,242	14,453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207 → 634
■ 사회서비스 일자리	10,458	10,950	• 사회적 기업 육성 : 296 → 783
■ 여성·노인일자리지원	833	1,040	• 노인일자리 : 117 → 128천개
計	34,361	42,196	22.7% 증

②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정책방향

-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 대폭 확대
 - 기초·원천 투자비중을 '08년 25 → '12년 50% 수준으로 제고
 -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및 연구비 관리제도 효율화
- * R&D분야 증가율이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

-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창조형 R&D 투자 확대
 -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3,640억 → 5,000억원)

- 녹색기술 개발(10,812억 → 13,069억원) 및 미래 선도형 신성장동력사업(7,849억 → 11,923억원) 지원 강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4,300억 → 4,870억원) 및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2,445억 → 2,831억원) 확충

- 국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및 국제 공동연구 지원 강화(2,816억 → 3,143억원)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 제도를 개선, '09년도 인건비 지원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 출연(연) 인건비 지원비중(%) : '08년 31 → '11년 70 수준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기초·환경·에너지 등	23,486	30,329	• 미래기반기술개발(747 → 1,170) 등
■ 우주항공·생명 등	31,826	36,370	• 통신해양기상위성(697 → 907) 등
■ 기계·제조공정 등	13,083	13,827	•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429 → 631) 등
■ 정보·전자 등	18,989	19,737	• 디지털컨텐츠원천기술개발(225 → 250) 등
■ 인력양성·장비구축 등	23,400	22,467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150 → 190) 등
計	110,784	122,731	10.8% 증

③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

정책방향

- ◇ 재정투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SOC 사업 적기 확충
- ◇ 환경·에너지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 ◇ 기업생산·물류 지원 및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뒷받침

- 민간 先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등 신규제도 활용 및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SOC 사업의 완공 위주 집중투자
 - 재정투자는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보다 대폭 확대 (2.5 → 7.9%)
 - 계속비 대상 확대를 통해 민간 先투자를 활성화 하고, 토지은행을 설치,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 SOC·산단용지 비축
 - ☞ 이를 통해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 국민편익을 조기에 가시화
 - * 완공사업 : (08) 장항선 개량 등 41건 → (09) 서울 9호선 등 85건
 - * 국도 공구당 평균 사업비 : (08) 118 → (09) 167억원
-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 전철망, 간선급행버스(BRT*)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저상버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구축으로 편의성 향상
 - * BRT(Bus Rapid Transit) : 청라-화곡, 하남-천호 및 지방권 확대(125억원)
 - ** BIS(Bus Information System) : 서울-용인 등 23개 노선 확충 (214억원)
 - 철도·전철역 환승체계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적기 확충
 - 항만 배후물류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연결도로, 배후 철도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
 - * 준공업지구, 공장입자유도지구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신규로 지원
-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09년부터 본격 지원

- 7×9 국가기간망, 철도망, 국제 공·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
 - * 선도 프로젝트는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 상위계획과 부합성, 광역권의 특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도로	77,848	81,456	• 고속도로 건설(9,293 → 10,667)
■ 철도	36,540	36,949	• 철도건설(23,811 → 26,987)
■ 도시철도	12,863	14,562	• 도시철도 건설(6,523 → 7,793)
■ 해운·항만	20,374	20,042	• 신항만 개발(11,847 → 10,539)
■ 항공·공항	2,109	442	• 인천국제공항 2단계(1,290 → 0)
■ 물류 등 기타	14,417	20,821	• 여수EXPO박람회장 등(23 → 1,915)
■ 수자원	16,007	18,364	•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11,867 → 13,895)
■ 지역개발	10,372	12,602	• 국토정보관리(1,436 → 1,488)
■ 산업단지	5,340	6,180	• 산단전입 도로(4,215 → 5,900)
計	195,869	211,418	7.9% 증
* 30대 선도프로젝트	14,810	26,991	

참고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 ① 수도권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제2의 광순환도로 건설
 - * 인천-김포-파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
 - 서해선과 연계한 광역전철망 신설(원시-소사-대곡)
 -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 확충 (인천2호선)

② 충청권 : 과학기술,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 거점도시간 신교통수단 구축(대전-행정복합도시-오송)
- 물류효율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제2경부, 제2서해안)
- 환황해권 성장거점을 철도로 연계(서해선 철도)
- 서해안-내륙 연계하는 동서4축 고속도로 확충(음성-제천)

③ 호남권 :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 새만금 조기 개발(새만금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 여수EXPO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교통시설 등 적기 확충
-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 촉진(압해-암태, 화양-적금 연륙교)
-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연계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 다핵형 광역권 성장을 위한 광주외곽순환도로 구축

④ 동남권 : 한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

- 부산항-광양항 간 철도 복선전철화(부산-마산-진주-광양)
- 내륙-울산을 연결하는 동서8축 확충(함양-울산)
-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대경권과 함께 검토)
- 기간산업 연계, 해양관광 활성화(마산-거제 연륙교)
- 다핵형 광역권 성장을 위한 부산외곽순환도로 구축

⑤ 대경권 :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 내륙-동해안 연결 동서5축 도로 확충(영주-울진)
- 내륙-동해안 연결 동서6축 도로 확충(상주-영덕)
- 동남권-동해안에너지벨트 연계 동해고속도로 확충(울산-포항-영덕)
- 내륙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 다핵형 광역권 성장을 위한 대구외곽순환도로 구축

⑥ 강원권 :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서·동해고속도로 건설(춘천-양양, 동해-삼척, 주문진-속초)
- 수도권-강원권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
- 내륙 산업 및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⑦ 제주권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 체류형 해양 레저 관광기반 확충(서귀포 크루즈항)
- 수요창출형 관광시설 건설(해양과학관)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④ 내실 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정책방향

- ◇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활 지원 확대
-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확대
- ◇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 중복·사각지대 해소, 복지체감도 제고

-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시범 도입
* 최저생계비(만원/월, 4인가구) : (08) 126.6 → (09) 132.7
- 지적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도입(신규 304억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교육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확대
* 드림스타트 : (08) 32개소, 96억원 → (09) 75개소, 149억원
- 서민층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대상 확대(차상위 → 하위 5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자가양육비 지원*(신규 324억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 0세 아동 56천명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65세 이상 노인의 60 → 70%), 노인장기요양보험 확충
- 복지수요·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신규 207억원),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29센터(신규 6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기초생활보장	68,577	69,451	• 생계급여 (22,564 → 23,901)
■ 장애인 지원	7,034	7,242	•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 (738 → 1,081)
■ 영유아 보육 지원	14,178	16,942	• 차등보육료 (10,376 → 12,821)
■ 노인 지원	20,434	30,485	• 기초노령연금 (15,948 → 24,697), 노인장기요양보험 (1,353 → 3,270)
보건·복지분야 計	676,516	737,104	9.0% 증

⑤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

정책방향

- ◇ 고교다양화 3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 ◇ 국내외 우수 교수·연구인력 유치 및 자율과 성과에 기반한 재정운용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저소득층 중고교생·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학비 지원 확대
 - 중고교생 학비지원 : 일부 차상위 → 전체 차상위('08. 2학기부터)
 - 대학생 기초생보자 장학금 : 1 → 2학년 확대('11년까지 수학년 확대)
 - 이차보전 : 무이자(~소득 2분위), 3.15%(소득 3~5분위), 1.15%(소득 6~7분위)
- 기숙형공립고(150)·마이스터고(50)·자율형사립고(100)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및 실습비 등 지원
 - (08) 102개교, 3,673억원(기숙형 공립고 82, 마이스터고 20개)
 - ('09) 108개교, 3,650억원(기숙형 공립고 68, 마이스터고 10, 자사고 30개)
-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학지원을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총액배분 방식으로 개선
 - 국내외 우수 학자를 유치하여 대학(원)에 새로운 융복합 전공 및 학과 20여개를 개설, 5년간 지원
 - 총액배분 주요 지표 :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학생 충원율 등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7,362	8,238	• 기초생보자 장학금, 학신보기금 지원
■ 대학 경쟁력 강화	7,902	7,912	•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 지방대 경쟁력 기반 확충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고교다양화 300 (중고교생 학비지원))	306,388 (3,673) (2,689)	335,544 (3,650) (2,753)	• 내국세 20%, 교육세 전액 • 자율화 · 다양화된 고교 300개 육성 • 학교운영지원비 추가지원
교육분야計	355,551	386,731	8.8% 증

⑥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정책방향

◇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육성
• 한식 세계화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어업과 2·3차 산업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해외 한식당 현대화, 식단 표준화 등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
 - 생산자 참여형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지원 확대

* 농수식품수출(달러) : ('08년) 41억 → ('12년) 60억

-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 · 전문화 및 직거래 활성화
 - 농업인이 참여하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
 - 직거래 자금 지원 확대 및 사이버거래소 설립 · 운영

* 농수산물 물류비 비율(%) : ('08년) 52.5 → ('12년) 50.5

- 겨울철 유희지를 활용한 사료 생산 확대 및 해외농업개발 지원

*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률(%) : ('08년) 34 → ('12년) 72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농어업경쟁력 강화	16,481	20,981	• FTA 대책 1.3조 → 1.5조원 화학비료지원 1,140 등
■ 농식품산업 지원	8,090	9,493	• 생산자응답복합식품산업 지원 100, 한식세계화 200 등
■ 농산물 유통 효율화	18,944	19,359	• 시군 유통회사 66, 소비지 · 산지협력 2,04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치 · 운영 30 등
■ 농산물 안정적 확보	17,372	20,778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729, 해외농업개발 510 등
■ 농업생산기반 정비	19,491	19,122	• 수리시설개보수 3,300, 새만금 3,336 등
농수산식품분야計	159,636	166,238	4.1% 증

⑦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정책방향

◇ 그린에너지 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

* 에너지 원단위(TOE/천불) : ('07) 0.341 → ('12) 0.292 → ('30) 0.185

- 태양광 · 풍력 · 수소연료전지, 그린카 등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 (10,812억 → 13,069억원)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시설 등 에너지 고효율 보급 확산
 - 그린홈, 풍력발전, 태양광, 지열 등의 보급 지원을 강화하고,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용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 ('07) 2.4 → ('12) 4 → ('30) 11

• CNG자동차,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新대중
교통수단 확충 지원

- 대기오염 저감, 폐기물자원화 등 친환경산업을 지
원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 Post-2012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
화 대응기반 조성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녹색기술 개발	10,812	13,069	• 신재생에너지 (2,079 → 2,424) • 원자력·핵융합 (3,775 → 4,683), 그린카(173 → 234)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시설 등 보급확산	11,058	13,820	• 신재생에너지 (3,103 → 4,482) • 에너지절약시설 용자 (4,837 → 5,337) • CNG·新대중교통수단 (1,054 → 2,085)
■ 친환경산업 육성	879	1,408	• 폐기물 자원화 (32 → 344)
■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7,895	9,619	• 농업 온실가스 저감 (2,200 → 2,663)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42 → 420)
計	30,644	37,916	23.7% 증

⑧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정책방향

- ◇ 재해 대비 사전예방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
- ◇ 사업 조기완공을 통해 재해대응능력 대폭 확충

- 목적예비비(1.2조원) 중 0.2조원을 사전예방투자자로
전환하여 재해예방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 확대(1,583억 → 2,583억원)로 완료시기를 '18년에서 '14년으로 4년 단축

- 특히, 재해위험도가 높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집중투자 및 조기완료 추진
-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 건설은 367개에서
500개로 확대(722억 → 958억원)

- 계속사업인 한탄강댐 건설(500억 → 715억원), 굴
포천 정비(580억 → 920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하
여 재해예방효과 제고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583	2,583	• 사업완료시기 단축 ('18 → '14)
■ 사방댐 건설	722	958	• 367개소 → 500개소 (증 133개소)
■ 한탄강댐 건설	500	715	• 공정을 6 → 13% (증 11% p)
■ 굴포천 정비	580	920	• 공정을 45 → 61% (증 16% p)
재해예방計	30,029	33,287	10.9% 증

⑨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

정책방향

- ◇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
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활동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합리적 법·제도 개선 및 법교육 지원 강화(28억 → 86억원)
 - 준법시위 정착 등 질서유지 역량 강화(560억 → 726억원)
- 국민생활과 직결된 치안 및 교통분야 예방·단속 강화
 - 아동 및 성폭력, 소비자범죄, 부정식품 등 국민생
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90억 → 125억원)

* 범죄검거율(%) : '07년 82.8 → '12년 88.2

-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 강화(714억 → 756억원)

* 1교통사고 사망자 수(자동차 1만대당, 명) : (08) 2.9 → (12) 2.3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법제도개선 및 법교육	28	86	• 법질서세우기운동(36), 법교육(15) 등
■ 준법시위 정착	560	726	• 준법시위관리(520), 경비활동지원(206)
■ 민생침해사범 단속	90	125	• 국민생활침해단속(43), 실종아동 수사지원(27), 생활안전(55)
■ 교통무인단속장비 운영	714	756	• 무인교통단속기(164), 유지보수·관리비(284) 등
합	1,392	1,693	21.6% 증

⑩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정책방향

- ◇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
- ◇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 임 강화

- 정보·기술 중심의 최첨단 전력증강 지원 및 R&D 투자 확대
 - 감시정찰·지휘통신 등 핵심전력 중점 확보(1.9조 → 2.2조원)
 -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축('13년), 군위성통신장비 도입('10년) 등
 -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 비중 확대(5.4 → 5.7%)
-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장병복지 개선 중점 지원
 - 군 주거시설 조기개선 추진('13 → '12년) 및 시설

안전 투자 확대

* 병영생활관 개선율(침상형 → 침대형, %) : (08) 59.9 → (09) 73.7

- 귀환 국군포로, 전사자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군포로·가족 지원(23억 → 39억원), 연평해전 기념관 건립(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방위력 개선	76,768	85,899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876억 → 2,858억원) • 국방R&D (14,522억 → 16,209억원)
■ 전력유지	81,039	88,858	• 군주거시설 개선 (5,047억 → 7,276억원) • 시설안전대책(548억원)
■ 병력운영	99,220	101,436	• 유급지원병 확대 (64억 → 204억원)
■ 병무행정	2,091	2,061	• 사회복무자 인건비 (376억 → 392억원) 등
국방분야 합	259,118	278,254	7.4% 증
(일반회계 기준)	(266,491)	(286,379)	(7.5% 증)

⑪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및 글로벌 코리아 추진

정책방향

- ◇ 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지향
- ◇ 글로벌 코리아 구현과 에너지 협력 외교 적극 추진

- 대북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 지속 (4,769억 → 8,089억원)
 - * '03~'07년도 매년 식량 40만톤, 비료 30만톤 수준 지원
- 남북경협은 '대북경협 4대 원칙' *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 (6,101억 → 3,006억원)

* 비핵화 진전 · 경제적 타당성 · 재정부담 · 국민적 합의

- ODA 규모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단계적 확대 (1.0조 → 1.1조원)

* ODA/GNI 비율(%) : (08) 0.108 → (09) 0.113

- 재외 과학자, 교수, 문화 · 관광인 등 한인 네트워크 확충 (신규 17억원)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에너지 · 자원 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신규 2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대북 식량 · 비료 지원	3,832	7,181	•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 국제협력단 출원	2,872	3,172	• 보건의료, 학교 등 개도국 대상의 무상원조
■ 국제기구분담금	2,259	2,276	• UN, PKO 분담금 및 사업분담금 등
통일외교분야 합	28,177	28,783	2.2% 증

12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

정책방향

- ◇ 작고 효율적이며 절약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
 - 공직사회부터 경제살리기에 앞장

- 공무원 정원은 현 수준으로 유지
 - 불가피한 증원소요는 해당 부처 내 인력재배치 또는 타부처 정원을 감축하여 충당

* 다만, 전 · 의경 감축(8,520명)에 따른 대체인력은 최소한 범위(감축인력의 30% 수준) 내에서 총당 (경찰 등 2,556명)

- 공직사회의 고등분담 선도 차원에서 '09년도 보수 인상 동결

* 공무원 보수인상률(%) : (05) 1.3 → (06) 2.0 → (07) 2.5 → (08) 2.5 → (09안) 0.0

- 보수동결로 절감되는 예산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

* '08년 수준의 보수인상(처우개선 2.5%) 가정시 5,800억원 절감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3-1. 재원배분의 변화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중심	■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Job Training 강화
R&D	■ 부처별 분산 · 중복 투자 ■ 연구관리기관 과다 * 지경부 12개, 교과부 3개	■ 부처통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 ■ 연구관리기관 통합 * 지경부 3개, 교과부 1개
SOC	■ 낮은 재정투자 증가율 * '04~'08년간 연평균 2.5% 증가	■ 민간先투자, 토지은행 등을 활용한 투자 증가율 제고 * '09년 7.9%, 선투자 등 포함시 18%
지역발전	■ 시군구/시도간 균형발전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
복지	■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 우선 ■ 지원대상의 급속한 확대	■ 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 내 실화 ■ 저소득 · 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교육	■ 사업단 위주의 지원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대학별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
국방	■ 국방개혁 초기에 재원이 과도하게 집중	■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균형 있게 배분
외교 · 통일	■ 대북지원 확대에 중점 ■ 동북아 현안 중심의 외교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 ■ 에너지협력 등 실용외교 강화
공무원 증원 및 보수	■ 지난 5년간 10만명 증가 ■ 처우개선 증가율 2.4%	■ 작은 정부 및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총정원을 '08 수준으로 유지 ■ '09년 처우개선 동결

3-2.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안

(단위: 조원, %)

구 분	'08*	'09안	증가율
1. R&D	11.1	12.3	10.8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13.2	5.0
3. SOC	19.6	21.1	7.9
4. 농림수산식품	16.0	16.6	4.1
5. 보건·복지	67.7	73.7	9.0
6. 교육	35.6	38.7	8.8
7. 문화·체육·관광	3.3	3.4	3.4
8. 환경	4.5	4.7	5.6
9. 국방(일반회계)	26.6	28.6	7.5
10. 통일·외교	2.8	2.9	2.2
11. 공공질서·안전	11.7	12.2	4.4
12. 일반공공행정	45.9	47.5	3.5
◆ 예산(순계)	195.1	209.2	7.2
◆ 총지출	257.2	273.8	6.5

* 당초 예산

3.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① 취약계층

- 지적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신규)
 -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 장애아동은 바우처를 통해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용 가능
 -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 주 8회, 월 20만원 바우처 지원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 중증1급 장애인은 가사·사회활동을 도와주는도우미를 월평균 70시간 이용 가능
 - ※ '08) 20천명, 월평균 56시간 → '09) 25천명, 월평균 70시간
- 기초노령연금
 - 65세이상 노인의 70%가 금년보다 3.6%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수령

※ '08) 노인 60%, 월 84천원 → '09) 노인 70%, 월 87천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등급 해당자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이용시 보험 혜택

(단위: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복지부	장애아 재활치료	-	304	■ 지적 장애아동 대상 언어·미술 등 재활치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738	1,081	■ 중증장애인 가사·사회활동 지원
	기초노령연금	15,948	24,697	■ 전체노인의 60 → 70%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1,353	3,270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시설·재가서비스 지원

② 아동

- 드림스타트(빈곤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지원서비스)
 -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아동은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보건·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 가능
 - ※ 드림스타트센터(개) : '08) 32 → '09) 75
-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
 - 0~12세 아동은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현재와 같이 무료, 민간 병·의원에서는 접종비의 1/3을 신규 수혜
 - ※ 8종 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MMR, Polio, DTaP, 일본뇌염, 수두, Td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확대
 - 성인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법률·상담 등 전문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

※ 해바라기 아동센터(개소) : (08) 4 → (09) 10

■ 아동 비만예방 지원

-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운동처방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4만원) 제공
- 인조잔디 운동장·우레탄 트랙이 조성되는 학교 수 확대, 학교 순회 체육보조강사 1,000명을 통해 비만예방 체육 프로그램 보급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 (08) 98개소 304억원 → (09) 155개소 490억원
 학교순회 체육보조강사 : (09신규) 1,000명 90억원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복지부	드림스타트	98	149	• 빈곤아동 통합지원
	국가 예방접종	205	390	• 12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여성부	아동성폭력전담센터	14	68	• 아동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
복지부 식약청	어린이 비만관리 사업	31	46	• 비만아동 치료바우처(월4만원) 지급 등
문화부	어린이 생활체육 지원	304	580	• 학교 체육시설개선 확대, 체육보조강사 지원(신규)

③ 여성

■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의 절반(하위 소득 50%)은 무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 ※ 무상보육 대상 : (08) 차상위 이하 26만명 → (09) 소득 50% 이하 47만명
- 차상위 계층 이하 0세아를 보육시설 대신 부모 또는 친척을 통해 양육할 경우 자가양육비 수급(신규)
 - ※ 차상위 계층 이하 0세아 56천명 대상, 월 10만원 지원
- 정규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거주자는 마을회관 등을 보육시설로 개조하고 보육교사가 파견되는 소규모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신규)
 - ※ 농어촌 10개 시범지역 대상, 지역당 2명 보육교사 파견, 9억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자는 육아휴직기 중 최대 1년간 월 50만원 수준의 휴직급여를 분산사용·반일제 등 다양하게 이용

■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신규)

-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일하고자 할 경우 전담 one-stop 종합취업 지원서비스 이용('09년 50개소)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복지부	보육료 지원	10,376	12,821	•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 지원
	자가양육비 지원	-	324	• 저소득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자가양육비 지원
	농어촌 소규모 보육	-	9	• 농어촌 마을회관 등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노동부	육아휴직급여	610	1,399	• 육아휴직자 급여지원
여성부 노동부	여성다시일하기 센터	-	73	•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④ 학생(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보자 및 일부 차상위 계층 자녀들은 1인당 연간 30만원 수준의 무료수강권 이용 가능
 - ※ 지원대상 : (08) 기초생보자 320천명 → (09) 차상위계층 10% 350천명

■ 고교다양화 300

- 농산어촌 학생들은 기숙형 공립고를 통해 기숙사 이용 확대
- 실업계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를 통해 졸업 후 취업 보장

- 차상위층 중고교생 자녀 학비부담 경감
 - 중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일부 차상위 → 전체 차상위 ('08. 2학기부터)
 - ※ 차상위 지원대상(천명) : ('08. 1학기) 25 → ('08. 2학기) 386
- 기초생보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 기초생보자 대학생은 입학 후 연간430만원의 등록금 부담감소
 - ※ 지원대상 : ('08) 1학년 (11천명) → ('09) 1~2학년 (25천명)
 - 저소득층 대학생은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학자금 대출
 - ※ 무이자(~소득 2분위), 3.15%(소득 3~5분위), 1.15%(소득 6~7분위)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교과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지원	1,146	1,265	• 무료수강권 지급
	고교다양화 300 ¹⁾	3,673	3,650	•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중고교생 학비 지원 ¹⁾	2,689	2,753	• 차상위층으로 지원 확대
	대학생기초생보자 장학금	700	1,090	• 등록금 지원
	학자금 보증대출	2,907	3,234	• 학자금 대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5 청년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글로벌 업무에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외취업(5만), 해외인턴(3만), 해외봉사단(2만) 등 관심 영역별로 도전 가능
 -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연간 5천명), Working Holiday(3만 → 4만명) 등을 통해 청년 해외체험 및 취업기회 확대도 병행
- 미래산업 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종사할 청년은 연구개발

발·핵심고급·전문인력으로 분류된 맞춤형 인재양성서비스 이용 가능

※ 신재생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13천명), 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13천명), 정보통신융합(24천명), 문화콘텐츠(12천명), 첨단의료·지식서비스(38천명)

- 미취업 청년층 대상 청년인턴제 (신규)
 - 미취업 청년층은 정부·산하기관에 중장기(6월 이상) 청년인턴제를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경력형성
 - 인턴 초기 6월간 및 정규직 전환조치 이후 6월간 민간기업이 지급하는 약정임금의 50%를 정부가 대신 부담

■ 취약 청년층 대상 뉴스타트 사업

- 고졸미취업자, 비경제활동청년 등은 진로탐색·훈련 및 직장체험·취업알선까지 약 1년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중부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449	833	• 해외취업·인턴·봉사 등
	미래산업 청년리더	569	1,173	•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청년인턴제	-	739	• 중소기업 인턴(5천명) • 공공기관 인턴(10천명)
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10	84	•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6 소상공인·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재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도 안정적인 대출보증 확보
 - ※ 보증지원 지원업체 수(개) : ('08) 297,800 → ('09) 331,000
-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융자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

한 창업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용자자금을 활용하여 성공적 창업 가능

※ 지원업체 수(업체당 평균 4억원, 개) : (08) 1,600 → (09) 2,500

■ 창업·벤처기업 투자전용 모태조합 출자

• 창업·벤처기업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창투조합의 투자를 유치하여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본금 조달 가능

※ 창투조합 투자업체 수(업체당 평균 10억원 투자, 개) : (08) 220 → (09) 320

■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신규)

•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정보제공포탈(spi.go.kr), 콜센터(☎1357), 방문 상담(지방중기청) 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일 창구를 통해 해소

* 통합상담창구 : 창업, 수출, 세무, 법무, 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상시 배치

※ 지원업체 수 : 단기과제 애로해결(2,510개사), 애로상담(21,000개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공동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전국의 260개 전통시장이 지원을 받아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의 개보수 실시

※ 주차장 지원 : (08) 57곳, 527억원 · (09) 85곳, 820억원

■ 아이디어상업화 창업 지원 (신규)

• 우수·창조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창업초기기업)는 상품화·자금조달·마케팅 등 일괄 지원을 받아 창업

* 우수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아이디어상업화센터(가칭)에 신청 가능하며, 상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09년 지원업체 수 : 263개(업체당 평균 35백만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보육 지원

• 창업초기기업은 대학·연구소 등에 설치된 창업지원 공간에 입주하여 경영·기술·세무 등 컨설팅을 받아 자립 발판 마련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수(개) : (08) 4,441 → (09) 4,791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중	지역신보 재보증	180	290	•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한 지역신보 재보증
	창업활성화 (용자)	6,400	10,000	• 예비창업자·창업초기기업에 정책자금 용자
	모태조합 출자	800	1,150	• 창투조합에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기	원스톱기업 지원 비즈니스링크 구축	-	97	• 온라인·전화 등을 통한 기업애로원스톱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486	1,749	•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청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	100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일괄지원
	창업보육센터건립 지원	175	286	• 창업초기기업의 창업 성공을 위한 보육지원

7 농어업인

■ 비료가격 보조

• 비료가격 보조 및 지원물량 확대로 농가의 비료 구입비용 부담 완화

※ 화학비료 : '08. 6월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추가부담액 40% 정부 지원('08추경 333천톤, 2,410원/20kg → '09년 944천톤, 2,410원/20kg)

※ 유기질비료 : '08년 추경수준 지속 지원 (200만톤, 1,160원/20kg)

■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자

•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는 사료구매자금 저리 용자(1%)를 받아 경영부담이 감소

※ 정부는 용자('08년 1.6조원 '09년 신규 1.1조원)에 대한 이자율 차액 지원

- 시설원에 에너지 고효율 시설·장비 지원 (신규)
 - 시설원에 농가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 설치 시 소요 비용의 20%만 부담
 - ※ 정부 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신규)
 - 617척 어선의 선주(船主)는 고성능 저비용 LED(발광다이오)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설치비의 40%만 부담
 - ※ 정부 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 농업인재해공제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상해나 농기계 손실에 대비하여 재해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대신 부담
 - ※ 사망시 보상금 : (08) 4.5천만원 단일형 → (09) 4·5·6천만원 선택형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대신 부담
 - ※ 보험대상 품목 수(개)/가입률(%) : (08) 15/28.5 → (09) 20/30.5

- 취약농가 인력 지원
 - 사고나 질병, 고령으로 영농이나 가사를 돌볼 수 없는 농어가는 30% 비용부담(영농) 또는 무료(가사)로 도우미 활용
 - ※ 영농도우미 : 정부 70% 부담 30%, 가사도우미 정부 70%, 농협 30%

-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민은 본인 부담 건강·연금보험료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대신 부담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로 용자받아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농식품부	비료가격 보조	(1,562)*	2,300	• 비료 가격 보조
	사료구매자금 지원	(273)*	1,027	•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 사료 구입비 용자
	시설원에 에너지 효율화 장비 지원	-	260	• 장비·시설비 지원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	55	•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설치 지원
	농업인재해공제	278	322	• 공제료 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596	618	• 재해보험료 50%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58	60	• 도우미인건비 지원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240	2,624	• 보험료 50%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413	475	• 학자금 무이자 용자	

* ()는 추경 및 '0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⑧ 근로자

- 취약근로자 훈련 중 생계비 대부 (신규)
 - 비정규직·장기실업자 등 취약근로자가 2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시 생계비를 대부받아 부담 없이 훈련에 몰입 가능
 - ※ 월 1백만원 이내(비정규직 3백만원, 실업자 6백만원 한도), 이율 3.4%, 1년거치 3년 상환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훈련 확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 직업훈련 참여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계좌(연간 200만원)를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참여
 - ※ (08) 대구·광주지역 시범 실시 → (09) 전국 확대 실시

-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신규)
 -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중소기업장 근로자는

특수건강 검진 비용 지원을 받아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산재 예방

※ 10인 미만 사업장 재직중인 116천명의 근로자에게 시범 실시

■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주말·야간훈련 기회 제공 (신규)

- 시간적·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훈련참여에 애로를 겪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주말·야간훈련 개설로 직업훈련 참여 가능

(단위: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노동부	훈련생계비 대부	-	99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훈련 중 생계비 대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207	634	• 실업자 희망훈련 선택·참여 지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	32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JUMP 지원사업	-	110	•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주말 및 야간 훈련

9 군인·국가유공자

■ 병영생활관·군 아파트·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

-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침상형 내무반(2.1㎡/인) 대신 분대단위 개인 침대(6.7㎡/인) 사용

※ 사업완료 목표를 당초 2013년에서 2012년으로 1년 단축 추진

- 30년 이상 노후·협소화된 군 아파트와 독신 숙소를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선

※ 군 아파트: (08) 4인가족 기준 49.5㎡ → (09) 85㎡
독신 숙소: (08) 2~3인/실 → (09) 1인/실

■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 국방분야 자격신설, 군 복무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확대를 통해 장병의 자기계발 가능

※ 응시자 (응시율): (08) 39천명 (6.0%) → (09) 82천명 (12.6%)

■ 보훈급여금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보훈급여금 수령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

※ 지원액: (08) 월 80~3,677천원 → (09) 월 80~3,861천원

■ 의료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진료비 무료,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40~70%만 부담

※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의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을 200개에서 306개로 확대 운영

(단위: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국방부	군 주거시설 개선	5,047	7,276	• 내무반·군아파트·독신숙소 등 개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13	23	• 자기계발 확대
보훈처	보훈급여금	23,109	24,973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의료지원	3,160	3,476	•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진료시 지원

10 문화·예술·체육인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이 강사로 참여하는 기회 제공

※ 지원분야를 기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에서 미디어,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

■ 국립 문화예술단체 치유 개선

- 국립 발레·무용단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물리치료사, 의상·소품 전담요원 등의 지원을 받고, 출연수당도 인상(5 → 6만원)

■ 소외지역 문화나눔 (문화예술단체 지방 공연활동)

-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단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기회 확대

※ 예술단체 수(개) : (’08) 129 → (’09) 155

■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의 이용

- 수업시간 外 개방되는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인조잔디,우레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시설로 활용

※ 학교운동장 체육시설(개) : (’08) 98 → (’09) 155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문화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50	315	• 문화예술강사 지원
	국립문화예술단체 처우 개선	340	381	• 문화예술단체 공연활동을 위한 처우개선
	소외지역 문화나눔	198	218	• 소외지역 공연예술 활동 확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304	490	•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II 다문화가정 · 외국인

■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자녀양육 상담서비스 (16천가구)
-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필기시험을 면제함으로써 국적 취득 기간 단축 및 우리 사회 적응력 제고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및 이주여성쉼터 활성화를 통해 가정폭력 이주여성에게 다국어 상담 및 쉼터 제공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으로 문화적 갈등, 언어소통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예방

■ 우수 외국인재 지원

- 우수 외국인 학생을 장학생으로 초청, 한국문화 체험과 학업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재로 육성
- 온라인 비자추천시스템 구축, 비자 심사기간 단축(12 → 1~2일)

(단위 : 억원)

부처	주요사업	’08	’09안	사업 개요
복지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230	259	• 결혼이민자가족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행안부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24	• 외국인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12	• 전국 40여개소 시범사업 실시
여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4.8	35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상담 및 쉼터,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
교육부	정부초청 장학생	312	446	• 문화체험과 학업기회 부여
법무부	온라인비자추천시스템	-	20	• 비자추천시스템 구축 (’09. 12)

II. 2009년 BTL사업 추진계획

1. ’09년 BTL사업 규모

- ’09년 BTL 사업은 ’08년 대비 1.6조원 증가된 6.5조원 수준

(단위 : 억원)

구분	’08년	’09년	증감	%
BTL 고시규모 (지자체 자체사업)	49,549 (17,564)	65,465 (12,625)	15,916	32.1

2. ’09년 BTL사업 중점 투자분야

■ 쾌적한 병영생활 환경 조성

- 노후하고 협소한 군주거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

개선 (12년 완료)

- 병영생활관 : 침상형 → 침대형 (63개소, 3,650억원)
- 군관사 : 국민임대주택(85m²) 수준으로 확대 (1,834세대, 1,908억원)
- 독신자숙소 : 1실 2~3명 → 1인 1실(4,313실, 1,725억원)

■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거점 연계를 위한 철도시설 확충

- 대곡~소사철도(19.6km, 13,036억원), 부전~마산철도(30.4km, 19,251억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 학교시설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시설 확대 ('08년 128 → '09년 1,127억원)

■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관거 보급 확대 (6,703억원)

* '10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 80% 달성

■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택지개발지역 등의 신설학교 건립 및 노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개축사업('08년 96개교 → '09년 107개교, 1.3조원)
- 행복도시 조기 정착과 정주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시설 건립 (9개교, 871억원)

* BTL 추진(144개) : ('09) 9교 → ('10~'23) 135교

'09년 BTL 대상시설별 사업규모

(단위 : 억원)

대상 시설	총사업비
【국가사업】	41,216
① 군주거시설	7,283
② 철도시설	32,287
③ 학교시설	1,054
④ 청소년수련원	59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9,108
⑤ 하수관거시설	6,703
⑥ 학교복합시설	1,127
⑦ 문화복합시설	671
⑧ 박물관	150
⑨ 공공보건의료시설	457
【예비사업 한도액】	2,516
소 계	52,840
【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	12,625
합 계	65,465

참고 예산 10% 절감 및 활용

1. 목표 및 추진현황

- (목표) 정부예산의 10% 수준인 총 20조원 절감·활용
- (추진현황) '08년 2.5조원, '09년 17.5조원 절감·활용
 - '08년 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되어 집행중인 점을 감안, 집행효율화를 통해 2.5조원 절감·활용
 - '09년은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17.5조원 절감·활용

2. '09년 예산절감 실천계획

- (사업비: 9.0조원) 편성과정에서 소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 정확한 수요예측, 신기술을 활용한 원가절감 등 5개 유형으로 절감을 실천

* (예시)

- ① 정확한 수요예측 : 항만수요 재예측 540억원 절감
- ② 사업 내실화 : 군 병원 역할 및 기능 재조정, 1,166억원 절감
- ③ 신기술 활용 등 원가절감 : 해상교량 설치공법 개선, 54억원 절감
- ④ 민간 효율성 활용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민간 재원 활용, 500억원 절감
- ⑤ 유사사업 통합 : 장비 통합구매 등 정보자원 공동활용, 184억원 절감

- (인건비: 1.0조원)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
 -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
 - 공직사회 고통분담 선도 차원에서 '09년도 보수 인상 동결
- (경상비: 0.7조원)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 10% 수준 절감
 - 기본경비 0.3조원, 여비·업추비 0.1조원, 운영비 0.2조원 등
- (집행단계·세입확충 등: 6.8조원)
 - 실적공사비 확대 적용(36 → 56%),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300억 → 100억원 이상), 물품구매시 가격조사 강화 등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강화 등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

3. '09년 예산절감액 활용

- (사업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과제 추진 지원
 -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광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및 국제발행 축소 등에 활용
- (인건비)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
- (경상비) 환율 및 유류비 인상소요 등에 활용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

* 이 자료는 2008년 10월 6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 9. 1·9. 29에 발표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은 10. 7(화)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10. 7(화)부터 양도하는 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 제외 저가주택 가액 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 (현행)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 → (개정) 1호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

*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 ④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 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09년 국세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 이 자료는 2008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09년 국세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총규모 및 특징

(단위: 조원, %)

① 총규모

- '09년 세입은 '08년 전망(166.9조원) 대비 12.7조원(7.6% ↑) 증가한 179.6조원으로 전망
- '09년 누적감세규모는 △13.0조원*으로서, 감세가 없었을 경우 '09년 예상세입은 192.6조원
- * 법인세를 인하 등 △2.8조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2.5조원, 소득세율 인하 △1.4조원, 양도세 인하 △1.3조원, 중부세제 합리화 △1.5조원 등
- '08년 세입 전망 166.9조원은 감세규모('08년 △9.7조원)*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165.6조원) 대비 초과세수 1.3조원 발생 예상
- * 유가환급금 △3.5조원, 유류세 10% 인하 △0.7조원, 할당관세 인하 △0.7조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2.5조원 등

세 목	'08년		'09예산	'08 예산 대비		'08 전망 대비	
	예산	전망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국세	165.6	166.9	179.6	14.0	(8.5)	12.7	(7.6)
■ 소득세	38.0	36.9	42.9	4.9	(12.8)	5.9	(16.1)
• 종합소득	6.5	6.3	8.2	1.6	(25.3)	1.9	(29.5)
• 양도소득	9.0	9.8	9.1	0.1	(1.2)	△0.6	(△6.5)
• 갑근소득	14.8	13.5	17.3	2.6	(17.3)	3.8	(28.4)
• 법인세	36.3	38.7	39.3	3.0	(8.2)	0.6	(1.5)
• 신고분	26.6	31.3	33.6	7.0	(26.4)	2.3	(7.1)
• 원천분	9.7	7.4	5.7	△4.0	(△41.5)	△1.7	(△22.7)
■ 상속 증여세	4.0	3.0	3.3	△0.7	(△17.7)	0.2	(7.7)
■ 부가 가치세	43.9	44.3	48.5	4.5	(10.3)	4.2	(9.5)
• 국내분	12.3	7.9	7.6	△4.7	(△38.1)	△0.3	(△4.0)
• 수입분	31.7	36.4	40.9	9.2	(29.0)	4.5	(12.4)
■ 교통세	12.0	10.7	11.2	△0.9	(△7.2)	0.5	(4.7)
■ 관세	7.2	8.4	9.1	1.9	(26.4)	0.7	(8.1)
■ 중부세	2.9	2.6	1.8	△1.1	(△37.7)	△0.8	(△31.4)

② 주요 세목별 특징

- ① (종합소득세) 8.2조원('08년 전망 대비+1.9조원, 29.5% ↑)
(근로소득세) 17.3조원('08년 전망 대비+3.8조원, 28.4% ↑)

• 종합·근로소득세는 유가환급금(△3.5조원)을 '08년에 조기 지급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09년 증가율은 각각 13.7%, 7.5% 수준

- 종합소득세 증가율(13.7%)이 다소 높은 이유는 과표양성화 효과 및 감세효과가 2010년부터 나타나게 되는 데 기인

• 과세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08년(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4.4%) 증가

* 1인당 근로소득세(만원) : (07)182 → (08)203(11.5% ↑) → (09)212(4.4% ↑)

-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4.4%는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

- 소득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추진중이므로 근로자·자영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효과는 신고·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는 '10~'11년에 연차적으로 나타남

☞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년 이후에는 근로자·자영자의 세부담은 더욱 더 낮아질 전망

② (양도소득세) 9.1조원('08년 전망 대비 △0.6조원, △6.5% ↓)

•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 등 감세에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

* 거래량 증가에 따른 선순환효과를 고려한다면 타 세목에서의 세수증가도 예상됨

③ (법인세) 39.3조원('08년 전망 대비 +0.6조원, 1.5% ↑)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 수준*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2.8조원)로

전년 대비 1.5% 수준 증가

* 법인세수 증가율(%) : (03)33.2 → (04)△3.7 → (05)20.8 → (06)△1.5 → (07)20.6

** 중소기업은 2008년부터, 일반기업은 200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국제경쟁력 제고, 투자활성화 및 외자유치에도 기여

• '09년 법인세수는 GDP 대비 3.9%로 OECD 평균('05년 3.6%)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추세

* GDP 대비 법인세수 추이(%) : (07)4.3 → (08)4.1 → (09)3.9

④ (부가가치세) 48.5조원('08년 전망 대비 +4.2조원, 9.5% ↑)

• '09년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국제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4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상성장률 전망(%) : (08) 6.8 → (09) 7.4

* 수입증가율 전망(%) : (08) 23.0 → (09) 12.5

⑤ (상속·증여세) 3.3조원('08년 전망 대비 +0.2조원, 7.7% ↑)

• 세율인하(△0.6조원)에도 불구하고 세율조정에 따른 성실신고에 따라 '08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

⑥ (종합부동산세) 1.8조원('08년 전망 대비 △0.8조원, △31.4% ↓)

• 세율인하 등 중부세제 합리화에 따라 세수감소 발생

II.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분석

① 조세부담률 : 22.7%('07년) → 22.2%('08년e)
→ 22.1%('09년e)

- '09년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 결과 '07년(22.7%)과 비교하여 0.6%p 하락
- 감세가 없었을 경우의 '09년 예상 조세부담률과 비교하면 1.2%p 하락
 - ☞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② 국민부담률 : 28.7%('07년) → 28.4%('08년e)
→ 28.5%('09년e)

- 국민부담률도 감세조치로 조세부담률 하락(1.2%p)에 상당하는 수준만큼 하락 전망
- '09년 국민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9.7%로 '07년(28.7%)과 비교하여 1.0%p 상승하였을 것이나, 감세 조치로 오히려 0.2%p 하락

감세 전·후 조세부담률(%) 추이

		'07년	'08년	'07년 대비	'09년	'07년 대비
■ 조세부담률	감세 전(A)	22.7	23.2	+0.5%p	23.3	+0.6%p
	감세 후(B)	22.7	22.2	△0.5%p	22.1	△0.6%p
	차이(B-A)	-	△1.0		△1.2	
■ 국민부담률	감세 전(A)	28.7	29.4	+0.7%p	29.7	+1.0%p
	감세 후(B)	28.7	28.4	△0.3%p	28.5	△0.2%p
	차이(B-A)	-	△1.0		△1.2	

③ 1인당 조세부담액 : 423만원('07년) → 436만원('08년e) → 467만원('09년e)

-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으로 총조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액도 증가 추세임

- '09년은 467만원으로, 감세가 없었다면 494만원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감세로 '08년 대비 31만원(7.1%) 증가에 그침

감세 전·후 1인당 조세부담액(만원) 추이

		'07년	'08년	'07년 대비	'09년	'07년 대비
■ 감세 전(A)	423	456	+33(7.8%)	494	+71(16.8%)	
■ 감세 후(B)	423	436	+13(3.1%)	467	+44(10.4%)	
■ 차이(B-A)	-	△20		△27		

※ 개인의 담세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는 1인당 조세부담액보다는 조세부담률이 타당

-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1인당 부담세액은 매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 세수의 상당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평가하여
- ▲ 개개인이 실제로 연간 46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 ☞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사용

III. 중기 국세 수입전망('08~'12년)

- 조세연구원 연구용역('07. 8월)을 통해 개발한 중장기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 13개 국세 세목에 대한 회귀분석식으로 구성

- 2010~2012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7~8%대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 예상
- 금번 감세조치가 소득세·양도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고려
- 조세부담률을 '12년까지 20%대로 완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진하

는 경우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08~2012년 중기 국세세입 전망

	'07	'08 ^e	'09 ^e	'10 ^e	'11 ^e	'12 ^e
<전망의 전제>						
• 경상성장률(%)	6.3	6.8	7.4	7.8	8.3	9.0
• 실질성장률(%)	5.0	4.7	5.0	5.4	6.0	6.8
<전망결과>						
• 총국세(조원)	161.5	166.9	179.6	188.0	199.7	212.4
(증가율, %)	(17.0)	(3.4)	(7.6)	(4.7)	(6.2)	(6.4)

IV. 향후 추진계획

- 9. 29일(월) : 차관회의
- 9. 30일(화) : 국무회의
- 10. 2일(목) : 국회 제출

참고 1 '08년 세입전망

(단위: 억원)

세 목	'07 실적	'08 예산	'08 전망	'07실적 대비		'08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1,614,591	1,655,623	1,668,939	54,348	(3.4)	13,316	(0.8)
• 소득세	388,560	380,152	369,368	△19,192	(△4.9)	△10,784	(△2.8)
• 법인세	354,173	362,841	386,886	32,713	(9.2)	24,045	(6.6)
• 상속세	28,419	39,510	30,195	1,776	(6.2)	△9,315	(△23.6)
• 부가가치세	409,419	439,290	442,631	33,212	(8.1)	3,341	(0.8)
• 개별소비세	51,611	45,964	48,381	△3,230	(△6.3)	2,417	(5.3)
• 증권거래세	34,688	31,667	25,535	△9,153	(△26.4)	△6,132	(△19.4)
• 인지세	5,880	6,279	6,024	144	(2.4)	△255	(△4.1)
• 과년도수입	29,651	26,006	38,960	9,309	(31.4)	12,954	(49.8)
• 교통에너지환경세	114,635	120,355	106,673	△7,962	(△6.9)	△13,682	(△11.4)
◆ 관세	74,108	72,026	84,220	10,112	(13.6)	12,194	(16.9)
◆ 교육세	38,612	41,169	39,160	548	(1.4)	△2,009	(△4.9)
◆ 종합부동산세	24,143	28,695	26,072	1,929	(8.0)	△2,623	(△9.1)
◆ 주세	22,680	25,309	25,861	3,181	(14.0)	552	(2.2)
◆ 농어촌특별세	38,009	36,360	38,974	965	(2.5)	2,614	(7.2)

참고 2 '09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세 목	'08 예산	'08 전망	'09 예산	'08예산 대비		'08전망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1,655,623	1,668,939	1,796,058	140,435	(8.5)	127,119	(7.6)
• 소득세	380,152	369,368	428,790	48,638	(12.8)	59,422	(16.1)
• 법인세	362,841	386,886	392,512	29,671	(8.2)	5,626	(1.5)
• 상속세	39,510	30,195	32,530	△6,980	(△17.7)	2,335	(7.7)
• 부가가치세	439,290	442,631	484,552	45,262	(10.3)	41,921	(9.5)
• 개별소비세	45,964	48,381	46,211	247	(0.5)	△2,170	(△4.5)
• 증권거래세	31,667	25,535	32,594	927	(2.9)	7,059	(27.6)
• 인지세	6,279	6,024	6,380	101	(1.6)	356	(5.9)
• 과년도수입	26,006	38,960	41,765	15,759	(60.6)	2,805	(7.2)
• 교통에너지환경세	120,355	106,673	111,640	△8,715	(△7.2)	4,967	(4.7)
◆ 관세	72,026	84,220	91,019	18,993	(26.4)	6,799	(8.1)
◆ 교육세	41,169	39,160	42,477	1,308	(3.2)	3,317	(8.5)
◆ 종합부동산세	28,695	26,072	17,882	△10,813	(△37.7)	△8,190	(△31.4)
◆ 주세	25,309	25,861	25,881	572	(2.3)	20	(0.1)
◆ 농어촌특별세	36,360	38,974	41,825	5,465	(15.0)	2,851	(7.3)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

* 이 자료는 2008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① 지급대상

- 근로소득자 : '07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자
 - 사업소득자 : '07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 일용근로자 : '07. 7~'08. 6월중 근로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로서 급여 3,600만원 이하자
- ※ 근로·사업소득자의 경우 '08. 1. 1~'08. 12. 31 기간 중 근무(영업)한 자에 대해 한시 적용

② 지급금액

(단위: 만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사업소득자	
총급여	환급금*	종합소득금액	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만~3,200만원	18	2,000만~2,130만원	18
3,200만~3,400만원	12	2,130만~2,260만원	12
3,400만~3,600만원	6	2,260만~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8년중 근로월수,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일용근로자의 경우 '07. 7~'08. 6월간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

③ 지급시기

- 근로소득자 : '08. 10월 신청, 11월 지급
 - 사업소득자 : '08. 11월 신청, 12월 지급
 - 일용근로자 : '08. 12월 지급(신청절차는 없음)
- ※ '08년 신규채용자,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09. 5월 신청, 6월 지급('08년 소득 기준)

④ 지급절차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08년중 근로하였으나 신청일 이전 퇴사한 자의 경우는 '08. 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 신청

- 사업소득자 : 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일용근로자 :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07. 7~'08. 6월중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08. 12월 지급

-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

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자 주소지로 유가환급금 통지서 발송, 동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
- ☎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서비스 : 1544-2030(월~금, 09:00~18:00)

II.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1 환급대상

- "소형 화물차"(1톤 이하 및 경형화물차) 소유자(개인)
-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 이상 소유시 1대만 환급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용 화물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 ※ '08. 10~'09. 6월간 소형화물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2 환급금액 (한도 : 年 10만원)

- 휘발유·경유차 : 250원/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차 : 개별소비세 전액(147원/ℓ)

3 환급방법

-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 결제 → 환급금액 제외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가 환급금 수령

III.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금 감면

- 1 감면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 2 감면내용 :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2,000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9,200원 면제 (관광진흥기금 3,000원도 면제)

* 그린피 인화 효과 : 개별소비세·재산세 등 감면(3만~4만원)+자구노력(a)

- 3 적용시기 : '08. 10. 1~'10. 12. 31

- 4 후속조치 : 골프장 세감면이 그린피 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시·시·군별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당연위원이 됨

IV.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 1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 Sur-tax(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2 납부세액 한도 :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3 납부방법

-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 * 현재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추가 지정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으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납부

- 4 납부대행 수수료

• 납세자들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납부 대행용역

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로 지급

* 국세청장이 납부세액의 1.5% 범위 내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에서 상담 가능
- 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 소득세제과 (2150-4156)
 -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3)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 조세정책과 (2150-4117)

알쏭달쏭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

* 이 자료는 2008년 9월 24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알쏭달쏭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현지 세무 정보 부족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2일 과정의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을 개설·운영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확대·발간
 - * 18개국(07년) → 28개국(08년)
-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 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순회세정간담회」 개최
-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과세당국 간의 「세무간담회」를 주선하여 세무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과정」 교육 실시

- 국세청은 9. 22(월)~23(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실무자(165명)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음
-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거래 및 현지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의 부족으로 부당한 과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업의 국제조세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음

-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조세 실무지식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였음
- ※ 사전설문조사시 파악된 내용
 - 외국기술 도입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문제
 - 국제 인적 교류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
 -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로부터 구제받는 절차 등
 - 또한, 교육 장소에 「현장 VOC창구」를 설치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 향후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음

- 국세청은 이번 교육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발간

- 국세청은 총 28개 국가에 대하여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 국가의 세정·세제 정보를 수록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

자」를 발간하였음

-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24개의 해외세정연구모임에 소속된 206명의 직원들이 수집·연구한 외국의 조세제도·과세동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 지난 9. 18.(목) 개최된 「해외지역별 세정전문가 연구발표대회」에서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임
- 동 책자에 담고 있는 내용은
 - 조세제도, 주요 세목별 세법내용, 세무신고 일정 및 신고서 양식,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사항임
 -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세무정보자료는 해당 국가 언어(예시 : 네덜란드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로만 쓰여져 있어 이를 우리 직원이 최초로 일일이 번역하여 수록하였음
- 국세청은 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KOTRA나 중소기업협회 등 관련 경제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책자를 보완하고 향후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남미지역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 정보 →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 외국의 세제

‘지방 소재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지방순회 세정간담회’ 실시

- 국세청은 지방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세무정보 부족 해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 지역별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순회간담회를 실시해 오고 있음
 - * 일정 : 대구·경북(08. 8. 27), 부산·경남(08. 9. 22), 광주·대전(08. 10월 예정)
- 동 순회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세제와 세정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제공하였음

베트남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현지기업 애로사항 해소

- 국세청은 9. 2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이는 지난 8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시 한사를 국세청장의 현지진출기업 애로해소 요청에 대해 응연 반닌 베트남 국세청장이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기업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를 약속한 데 따른 것임
- 이 자리에서 베트남 국세청 청장은 '09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베트남 진출기업이 호소하는 주요 애로사항

1. 부당한 부가세 환급 지연 및 환급 신청시 까다로운 서류제출 요구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상 애로사항
3. 수시로 개정되는 현지 세정·세제 규정을 제공하는 현지 전문조력자 부재

- 국세청은 지난 4월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중국 북경과 천진에서 「현지 기업을 위한 세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 미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APA 설명회를 개최('08. 9. 9)하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타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 국세청은 「해외세정동향 이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매월 개별 기업에 해외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개별적인 세무애로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 정보 → 국제조세상담안내 →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

| 재정통계 |



-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 원천징수 부과현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 지방국세청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부과현황

1.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율	인 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5	합계		7,198	100.0	52,598,866	100.0	5,116,258	100.0
	4백만원 이하	5	3,067	42.6	5,785,396	11.0	215,673	4.2
	4백만원 초과	9	1,890	26.3	10,853,078	20.6	484,741	9.5
	8백만원 초과	18	1,461	20.3	16,627,277	31.6	1,283,463	25.1
	1천6백만원 초과	27	690	9.6	14,481,966	27.5	1,904,033	37.2
	3천2백만원 초과	36	80	1.1	3,301,350	6.3	685,499	13.4
6천4백만원 초과	45	10	0.1	1,549,799	3.0	542,849	10.6	
1996	합계		6,958	100.0	47,208,910	100.0	4,836,016	100.0
	1천만원 이하	10	5,322	76.5	16,385,462	34.7	962,742	19.9
	1천만원 초과	20	1,579	22.7	27,236,428	57.7	3,101,606	64.1
	4천만원 초과	30	50	0.7	2,585,207	5.5	481,228	10.0
8천만원 초과	40	7	0.1	1,001,813	2.1	292,440	6.5	
1997	합계		6,944	100.0	49,795,159	100.0	5,010,597	100.0
	1천만원 이하	10	5,187	74.7	16,262,064	32.7	940,259	18.8
	1천만원 초과	20	1,690	24.3	29,580,726	59.4	3,261,936	65.1
	4천만원 초과	30	60	0.9	3,080,920	6.2	571,582	11.4
8천만원 초과	40	7	0.1	871,449	1.8	236,820	4.7	
1998	합계		6,269	100.0	42,766,019	100.0	4,347,155	100.0
	1천만원 이하	10	4,802	76.6	14,638,900	34.2	849,406	19.5
	1천만원 초과	20	1,410	22.5	24,280,537	56.8	2,639,249	60.7
	4천만원 초과	30	49	0.8	2,507,419	5.9	466,642	10.7
8천만원 초과	40	8	0.1	1,339,163	3.1	391,858	9.0	
1999	합계		5,520	100.0	40,206,733	100.0	4,337,214	100.0
	1천만원 이하	10	4,142	75.0	13,026,853	32.4	758,088	17.5
	1천만원 초과	20	1,306	23.7	21,988,334	54.7	2,363,264	54.5
	4천만원 초과	30	57	1.0	2,971,414	7.4	565,628	13.0
8천만원 초과	40	15	0.3	2,220,132	5.5	650,234	15.0	
2000	합계		5,934	100.0	53,312,264	100.0	6,077,019	100.0
	1천만원 이하	10	4,056	68.3	14,389,914	27.0	833,331	13.7
	1천만원 초과	20	1,767	29.8	31,079,478	58.3	3,417,356	56.2
	4천만원 초과	30	90	1.5	4,717,055	8.8	890,699	14.7
8천만원 초과	40	21	0.4	3,125,717	5.9	935,633	15.4	
2001	합계		6,446	100.0	61,756,163	100.0	7,146,091	100.0
	1천만원 이하	10	4,236	65.7	14,780,326	23.9	897,328	12.6
	1천만원 초과	20	2,079	32.3	37,889,267	61.4	4,195,446	58.7
	4천만원 초과	30	110	1.7	5,748,834	9.3	1,051,014	14.7
8천만원 초과	40	21	0.3	3,337,736	5.4	1,002,303	14.0	
2002	합계		6,187	100.0	61,486,837	100.0	6,933,422	100.0
	1천만원 이하	9	4,083	66	14,518,140	23.6	747,714	10.8
	1천만원 초과	18	1,949	31.5	35,935,525	58.4	3,849,146	55.5
	4천만원 초과	27	127	2.1	6,690,211	10.9	1,140,186	16.4
8천만원 초과	36	28	0.5	4,342,961	7.1	1,196,376	17.3	
2003	합계		6,258	100.0	67,121,686	100.0	7,641,185	100.0
	1천만원 이하	9	3,943	63	14,470,944	21.6	691,364	9.1
	1천만원 초과	18	2,134	34.1	40,187,087	59.9	4,327,808	56.6
	4천만원 초과	27	150	2.4	7,810,985	11.6	1,347,179	17.6
8천만원 초과	36	31	0.5	4,652,670	6.9	1,274,834	16.7	

1.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계속>

(단위: %, 천명, 백만원)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울	인 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4	합계		6,268	100.0	74,647,705	100.0	8,913,107	100.0
	500만원 이하	9	2,508	40.0	4,736,435	6.3	190,853	2.1
	500만원 초과	9	1,269	20.2	9,321,531	12.5	427,720	4.8
	1천만원 초과	18	1,370	21.9	19,594,660	26.2	1,624,921	18.2
	2천만원 초과	18	604	9.6	14,699,508	19.7	1,795,763	20.1
	3천만원 초과	18	268	4.3	9,206,843	12.3	1,277,743	14.3
	4천만원 초과	27	110	1.8	4,864,212	6.5	760,070	8.5
	5천만원 초과	27	52	0.8	2,799,603	3.8	495,440	5.6
	6천만원 초과	27	29	0.5	1,878,028	2.5	358,298	4.0
	7천만원 초과	27	17	0.3	1,291,891	1.7	259,114	2.9
	8천만원 초과	36	17	0.3	1,524,064	2.0	333,226	3.7
	1억원 초과	36	8	0.1	833,806	1.1	202,109	2.3
	1억2천만원 초과	36	6	0.1	749,788	1.0	195,514	2.2
	1억5천만원 초과	36	4	0.1	727,865	1.0	205,830	2.3
	2억원 초과	36	3	0.0	750,747	1.0	228,348	2.6
3억원 초과	36	3	0.0	1,668,724	2.2	558,158	6.3	
2005	합계		6,107	100.0	83,519,796	100.0	9,778,203	100.0
	1천만원 미만	9	3,387	55.5	14,001,724	16.8	532,227	5.4
	1천만원 이상	18	1,438	23.6	20,575,114	24.6	1,511,417	15.5
	2천만원 이상	18	967	15.8	26,700,946	32.0	3,172,847	32.4
	4천만원 이상	27	203	3.3	9,650,355	11.6	1,485,561	15.2
	6천만원 이상	27	58	1.0	3,962,018	4.7	732,347	7.5
	8천만원 이상	36	22	0.4	1,970,712	2.4	412,151	4.2
	1억원 이상	36	23	0.4	2,971,313	3.6	748,508	7.7
	2억원 이상	36	4	0.1	972,744	1.2	288,735	3.0
	3억원 이상	36	3	0.0	953,237	1.1	301,241	3.1
5억원 이상	36	2	0.0	1,761,633	2.1	593,169	6.1	
2006	합계		6,621	100.0	95,466,197	100.0	11,566,377	100.0
	1천만원 이하	9	3,563	53.8	14,836,997	15.5	563,993	4.9
	1.2천만원 이하	18	429	6.5	4,709,320	4.9	234,463	2.0
	3천만원 이하	18	1,878	28.4	35,598,361	37.3	3,408,863	29.5
	4천만원 이하	18	359	5.4	12,337,368	12.9	1,588,588	13.7
	4.6천만원 이하	27	116	1.7	4,943,010	5.2	703,392	6.1
	6천만원 이하	27	133	2.0	6,914,111	7.2	1,124,941	9.7
	7천만원 이하	27	47	0.7	3,023,136	3.2	547,241	4.7
	8천만원 이하	36	28	0.4	2,086,948	2.2	398,576	3.4
	8.8천만원 이하	36	14	0.2	1,190,153	1.2	240,627	2.1
	1억원 이하	36	14	0.2	1,349,221	1.4	293,060	2.5
	2억원 이하	36	30	0.5	3,911,824	4.1	992,975	8.6
	3억원 이하	36	5	0.1	1,203,279	1.3	358,173	3.1
	5억원 이하	36	3	0.0	1,141,039	1.2	360,924	3.1
	10억원 이하	36	2	0.0	1,008,145	1.1	333,832	2.9
10억원 초과	36	1	0.0	1,213,285	1.3	416,729	3.6	

주 1. 연말정산 기준임.

2. 통계연보에서 세율 정보를 2005년 이후에는 공표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연도에서 세율과 계급 간 약간의 불일치(4천만원 이하와 4천만원 초과 등)가 발생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원천징수 부과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연 도	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¹⁾	지급액	부과세액
1991	4,985(396)	126,217	97,034,393	3,871,980
1992	6,001(379)	146,155	112,783,745	5,317,149
1993	6,053(384)	157,165	157,915,307	5,917,018
1994	6,309(415)	182,055(10,060)	175,247,365(99,306,978)	7,131,755
1995	6,774(445)	176,975(10,467)	215,365,826(119,117,655)	9,032,479
1996	6,928(491)	141,847(9,911)	257,028,059(134,561,341)	9,852,439
1997	8,039(527)	300,348(10,212)	291,707,000(148,289,330)	10,062,422
1998	8,492(493)	360,982(9,276)	344,182,882(133,267,999)	13,640,682
1999	6,285(577)	399,121(9,390)	340,604,494(137,013,257)	12,646,455
2000	6,507(527)	355,767(11,102)	360,248,319(170,292,857)	13,035,961
2001	8,984(705)	475,023(11,555)	483,871,117(191,121,414)	13,430,903
2002	10,120(721)	673,717(12,017)	528,569,676(215,393,794)	12,806,622
2003	11,219(748)	608,963(11,547)	604,114,463(228,867,524)	14,229,144
2004	9,639(729)	563,304(11,624)	662,060,842(249,061,731)	15,684,601
2005	11,903	8,095,761	749,404,605	22,984,250
2006	12,595	7,971,739	809,294,714	25,492,867

주: 1. 인원은 매월 원천징수 인원의 연간 누계임. 단, 갑종근로소득징수의무자의 ()의 인원과 납세의무자의 ()안의 인원은 '00년중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전산자료 기준임.

2. 세액은 부과치임.

3. 지급액은 매월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의 연간 누계이나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전년지급액에 대한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어 '00연말정산소득금액을 ()로 표시함.

4. 2005년 이후는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실적을 집계하여 작성.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두 번 신고하는 경우 신고건수와 총지급액은 이중으로 계상.

5. 2005년 이후 소득지급은 과세미달과 비과세 지급분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신규 입사자 및 종도 퇴사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수준 지표로 사용 곤란.

6. 원천징수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임.

1) 2005년 이후 납세의무자는 신고건수를 의미하며, 신고건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건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계급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1998	합계	1,225,614	21,409,712	100.0	3,015,607	100.0
	상위 10%	122,561	9,767,823	45.6	2,106,259	69.8
	10% ~ 20%	122,561	3,428,417	16.0	407,262	13.5
	20% ~ 30%	122,561	2,214,524	10.3	200,086	6.6
	30% ~ 40%	122,561	1,598,459	7.5	107,038	3.6
	40% ~ 50%	122,561	1,224,848	5.7	69,507	2.3
	50% ~ 60%	122,561	978,972	4.6	47,090	1.6
	60% ~ 70%	122,561	799,333	3.7	31,956	1.1
	70% ~ 80%	122,561	653,789	3.1	21,582	0.7
	80% ~ 90%	122,561	514,097	2.4	16,437	0.5
1999	합계	1,342,153	24,676,282	100.0	3,557,819	100.0
	상위 10%	134,215	11,821,462	47.9	2,577,140	72.4
	10% ~ 20%	134,215	3,825,983	15.5	446,390	12.5
	20% ~ 30%	134,215	2,452,013	10.0	213,350	6.0
	30% ~ 40%	134,215	1,761,641	7.1	114,407	3.2
	40% ~ 50%	134,215	1,374,023	5.5	74,464	2.1
	50% ~ 60%	134,215	1,069,126	4.3	50,329	1.4
	60% ~ 70%	134,215	869,074	3.5	33,931	1.0
	70% ~ 80%	134,215	708,478	2.9	22,800	0.7
	80% ~ 90%	134,215	553,345	2.2	17,082	0.5
2000	합계	1,616,244	32,167,058	100.0	4,803,125	100.0
	상위 10%	161,624	15,380,891	47.8	3,483,384	72.5
	10% ~ 20%	161,624	5,171,657	16.1	596,765	12.4
	20% ~ 30%	161,624	3,335,255	10.4	306,416	6.4
	30% ~ 40%	161,624	2,313,140	7.2	158,367	3.3
	40% ~ 50%	161,624	1,721,656	5.3	97,311	2.0
	50% ~ 60%	161,624	1,338,388	4.2	63,860	1.4
	60% ~ 70%	161,625	1,071,721	3.3	42,211	0.9
	70% ~ 80%	161,625	864,579	2.7	27,871	0.6
	80% ~ 90%	161,625	668,386	2.1	20,302	0.4
	90% ~ 100%	161,625	301,385	0.9	6,638	0.1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계속)

(단위 명, 백만원, %)

연 도	계 급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2001	합계	1,782,369	36,405,350	100.0	5,537,259	100.0
	상위 10%	178,237	18,625,082	51.2	4,203,510	75.9
	10% ~ 20%	178,237	5,601,311	15.4	623,992	11.3
	20% ~ 30%	178,237	3,443,132	9.5	294,620	5.3
	30% ~ 40%	178,237	2,412,047	6.6	152,571	2.8
	40% ~ 50%	178,237	1,815,540	5.0	96,986	1.8
	50% ~ 60%	178,237	1,426,799	3.9	64,875	1.2
	60% ~ 70%	178,237	1,148,422	3.2	43,608	0.8
	70% ~ 80%	178,237	925,055	2.5	29,375	0.5
	80% ~ 90%	178,237	710,245	2.0	21,768	0.4
2002	합계	2,010,363	42,163,364	100.0	5,745,486	100.0
	상위 10%	201,036	21,900,014	51.9	4,421,209	77.0
	10% ~ 20%	201,036	6,439,528	15.3	626,602	10.9
	20% ~ 30%	201,036	3,906,975	9.3	285,896	5.0
	30% ~ 40%	201,036	2,753,237	6.5	150,368	2.6
	40% ~ 50%	201,036	2,091,360	5.0	96,378	1.7
	50% ~ 60%	201,036	1,651,000	3.9	65,517	1.1
	60% ~ 70%	201,036	1,319,353	3.1	44,226	0.8
	70% ~ 80%	201,037	1,047,353	2.5	29,772	0.5
	80% ~ 90%	201,037	782,700	1.9	21,256	0.4
2003	합계	2,114,527	45,223,855	100.0	6,288,663	100.0
	상위 10%	211,453	24,009,202	53.1	4,924,113	78.3
	10% ~ 20%	211,453	6,917,451	15.3	665,661	10.6
	20% ~ 30%	211,453	4,152,024	9.2	296,906	4.7
	30% ~ 40%	211,453	2,885,360	6.4	152,225	2.4
	40% ~ 50%	211,453	2,160,917	4.8	94,752	1.5
	50% ~ 60%	211,453	1,687,157	3.7	62,575	1.0
	60% ~ 70%	211,453	1,343,188	3.0	41,939	0.7
	70% ~ 80%	211,452	1,055,989	2.3	28,626	0.4
	80% ~ 90%	211,452	766,458	1.7	18,684	0.3
	90% ~ 100%	211,452	246,109	0.5	3,182	0.1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단위: 명, 백만원, %)

연 도	계 급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2004	합계	2,235,905	49,179,843	100.0	6,943,835	100.0
	상위 10%	223,590	26,802,709	54.5	5,547,018	79.9
	10% ~ 20%	223,590	7,416,375	15.1	705,835	10.2
	20% ~ 30%	223,590	4,418,366	9.0	304,589	4.4
	30% ~ 40%	223,590	3,059,813	6.2	154,209	2.2
	40% ~ 50%	223,590	2,283,159	4.6	93,298	1.3
	50% ~ 60%	223,591	1,767,803	3.6	60,139	0.9
	60% ~ 70%	223,591	1,388,117	2.8	38,557	0.6
	70% ~ 80%	223,591	1,073,484	2.2	25,416	0.4
	80% ~ 90%	223,591	759,536	1.5	14,043	0.2
90% ~ 100%	223,591	210,481	0.4	731	0.0	
2005	합계	2,279,497	54,103,314	100.0	7,437,191	100.0
	상위 10%	227,949	29,896,353	55.3	6,015,844	80.9
	10% ~ 20%	227,949	8,125,487	15.0	722,823	9.7
	20% ~ 30%	227,949	4,806,666	8.9	310,261	4.2
	30% ~ 40%	227,950	3,309,201	6.1	154,129	2.1
	40% ~ 50%	227,950	2,460,555	4.5	92,165	1.2
	50% ~ 60%	227,950	1,893,957	3.5	59,773	0.8
	60% ~ 70%	227,950	1,478,893	2.7	39,063	0.5
	70% ~ 80%	227,950	1,140,385	2.1	26,442	0.4
	80% ~ 90%	227,950	801,235	1.5	14,755	0.2
90% ~ 100%	227,950	190,582	0.4	1,936	0.0	
2006	합계	2,736,478	65,001,149	100.0	9,232,353	100
	상위 10%	273,647	36,602,221	56.3	7,564,134	81.9
	10% ~ 20%	273,647	9,770,455	15.0	865,047	9.4
	20% ~ 30%	273,648	5,687,338	8.8	360,345	3.9
	30% ~ 40%	273,648	3,890,569	6.0	178,801	1.9
	40% ~ 50%	273,648	2,871,711	4.4	106,562	1.2
	50% ~ 60%	273,648	2,191,564	3.4	68,192	0.7
	60% ~ 70%	273,648	1,683,335	2.6	44,126	0.5
	70% ~ 80%	273,648	1,256,288	1.9	28,228	0.3
	80% ~ 90%	273,648	838,280	1.3	14,369	0.2
90% ~ 100%	273,648	209,388	0.3	2,549	-	

자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지방국세청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지방청	인원 ¹⁾	추징세액	연도	지방청	인원 ¹⁾	추징세액
1997 ¹⁾	합계	9,276	145,441	2002	합계	6,141	215,098
	서울	2,855	56,449		서울	2,297	63,384
	중부	1,721	21,896		중부	1,579	57,301
	경인	1,261	18,857		경인		
	대전	500	8,208		대전	505	18,569
	광주	557	6,391		광주	436	14,858
	대구	923	11,780		대구	406	15,998
	부산	1,459	21,860		부산	918	44,988
1998 ²⁾	합계	8,506	178,339	2003	합계	4,522	202,573
	서울	2,504	54,999		서울	1,401	64,003
	중부	1,653	39,167		중부	1,274	66,633
	경인	1,170	26,133		경인		
	대전	619	11,055		대전	352	17,714
	광주	536	8,181		광주	356	14,076
	대구	581	12,153		대구	461	14,444
	부산	1,443	26,650		부산	678	25,703
1999 ³⁾	합계	8,771	232,765	2004	합계	4,370	211,782
	서울	3,231	78,778		서울	1,116	56,258
	중부	2,489	64,834		중부	1,521	81,400
	경인				경인		
	대전	565	15,760		대전	209	13,655
	광주	397	11,631		광주	286	9,436
	대구	644	15,936		대구	460	18,308
	부산	1,445	45,826		부산	778	32,725
2000	합계	3,461	91,706	2005 ⁴⁾	합계	3,989	229,786
	서울	1,073	28,225		서울	966	82,273
	중부	900	18,469		중부	1,278	65,715
	경인				경인		
	대전	270	6,045		대전	322	15,913
	광주	305	7,122		광주	322	8,141
	대구	318	12,742		대구	450	17,958
	부산	595	19,103		부산	651	39,786
2001	합계	6,347	163,718	2006 ⁴⁾	합계	4,049	456,339
	서울	1,928	52,027		서울	1,359	177,035
	중부	1,730	35,140		중부	1,136	144,943
	경인				경인		
	대전	460	13,118		대전	270	35,036
	광주	594	12,270		광주	273	14,308
	대구	635	20,410		대구	361	32,630
	부산	1,000	30,753		부산	650	52,387

주: 1) 1995년도 귀속분 조사실적(단, 1994년 귀속분 95명, 5,558백만원 포함됨)

2)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귀속분 조사실적

3) 해당 연도중에 조사 완료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4) 2005, 2006의 추징세액은 소득세와 기타세를 포함한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5.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부과현황

(단위: 천명, 건, 백만원)

연도	소득종류	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¹⁾	지급액	부과세액
1995	합계	6,774(445)	176,975	215,365,826	9,032,479
	이자소득	150	119,907	20,610,017	3,168,505
	배당소득	23	6,109	1,892,517	328,780
	사업소득	1,500	10,692	10,333,960	103,299
	갑종근로소득	4,893(445)	10,467	176,275,825	5,152,632
	기타소득	60	28,822	649,778	152,114
	갑종퇴직소득	138	779	4,615,870	86,75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0	199	987,859	40,391	
1996	합계	6,928(491)	141,847	257,028,059	9,852,439
	이자소득	147	103,241	25,056,934	3,155,245
	배당소득	19	4,427	1,588,574	245,753
	사업소득	1,522	9,772	13,185,899	132,779
	갑종근로소득	4,994(491)	10,467	209,100,599	5,978,251
	기타소득	60	11,787	779,923	115,023
	갑종퇴직소득	170	1,284	6,637,948	136,90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6	869	678,182	88,482	
1997	합계	8,039(527)	300,348(10,212)	291,707,000	10,062,422
	이자소득	143	157,872	33,398,793	3,798,376
	배당소득	24	5,872	1,713,839	234,120
	사업소득	1,710	13,596	14,450,270	138,901
	갑종근로소득	2,806(527)	111,881(10,212)	231,696,308	5,500,934
	기타소득	61	9,712	695,208	103,590
	갑종퇴직소득	263	832	8,569,699	148,02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32	481	1,182,883	138,480	
1998	합계	8,492(493)	360,982(9,276)	344,182,882(133,267,999)	13,640,682
	이자소득	135	233,406	55,932,083	7,215,683
	배당소득	23	4,646	1,808,584	264,310
	사업소득	1,784	15,535	17,683,080	279,296
	갑종근로소득	6,167(493)	96,444(9,276)	245,335,907(133,267,999)	5,234,041
	기타소득	69	8,517	727,812	95,509
	갑종퇴직소득	282	1,219	20,998,299	369,85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32	1,215	1,697,117	181,984	
1999	합계	6,285(577)	399,121(9,390)	340,604,494(137,013,257)	12,646,455
	이자소득	120	271,384	43,989,072	5,994,246
	배당소득	26	6,743	2,303,513	390,137
	사업소득	437	17,860	18,909,074	419,772
	갑종근로소득	5,211(577)	88,072(9,390)	253,589,034(137,013,257)	5,193,479
	기타소득	86	9,005	912,986	127,779
	갑종퇴직소득	285	929	18,776,161	292,46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0	5,128	2,124,654	228,580	

5.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계속)

(단위 천명, 건, 백만원)

연도	소득종류	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지급액	부과세액
2000	합계	6,507(527)	355,767(11,102)	360,248,319(170,292,857)	13,035,961
	이자소득	102	217,892	38,431,862	4,523,701
	배당소득	26	10,394	3,999,435	649,892
	사업소득	211	16,584	23,538,517	546,358
	갑종근로소득	5,499(527)	93,488(11,102)	271,275,196(170,292,857)	6,515,918
	기타소득	90	14,304	1,791,182	200,033
	갑종퇴직소득	302	1,173	18,515,072	335,41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77	1,932	2,697,055	264,647
2001	합계	8,984(705)	475,023(11,555)	483,871,117(191,121,414)	13,430,903
	이자소득	110	266,070	37,571,839	3,481,927
	배당소득	30	13,686	4,984,487	494,708
	사업소득	341	21,466	37,186,392	839,590
	갑종근로소득	8,003(705)	148,559(11,555)	383,597,717(191,121,414)	7,832,352
	기타소득	135	20,295	2,673,226	304,428
	갑종퇴직소득	362	1,552	16,009,267	278,410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3	3,395	1,848,189	199,488
2002	합계	10,120(721)	673,717(12,017)	528,569,676(215,393,794)	12,806,622
	이자소득	110	425,693	28,849,042	2,531,343
	배당소득	35	16,500	5,315,566	535,620
	사업소득	442	28,541	41,362,131	1,027,038
	갑종근로소득	8,964(721)	159,946(12,017)	435,607,617(215,393,794)	8,044,643
	기타소득	149	40,344	3,076,572	347,159
	갑종퇴직소득	418	2,066	12,951,962	191,90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	627	1,406,786	128,913
2003	합계	11,219(748)	608,963(11,547)	604,114,463(228,867,524)	14,229,144
	이자소득	105	366,670	26,308,105	2,604,696
	배당소득	34	14,709	6,950,293	670,560
	사업소득	551	26,536	47,465,657	1,032,754
	갑종근로소득	9,917(748)	171,106(11,547)	501,450,647(228,867,524)	8,881,687
	기타소득	159	27,664	4,752,619	587,305
	연금소득	-	85	3,709	-
	갑종퇴직소득	448	1,874	16,229,119	344,80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5	319	954,314	107,338	
2004	합계	9,639(729)	563,304(11,624)	662,060,842(249,061,731)	15,684,601
	이자소득	98	323,918	24,879,514	2,546,412
	배당소득	28	15,393	6,694,781	623,683
	사업소득	562	29,206	48,779,929	1,081,477
	갑종근로소득	8,349(729)	168,505(11,624)	558,577,184(249,061,731)	10,292,585
	기타소득	163	23,547	5,157,397	630,650
	연금소득	-	179	15,283	-
	갑종퇴직소득	427	1,998	16,331,271	336,39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	558	1,625,483	173,401	

5.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명, 건, 백만원)

연도	소득종류	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지급액	부과세액
2005 ²⁾	합계	-	8,095,761	749,404,605	22,984,250
	근로소득	-	6,765,946	567,297,937	10,315,969
	퇴직소득	-	452,925	16,777,711	478,402
	사업소득	-	497,537	47,891,152	1,138,792
	기타소득	-	156,217	4,761,903	584,348
	연금소득	-	23	46,243	2
	이자소득	-	102,152	26,005,102	2,468,064
	배당소득	-	31,010	8,678,633	809,439
	저축해지추징액	-	8,847	-	17,557
	비거주자양도소득	-	2	2,948	294
법인원천	-	81,102	77,942,976	7,171,383	
2006 ²⁾	합계	-	7,971,739	809,294,714	25,492,867
	근로소득	-	6,549,083	608,260,457	11,837,431
	퇴직소득	-	497,207	18,103,974	590,924
	사업소득	-	542,885	53,950,089	1,279,625
	기타소득	-	153,821	5,252,363	622,558
	연금소득	-	12	70,754	1
	이자소득	-	102,692	26,919,075	2,498,329
	배당소득	-	32,729	10,691,591	1,064,432
	저축해지추징액	-	7,629	-	23,093
	비거주자양도소득	-	84	156,029	12,485
법인원천	-	85,597	85,890,382	7,563,989	

주: 1. 인원은 매월 원천징수 인원의 연간 누계임. 단, 갑종근로소득징수의무자의 ()의 인원과 납세의무자의 ()안의 인원은 '00년중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전산자료 기준임.
 2. 갑종근로소득 납세의무자란은 연도별 갑근세 계급별 결정상황표상의 인원임.
 3. 세액은 부과치임.
 4. 지급액은 매월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의 연간 누계이나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전년 지급액에 대한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어 '00연말정산소득금액을 ()로 표시함.
 5. 2005년 이후는 신고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실적을 집계하여 작성.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두 번 신고하는 경우 신고건수와 총지급액은 이중으로 계상
 6. 2005년 이후 소득지급은 과세미달과 비과세 지급분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신규 입사자 및 종도퇴사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수준 지표로 사용 곤란
 7. 원천징수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임
 1) 2005년 이후 납세의무자는 신고건수를 의미하며, 신고건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건수임
 2) 2005년 이후 통계구분이 변경되고 이후 계속 변경된 구분을 사용하여 구분 변경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유가환급금 지급시 GDP 0.05%p ↑”〈조세研〉

- 내년 0.14%p 상승..취업자 유발효과는 올해 3만5천명 금융위기로 소비유발 효과 감소..재정악화도 우려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0.05%포인트, 내년 0.14%포인트 상승하고 취업자 역시 각각 3만5천명과 12만2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유가 및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 증대 효과는 다소 감소하고 세입 감소로 인해 올해 재정이 악화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가환급금이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가환급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수요 유발 효과는 2008년 3천900억원, 2009년 1조1천800억원으로 실질 GDP는 올해 0.05%포인트, 내년 0.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유발효과는 올해 3만5천명, 내년 12만2천명으로 전망됐다.

소비 증가와 관련해 보고서는 “유가 환급으로 인한 소득보전은 향후 민간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하락폭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고유가와 미

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 향후 가계의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 증대 효과는 당초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께 경기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유가환급금이 실질적으로 11~12월에 집행되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유가환급금의 경우 경기 부양보다는 서민 생활형편 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 적시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유가환급금은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을 세수 증가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세수 증가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재정통계상으로는 조세환급에 의한 세입감소로 올해 재정수지는 전망치(관리대상수지 1조1천억원 적자)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5월 실시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조세환급 정책, 1999년 일본 정부의 상품권 지급 정책 등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 지급규모는 3조4천900억원으로 미국의 110조원, 일본의 7조8천억원에 비해 절대 규모에서는 작았다. 명목 GDP 대비 비율에서는 우리나라가 0.39%

로 미국(0.83%) 보다는 작았지만 일본(0.16%) 보다는 컸다.

수혜대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36.5%로 역시 미국(66.7%)보다 작지만 일본(27.6%)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수혜금액은 미국이 55만원, 일본이 22만원으로 우리나라(20만원)에 비해 많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급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돼 3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면서 “다만 미국과 일본은 자녀가 있을 경우 수혜금액이 증가되도록 하고 은퇴자·상이군인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08일자〉

방향은 맞지만 법인세율 인하 연기 부정적

이명박 정부의 세계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성이 맞다’고 말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도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감세 정책이 시의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경제 상황에 비춰 타당성이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자제하고 민간 소비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세안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양도세 등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순이익 2억원 초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것을 1년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팀장(조세연구2팀)은 “이번 세계개편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인데, 그런 점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뒤편에 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뒤로 밀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감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세월 투명화로 감세를 하더라도 세수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적다고 말하지만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짜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 효과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운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목 팀장은 “내년 이후를 내다볼 때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08년 10월 6일자〉

“중부세 개편시 소득불평등도 상승”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가계자산자료를 활용,

각 연도별 보유세 총액이 총소득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로 측정했다.

그 결과 세전 지니계수 약 0.3522에 비해 2008년 보유세제에 의한 총보유세액을 차감한 후 지니계수는 약 0.3499로 0.0023 감소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증부세 개편안에 따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09로 2008년 지니계수보다 약 0.001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그러나 “누진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소득재분배 목적으로는 보유세보다는 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세율 조정없이 기준금액만 9억원으로 높일 경우 주택분 증부세 전체 세수(2007년 1조2천억원)의 32%인 4천억원이, 세율 조정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70.2~77.5%인 8천500억~9천40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공시하던 것을 2~3년 주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고 잦은 부동산 가격 평가에 따른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부세 폐지시기에 대해 이들은 “현 개편안에 따르면 증부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증부세를 도입했다면 이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고액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아직 재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 동안은 약화된 증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증부세를 폐지한다면 주택분 증부세는 당연히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법인분 증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할지, 아니면 영국과 같이 국세로 놓아둘 것이

지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치구의 경우 이를 대신할 정책적 장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증부세 개편으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방교부세 조정, 균특회계를 통한 보충, 기존 증부세 납부자의 재산세 조정 등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02일자)

세제개편안 토론회…‘끝없는’ 증부세 논란

- 2일 조세연구회 주최 정책토론회-학자·정치인들 논쟁 ‘팽팽’
- 오세재 “지방 복지재정에 쓰는 정말 좋은 세금”
- 나성린 “증부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세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발표된 후 증부세에 대한 논란은 연일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여느 자리보다 뜨거운 세금논쟁의 자리가 됐다.

특히 증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마련한 조세연구원 및 정책에 찬성하는 학자들과 여당정치인, 그리고 증부세 개편에 반대하거나 정부정책에 의문을 갖는 학자들 및 야당 정치인의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당장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의 입법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나 아니냐를 놓고 다소 흥분한 듯 설전을 펼쳤다.

토론에 참여한 오세재 의원은 “(증부세에 대해)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걱정을 하는데, 지역 건강보험료를 보면 재산이 3억원이면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부과하고 있다”며 “소득세나 부가세나 지금 모든 세금이 다 현실화되고 있는데 재산세와 고소득자의 상속세나 증여세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증부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99% 국민들은 숨길 방법도 없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1% 재산가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숨길 수단이 많다. 그럼에도 재산세는 빠져 나갈 수가 없는 세금이다”며 “소득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에도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징벌적 세금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98% 국민들은 공사가 6억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있다. 증부세는 지방의 교육재정에, 복지재정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금이다”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내서 복지재정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증부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조세”라며 “그분들(증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다. 지난 60년간 누구보다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이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증부세가 얼마 안 올랐다고 하는데 증부세 밑에 재산세도 있지 않다. 증부세 내는 사람들은 재산세도 낸다”고 증부세가 중복과세임을 주장하며 “자꾸 1%를 위한 정부라고 하는데 차별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자들 역시 찬반논리를 이어 갔다.

헌법재판소에서 증부세의 위헌을 주장하기도 했던 이 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증부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독특한 세제이고 논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고 본다”며 “증부세법 1조에 보면 조세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경제 활성화를 설립근거로 들고 있는데

조세를 통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소득세를 통해 하는 것이지 보유세를 통해 하는 것은 조세이론과 동떨어진 것이다.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격안정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이라고 해서 유달리 세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방재정 지원도 다른 식으로 해야지 세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부세는 결국 고도의 정책성 판단에서 만든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적으로 다른 논리가 있다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창희 서울대 교수는 “증부세가 별로 좋은 세금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소득이 유일한 담세력의 기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기 어렵다는 저항에 대해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극단적으로 2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단지 소득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야 할까? 재산과세는 소득과세를 보완한다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왜 부동산에만 과세하느냐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재산과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민노당이 주장했던 부유세가 차라리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증부세는 아무래도 손을 봐서 양도소득세를 처리할 때 미리미리 낸 (증부세) 세금을 양도소득세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또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탄력세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하기도 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증부세가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 지금은 증부세를 완화하려는데 집값이 반쪽이 나고 있다”며 “집값의 결정요소는 세금 이외의 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세금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집값 안정이라는 증부세의 목적성에 의문을 던졌다.

현 교수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증부세가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 현재 있는 재산세로도 충분히 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이미 누진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부세가 없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2008년 10월 02일자〉

시내 면세점은 내국인용?..작년 이용객 4명중 3명꼴

서울과 부산, 제주 지역에 있는 시내 면세점의 이용객 4명 중 3명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시내 면세점이 내국인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것이다.

29일 조세연구원이 발행하는 ‘재정보람’ 9월호에 실린 원종학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보세판매장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의 내국인 이용객 비율은 1999년 14.8%에 불과했으나 2003년 52.8%, 2006년 65.5%에 이어 지난해에는 74%까지 높아졌다. ‘한류(韓流)’ 붐을 타고 일본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2004~2005년을 제외하면 시내 면세점의 내국인 이용객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향수 등 소모성 물품이 주류를 이루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시내 면세점은 내구 소비재인 패션, 피혁, 시계, 액세서리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내구소비재는 대부분이 국내로 다시 반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구입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상품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내 면세점에서는 허가받은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상위 1개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66%,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85%에 이르러 독과점 영업형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시내 면세점은 내국인 위주 영업 행태에다 과세 형평성 저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보세 판매장의 한 형태로서 시내 면세점은 가능한 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세 판매장으로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출국장 등에 있는 면세매점과 시내 면세점, 외교관 면세매점 등이 있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서울에 6곳, 부산과 제주에 2곳씩 모두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향닷컴 2008년 09월 29일자〉

“신용카드사 진입장벽 낮춰야”

-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
상위 4개카드사 시장점유율 60% 달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과점적 경쟁구조를 완전경쟁구조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18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업의 완전경쟁이 촉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전업사 6개, 겸업은행 15개로 모두 21개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 등 상위 4개가 전체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1999년 42조6300억원 수준이던 신용

카드 이용실적이 2007년에는 약 241조원까지 급증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신규카드사의 시장진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1.5~4.5%를 부과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140%까지 차이나다”면서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한해동안 가맹점이 지불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6조270억원이었지만, 직불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가맹점의 부담은 2조4천108억원 감소한다”며 “결제비용이 가장 비싼 신용카드에 몰려있어 국민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 ▲직불카드의 사용 활성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 검토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가맹점 수수료의 단일화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데일리 2008년 09월 18일자〉

재정포럼

2008년 10월호 통권 제14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10월 15일 발행 / 제13권 제10호(통권 제14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